

2020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파트너십 연구보고서

한재광 · 이경신 · 홍지영 · 오원기 · 손정은 · 이경주 · 박준영 · 강소정

2020.12.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Humanitarian Partnership Program

KOICA KCC

연구책임자 한재광 대표(발전대안 피다)

공동연구원 이경신 컨설턴트(인도적지원 컨설턴트), 홍지영 학술연구교수(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오원기 팀장(어린이재단), 손정은 대리(월드비전), 이경주 부장(KCOC HnD사업부), 박준영 과장(KCOC HnD사업부)

보조연구원 강소정(University of Sussex 석사과정)

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파트너십 연구 보고서

발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82 990빌딩 4층 | 02-2279-1705 | www.ngokcoc.or.kr

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파트너십 연구보고서

2020.12.

목 차

4 I. 연구 개요

- 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5 2. 연구 목적 및 범위
- 6 3. 연구 전략 및 방법
- 7 4. 연구 일정
- 8 5. 연구진 구성 및 추진체계

9 II. 한국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역사와 성과

- 9 1. 한국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역사
- 21 2.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
- 29 3.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기관 의견
- 35 4. 소결

39 III. 타 공여국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 39 1.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답론
- 42 2.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분야 현황
- 44 3. OECD DAC 15개 회원국 사례
- 69 4. 3개국 심층 사례
- 114 5. 소결

120 IV.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개선방안 제언

- 120 1. 제언 도출을 위한 연구 결과의 시사점
- 124 2.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 128 3. 이해관계자별 향후 과제

131 참고문헌 및 부록

표 목차

<표 1> 연구 추진 프레임워크	7	<표 26> 캐나다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주요 기금 현황	79
<표 2>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8	<표 27> 최근 5년간 인도주의 연합의 수입 및 지출 내역	85
<표 3> 정부 주요 정책 문서 중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주요 내용	11	<표 28> GAC IHA 파트너단체의 최소 자격요건	86
<표 4> 2016~2020년 인도적 지원 분야 ODA 예산	14	<표 29> 2019-2020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CHAF) 지원 사업 현황	88
<표 5> 2012~2020년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진행 내용	15	<표 30> CHAF 주요 회계 관리 지침	92
<표 6> 2012~2020년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신규 참여 CSO	16	<표 31> 기금 활성화 및 선정과정	92
<표 7> 2012~2013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추진 방향	17	<표 32> CHAF 기금 운영에 대한 기능별 역할과 책임	94
<표 8> 2014~2015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추진 방향	18	<표 33> 호주의 인도적지원 방법	96
<표 9> 2016~2017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추진 방향	19	<표 34> AHP 성과목표별 지원 분야	98
<표 10>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주기별 사업 운영 주요 내용	20	<표 35> Whitelum Group의 대표 프로그램	100
<표 11> 2011-2019년 인도적 지원 CSO 분야 예산 및 단체 수	23	<표 36> AHP Support Unit 구성인력	100
<표 12> 2012-2020년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현황	24	<표 37> AHP 프로그램별 지원 기간 및 횟수	103
<표 13> 2012-2019년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의 성과	26	<표 38> 국가별 Disaster READY 참여단체 현황	103
<표 14>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참여 CSO의 의견	33	<표 39> AHP 프로그램별 지원 규모	104
<표 15> GHD & 그랜드 바겐 비교	40	<표 40> 2017년~2022년 AHP 참여단체	105
<표 16> OECD DAC 공여국 중 기초조사 대상 15개국에 선정된 국가	44	<표 41> 2020년 기준 현재 ACFID 내 HRG 회원 단체	105
<표 17> 15개국의 인도적 지원 법·정책적 근거	48	<표 42> 제출 문서	106
<표 18> 기초조사 대상 15개국의 독립적인 시민사회협력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기간	51	<표 43> 인도주의 역량 맵(Humanitarian Capability Map) 구성 내용	107
<표 19> 파트너기관 선정 대상 및 자격	55	<표 44> 대응 위원회 구성표	110
<표 20>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 풀(Pool)을 사전에 선정하는 공여국	57	<표 45>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표	111
<표 2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수행 방식	60	<표 46> 2012~2019 8년 사업성과 요약	121
<표 22> 직접 지원과 위탁지원을 병행하는 국가들 사례	62	<표 47>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발전 단계 안	166
<표 23> 파트너단체 선정 기준	67	<표 48> 트랙 1 참여 자격 기준	167
<표 24> 2019 SIDA 인도적 지원 예산 배분 현황	70	<표 49> 트랙 2 참여 자격 기준	168
<표 25> SPO 분류 및 명단	76	<표 50>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 자격 기준	170
		<표 51>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트랙 1, 2 및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172

그림 목차

<그림 1> 1990~2010년대 CSO의 연도별 인도적 지원 사업지원 현황	12	<그림 8> 인도적 지원 규모 추세 2015-2019	42
<그림 2> 1990~2010년대 주요 재난별 인도적 지원 사업지원 현황	13	<그림 9> 주요 공여국의 단 년도/다년도 기금 비중 추세	43
<그림 3> 2016~2020년도 인도적 지원 ODA 예산	14	<그림 10> 그랜드 바겐 서명국(기관)의 인도적 지원 다년도 기금 추세 (대상별): 2016-2018	43
<그림 4>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도입 이후(2012~2020)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	15	<그림 11> 15개국의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이행 규모	46
<그림 5>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프로그램	16	<그림 12> 주요 공여국들의 전체 인도적 지원에서 시민사회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47
<그림 6>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도입 이후(2012~2020)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분야 구분)	21	<그림 13> AHP 참여 주체별 관계도	113
<그림 7> 2013~2019년도 인도적 지원 CSO 분야 예산	22	<그림 14> KOICA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발전 방안도	165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국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활동은 1990년대 전후에 시작되어 2000년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하 CSO)의 개발협력 사업비 규모가 2019년 기준 약 5,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함. 제도적 측면에서, 1995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민관협력단체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이 20년이 넘는 상태임. 지난 2019년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통과시킨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의 제도적 차원의 파트너십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음.
-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1994년 ‘르완다 내전’에 대한 긴급구호 이후 본격화되어,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 이라크 전쟁(2003), 이란 밤시 지진(2003), 서남아 쓰나미(2004), 아이티 지진(2010) 등의 과정을 거치며 본격화함. 국내 CSO들은 이 시기를 거치며 경험, 규모, 분야, 기술적 측면에서 발전하였고, 2010년대 들어 필리핀 태풍(2013), 네팔 지진(2015), 라오스 댐 붕괴(2018) 및 각종 크고 작은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음.
- 외교부는 2012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2020년까지 KOICA가 9년간 KCOC에 위탁 운영하는 파트너십 방식으로 실시했음. 이 프로그램으로 한국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있어 프로그램 변화, 참여 CSO 증가,

(전체 ODA 예산 증가에 따른)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 확대 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2018년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되던 ‘다년간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이 KOICA 로 이관되고, 기존에 소수의 수행단체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사업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됨. 이 과정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한 단계에 이르렀음.

2. 연구 목적 및 범위

1) 연구 목적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정리하고,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타 국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더욱 발전적인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제안함.

2) 연구범위

- 2012~2020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현황정리 및 평가를 통한 교훈 및 제언 사항을 도출함.
- OECD DAC 공여국의 정부-시민사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내용, 운영 전략 및 추진체계 분석을 통해 방향 및 운영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3. 연구 전략 및 방법

1) 연구 전략

- 연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연구자와 시민사회 활동가의 공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함.
- 9년간 시행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한 시민 사회의 경험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와 시민사회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사업개선의 효과를 제고함.
- 연구진 구성을 전문연구자, CSO, KCOC 공동으로 구성하고 2012~2020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한 CSO 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 타 공여국 사례 분석을 통해 심층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
- OECD DAC의 공여국 중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할 만한 국가들을 1차로 15개국 선정하여 제도 및 수행체계, 활용현황을 분석함.
- 1차 분석대상 15국 중 현재 KCOC가 진행하는 사업의 현재와 향후 미래상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3개국을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 분석을 실시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 조사, 2012~2020년 진행 사업에 참여한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기진행된 FGI의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함.
- 본 연구는 짧은 연구 기간(2020년 11월 ~ 2021년 1월)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추진함.
- 연구를 6개 분야로 구성해 분야별 목표와 산출물을 설정하고 진행함.

〈표 1〉 연구 추진 프레임워크

연구 분야	연구 목표	연구 방법	산출물
1 기존 프로그램 평가	• 2012~2020년 시행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단체의 평가 분석	• 설문 조사 • FGI 결과 문헌분석	• 기존 프로그램 개선안 도출
2 기존 프로그램 현황정리	• 2012~2020년 시행 프로그램 현황정리 및 분석	• 문헌 조사	• 프로그램 실적 현황정리
3 타 공여국 사례연구	•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사프로그램 사례조사 • 기초조사대상 15개국의 관련 프로그램 조사, 분석	• 문헌 조사	• OECD DAC 15개국 프로그램 분석표
4 심층 사례조사대상 국가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3개 심층 조사대상국의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해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 문헌 조사 • 연구진 심층 토론	• 3개국 심층 사례 분석표 • 정책 시사점
5 CSO 간담회	• 연구진이 작성한 제안사항에 대해 CSO 측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해 의견 청취 및 반영	• CSO 간담회 - 굿네이버스 김선 본부장 - 밀알복지재단 홍인경 부장 - 세이브더칠드런 이재광 부장 - 아디 전예지 팀장 - 팀앤티م 주현진 팀장	• 정책 제안
6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정책 제안 작성	• 2021년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방향 및 내용 정리	• 연구진 심층 토론 •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 관계자 토론	• 정책 제안

4. 연구 일정

○ 본 연구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 2020. 10. 15. 연구 기획 회의: 연구진 구성 및 범위논의
- 2020. 10. 27. 연구진 1차 회의: 연구진 역할분담, 사업 역사정리
- 2020. 11. 11. ~ 12. 11. 기존 사업 참여 관계자 설문 조사 시행
- 2020. 11. 12. 연구진 2차 회의: 기초조사 대상 OECD DAC 15개 국가분석 및 심층 사례 국가 선정
- 2020. 12. 10. 연구진 3차 회의: 심층 사례 3개국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2020. 12. 28. 연구보고서 초안 제출
- 2020. 12. 29. 연구진 4차 회의: 연구보고서 제안 정리 및 CSO 인터뷰
- 2021. 01. 08. 연구진 5차 회의: 사업개선방안 작성 토론
- 2021. 01. 15.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 대상 사업결과보고회 개최
- 2021. 01. 31.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5. 연구진 구성 및 추진체계

1) 연구진 구성

○ 본 연구는 보다 실제적인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자, 사업참여 CSO, 및 KCOC 관계자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추진함.

〈표 2〉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

구분	이름 및 소속	담당
책임 연구원 (1)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총괄 연구 개요 작성 설문지작성, 결과분석 및 FGI 결과 분석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분야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현황 작성 정책 제안 작성
연구원 (6)	이경신 인도적 지원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동향 작성 기초조사 15개국 중 프랑스, 호주, 캐나다 사례조사 심층 조사 3개국 중 스웨덴 사례조사 정책 제안 작성 참여
	홍지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조사 15개국 정리 및 시사점 도출 기초조사 15개국 중 노르웨이, EU, 영국 사례조사 정책 제안 작성 참여
	오원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조사 15개국 중 일본, 스웨덴, 스페인 사례조사 심층 조사 3개국 중 호주 사례조사 정책 제안 작성 참여
	손정은 월드비전 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조사 15개국 중 스위스, 독일, 미국 사례조사 심층 조사 3개국 중 캐나다 사례조사 정책 제안 작성 참여
	이경주 KCOC 부장, 박준영 KCOC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정부-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분야 파트너십 역사정리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특성 정리
연구 보조원 (1)	강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조사 15개국 중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사례조사 설문조사지 배포, 취합, 정리 기존 FGI 결과지 정리 연구지원

II. 한국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역사와 성과

1. 한국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역사

1)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비교적 최근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제도화가 본격화된 2005년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은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추진시스템 개선 내용으로 ‘해외 긴급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지만, 시민사회와의 협력 내용은 없음. 이후 2007년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의 근거 법률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을 2011년에 제정하고 개정함. 2010년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인도적 지원 확대’라는 내용을 강조하나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내용은 부재함.
- 정부가 2011년 발표한 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 무상협력 부분은 6대 전략 중 하나로 ‘분쟁-재해 관련 인도적 지원 및 평화구축 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밝히고, 긴급구호 분야에서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 추진’을 제시했지만, 시민사회와의 협력 내용은 없음. 이후 정부는 2015년 인도적 전략과 2015년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에는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개정안을 제시함. 정부가 종합적인 인도적 지원정책을 작성한 것은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19)’에서 제시한 3대 전략 중 하나인 ‘내실 있는 ODA’의 내용으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규모 지속적 확대, 정부-민간 간 협력 채널 구축

강화 등”을 제시하며 정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함. 구체적으로는 “정부-민간 간 협력 채널 구축¹⁾, 민간의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임.

○ 2019년 개정된 한국 ODA의 인도적 지원전략은 기본방향의 내용 중 하나로 제시한 ‘국내·외 행위자들과의 협력 강화’ 중 시민사회 부분에서 “국내·외 인도적 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적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우리 인도적 지원 생태계 육성”을 제시함. 구체적 내용은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내실화’와 ‘국제기구-국내 NGO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임. 또한, 향후 계획으로 ‘외교부-시민사회 간 정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구체 운영방안(참여 범위, 주기, 의제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 밝힘.

○ 2019년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정책을 규정한 최고층위의 범정부 정책 문서로, 다음과 같이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함.

“또한, 재난 대응, 재건 복구, 재난 예방, 평화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인도지원 사업 그리고 인도주의-개발-평화 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분쟁 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등 취약층을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코로나19 대응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제시한 개도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에서 ‘취약분야 인도적 지원 강화’를 제시하며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풍부한 현지 활동 경험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취약계층 중점 지원”을 제시함.

1) 민관협력 운영위원회 활용, 민관협력 수시 간담회 및 연례 포럼 개최

〈표 3〉 정부 주요 정책 문서 중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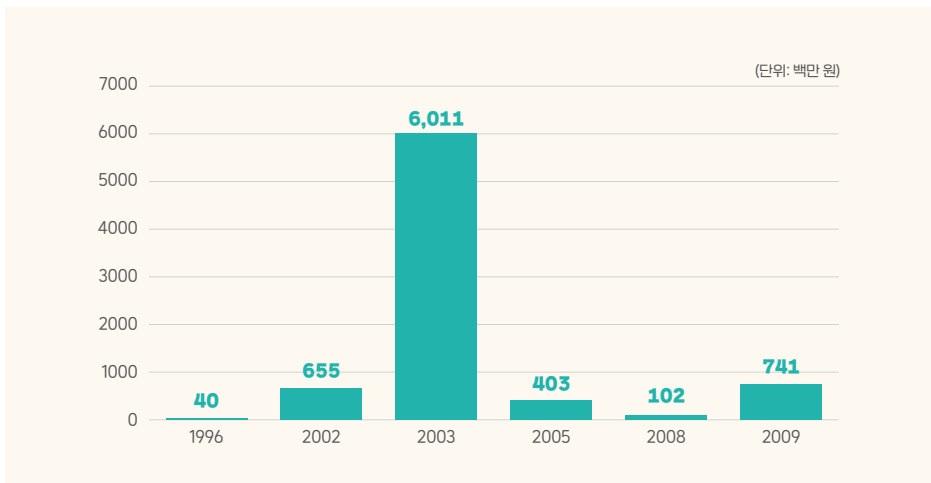
년도	정책문서명	주요 내용
2005년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 해외 긴급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해외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구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08년	제1차 해외긴급구호 대책 수립	• 해외 긴급구호대 편성 및 수행 세부 절차, 역량 강화 • 민간단체 관련 내용 별도 포함 없음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 인도적 지원 확대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 해외긴급구호 업무 표준 매뉴얼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민간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외교부장관으로 변경, 해외긴급구호 업무를 외교부에서 총괄
2011년	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 추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민간합동 해외긴급구호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2015년	인도적 지원전략	• 국내외 인도적 지원 NGO, 민간공여자 등과의 협력 강화
2015년	제3차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 해외긴급구호대(KDRT) 표준인력 편성 및 인력풀 구성 구체 방안 마련 신속한 구호대 파견 결정을 위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소집 체계 신설 • KDRT 관리·운영을 위한 KDRT 운영협의회 설치 및 KDRT 사무국 역할 규정 •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 체계 구축; 민간 파트너십 확대 명시
2016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정부-민간 간 협력 채널 구축 • 민간의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협력 강화
2018년	제4차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 해외긴급구호 기본방향 제시 • KDRT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화 • 현금지원 시 양자지원보다는 유엔기구 또는 다자채널이나 공신력 있는 NGO 지원 우선 고려 •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한 국내 민간단체들의 긴급구호 역량 강화 지원
2019년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	•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 내실화 • 국제기구-국내 NGO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재난 대응, 재건 복구, 재난 예방, 평화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인도지원 사업 • 인도주의-개발-평화 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 • 분정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등 취약층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에서의 협력 확대
2020년	제5차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 해외긴급구호대 의료팀 운영·관리 효율화 • KDRT 장비·물품의 운용 및 관리 체계화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취약분야 인도적 지원 강화 -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풍부한 현지 활동 경험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취약계층 증점 지원

출처: 2005년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년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 해외긴급구호 업무 표준 매뉴얼, 2011년 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책, 2011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6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책, 2019년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 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08-2015.2018.2020년 1, 3, 4, 5차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

2) 1990~2010년대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

- 2012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이전에는 주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협력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재난 대응의 현장 활동에 대해 교훈과 성과를 상호학습하는 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협업을 해왔음.
- 1990~2010년대 연도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인도적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이 그때마다 이루어졌음. 특히,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긴급구호 및 재건 복구 활동에 가장 큰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그림 1〉 1990~2010년대 CSO의 연도별 인도적 지원 사업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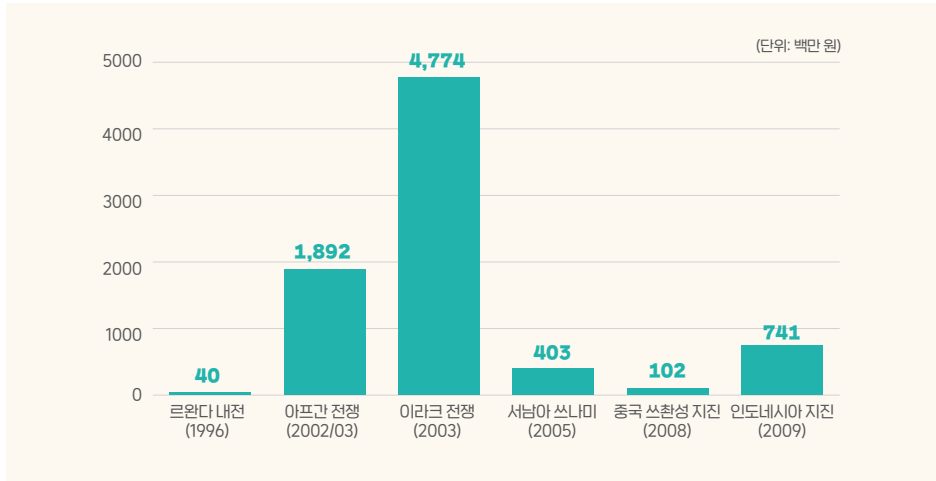


출처: KOICA 연보 및 KCOC 총회 자료

- KOICA는 아프간 전쟁 후 2002년 6개의 CSO를 통하여 약 655백만 원 규모의, 2003년에는 15개 CSO를 통하여 약 1,237 백만 원 규모의 긴급구호, 재건 복구 활동을 진행했음.
- KOICA는 2003년 4월 이라크 전쟁 직후 11개 CSO를 통하여 150만 불 규모의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10개 CSO를 통하여 300만 불 규모의 재건 복구를 지원함.

-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의 경우, 별도의 정부 자금지원은 없었으나, CSO와 외교부, 국방부 간 업무협약의 및 CSO 통관 업무를 지원하고 아이티 현장에서 민관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협력이 있었음.

<그림 2> 1990~2010년대 주요 재난별 인도적 지원사업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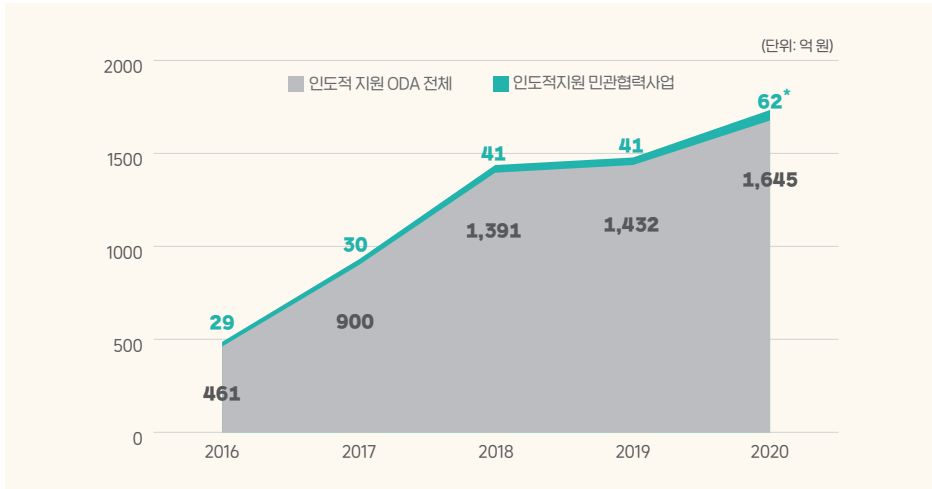
출처: KOICA 연보 및 KCOC 총회 자료

- 매년 발간되는 KOICA 연보와 KCOC 총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재난별 정부-시민사회 협력 활동은 긴급구호와 재건복구성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민관협력사업) 활동과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회의, 워크숍, 재난 대응 결과의 교훈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임.

3)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2012년~)

- 전체 인도적 지원 ODA 예산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당 예산 내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다만, 인도적 지원 ODA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16년도(6.3%)와 비교하여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인도적 지원 ODA 예산 내 민관협력사업이 차지하는 비율(3.8%)은 오히려 감소했음. 인도적 지원 ODA 예산이 1,700억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원되는 금액은 41억 원에 그치고 있음.

〈그림 3〉 2016~2020년도 인도적 지원 ODA 예산



*2020년의 경우, COVID-19 대응 긴급구호사업으로 전용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임.

** 인도적 지원 ODA 전체(예산 기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결산 기준)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9b),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KCOC 내부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표 4〉 2016~2020년도 인도적 지원 분야 ODA 예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도적 지원 ODA 전체	461억 원	900억 원	1,391억 원	1,432억 원	1,645억 원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29억 원	30억 원	41억 원	41억 원	62억 원*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단체 수	9	9	15	14	12
인도적 지원 ODA 민관협력사업 비율	6.3%	3.3%	2.9%	2.9%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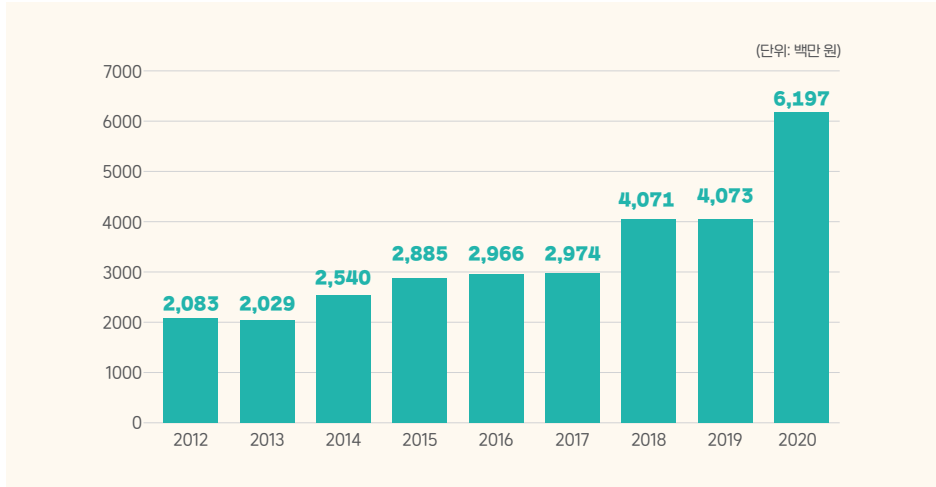
*2020년의 경우, COVID-19 대응 긴급구호사업으로 전용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임.

** 인도적 지원 ODA 전체(예산 기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결산 기준)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9b),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KCOC 내부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 도입된 2012년 이후로 2020년까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단체 수 및 사업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개별사업의 평균 규모가 초창기 2012~2013년 대비하여 증대하였음.

<그림 4>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도입 이후(2012~2020)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



출처: 2012-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발췌하여 연구진 재구성

○ 2012~2020년 9년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으로 집행된 사업비 규모는 총 298억 18백만 원으로, 총 누적 91개의 CSO가, 개별단체 기준으로는 22개의 CSO가 참여했으며 수행된 사업 수는 190개 임.

<표 5> 2012~2020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진행 내용

구분	착수기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			총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 규모 ²⁾ (백만 원)	2,083	2,029	2,540	2,885	2,966	2,974	4,071	4,073	6,197	29,818
참여단체 수(개)	6	8	10	8	9	9	15	14	12	91
지원사업 수(개)	17	31	24	19	21	16	18	22	22	190
개별사업 평균규모 (백만 원)	123	65	106	152	141	186	226	185	282	-

출처: 2012-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발췌하여 연구진 재구성

○ 2012년 시작 이후 9년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CSO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참여했음. 2012년 6개 단체 참여 이후 2020년까지 총 16개의 CSO들이 신규로 참여함.

2) 지원규모 = CSO의 프로젝트형 사업비 + 운영기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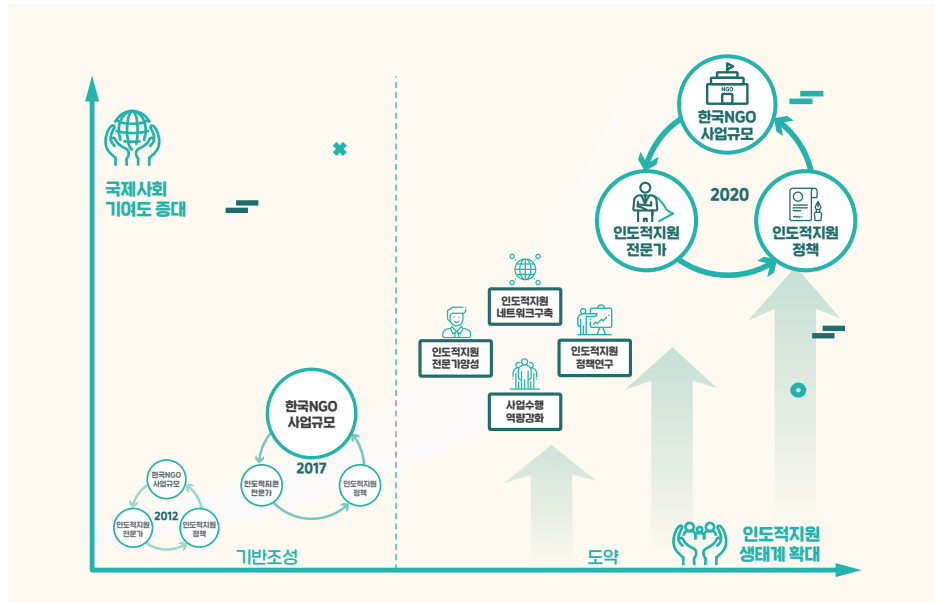
<표 6> 2012~2020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신규 참여 CSO

연도	신규단체 수	단체명
2012년	8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해비타트, 메디피스, JTS, 어린이재단, 글로벌케어
2014년	3	팀앤티, 조계종, 밀알복지재단
2016년	1	더멋진세상
2018년	4	아디, 플랜, 더프라이스, 호이
2019년	3	아시아포커스, 에이패드, 코피온
2020년	3	월드비전, 컨선월드와이드, 리홀

출처: KCOC 내부자료

○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2년 주기로 단체/사업선발을 진행해오며 2020년 현재까지 진화되어옴. 2년 주기의 선발에 따라 프로그램의 방향이 수정·보완되어 왔기 때문에 주기별로 특성을 살려 시기를 구분하였고,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그림 5>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프로그램



출처: 2018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사업 수행계획서

- 2012년 이전: 2012년 이전에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CSO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ODA 예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인도적 위기 발생 시마다 변동적인 자금이 CSO에 지원되었음.

(1) 착수기(2012~2013년)

○ 사업추진 방향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 도입될 당시 추진방향은 ‘NGO가 재난 발생 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었음. CSO에 사업자금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기획됨.

<표 7> 2012~2013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추진 방향

구분	내용
네트워크	정부-민간 간의 협력 채널 구축(상시, 구호현장, 홈페이지)
자금지원	민간의 해외 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자금, 통관·수송 등)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인력풀, 교육 훈련)

출처: KCOC(2014)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실행계획

○ 사업운영방식

-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CSO를 선발하여 이들이 시의적절하게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이에, 까다로운 CSO 선발 이후에는 단체들이 사업 요청 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었음. 외교부-KOICA-KCOC 3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수행단체 선발 및 사업승인 심사를 진행함. 연중 사업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침.

○ 자금지원 사업 분야

- 사업 분야 또한 긴급구호와 조기복구만 있었으며, 대부분 사업이 긴급구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작은 규모의 긴급구호사업이 다수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임(긴급구호:조기복구 = 8:2).

(2) 형성기(2014~2015년)

- 사업추진 방향
 - 착수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자금지원사업은 유연성 및 신속성을 개선하여 진행하고자 했음.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규모, 분야, 지역적으로 보완하며, 한국의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표 8> 2014~2015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추진 방향

구분	내용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실효성 제고 및 옹호 활동 강화
자금지원	자금지원의 유연성 및 신속성 제고
역량 강화	전략적 역량 강화 추진

출처: KCOC (2014)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 실행계획

- 사업 운영 방식
 - CSO 선발 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함. CSO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되, CSO별 연간대응계획수립, 기획·모니터링·평가 가이드라인 구체화, 안전위기관리 강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5만 불 이하는 운영기관(KCOC) 승인, 5만 불 초과인 경우에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하고, 연중 사업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침.
- 자금지원 사업 분야
 - 매칭 및 초동자금·조기복구 구분을 폐지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함. 긴급대응 중심에서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Management, DRR), 난민/IDPs(Internally Displaced People) 지원이 추가됨.

(3) 성장기(2016~2017년)

- 사업추진 방향
 - CSO들이 동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그리고 장기화된 재난 상황에서 예

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었음.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특성에 적합한 승인절차 개선, 사업 모니터링 및 종료평가 강화를 통한 개별사업의 품질 관리 등의 제도적 보완을 실시함. 더불어, 단계별로 차별화된 역량 강화 추진 및 인도적 지원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제/국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회 제공이 포함됨.

<표 9> 2016~2017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추진 방향

구분	내용
네트워크	인도적 지원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자금지원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효과성 제고
역량 강화	단계별 차별화된 역량 강화 추진

출처: KCOC (2016)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실행계획

○ 사업 운영 방식

- CSO 선발 기준대로 유지함. 자금 규모(5만 불 기준)로 승인 주체를 구분했던 형성기와 달리 성장기에는 인도적 지원 특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 특성(사업 분야)별로 승인 주체를 구분함. 긴급구호 사업은 운영기관(KCOC) 승인, DRR/난민/조기복구 사업은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변경됨. 연중 사업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침.

○ 자금지원 사업 분야

- 긴급구호, 조기복구, DRR, 난민/IDPs 지원으로 변동 없음.

(4) 전환기(2018~2020년)

○ 사업추진 방향

- 2012년 착수 이래 외교부가 관할하던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2018년 KOICA로 완전히 이관되었으며, 그간의 사업 방향이 CSO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한국 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 발전 및 파트너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변경됨. 또한, 전환기(2018~2020) 사업을 통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예산 규

모가 급격히 확대됨.

○ 사업 운영 방식

- 역량 있는 단체 선발에서 사업 위주 선발 기준 및 운영 방식이 다소 변경됨. 사업 타당성 및 수행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개별사업 규모가 기존 대비 증대됨. 특히, 최대 지원사업 규모를 4억으로 확대함. 운영위원회 중심의 선발방식에서 KOICA 사업수행단 체선정심사위원회(위원장: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를 통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경됨. 인도적 지원 사업공모 일정에 따라 일시 진행됨(긴급구호사업 제외).

○ 자금지원 사업 분야

- 긴급구호, 조기복구, DRR, 난민/IDPs 지원에서 GBV(Gender Based Violence)가 특별지 원금으로 추가 편성됨.

〈표 1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주기별 사업 운영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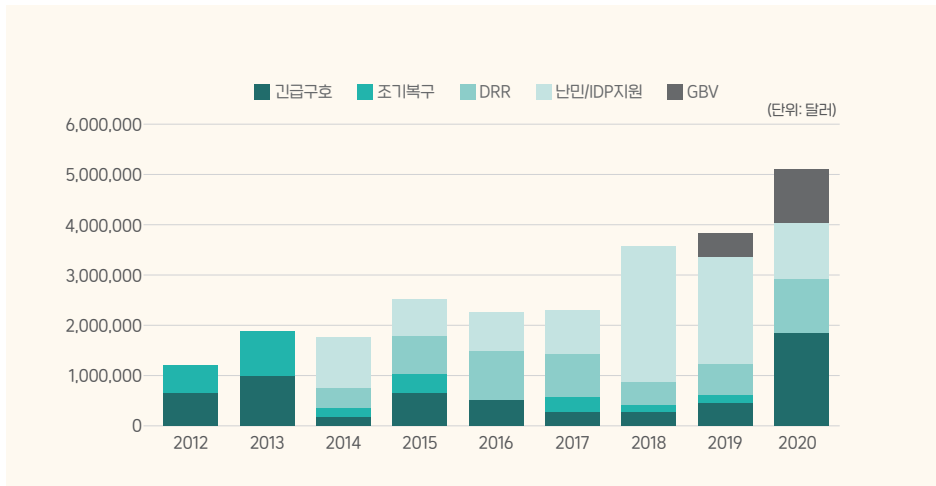
사업 기간	사업 운영 주요 내용
(착수기) 2012~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규모) 2년간 41억 • (선발방식) 자격을 갖춘 단체를 미리 선발 • (지원 분야) 초동지원, 조기 재건 복구 • (자금신청) 연중 상시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신청 가능 • (사업승인) 5만 불 이하의 KCOC, 5만 불 이상은 운영위원회 승인 (3일 이내)
(형성기) 2014~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규모) 2년간 54억 • (선발방식) 자격을 갖춘 단체를 미리 선발 • (지원 분야) 긴급구호, 조기복구, 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 (자금신청) 해당연도 10월까지만 자금신청 가능, 연내 사업 종료 필수 • (사업승인) 5만 불 이하의 KCOC, 5만 불 이상은 운영위원회 승인 (3일 이내)
(성장기) 2016~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규모) 2년간 59억 • (선발방식) 자격을 갖춘 단체를 미리 선발 • (지원 분야) 긴급구호, 조기복구, 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 (자금신청) 해당연도 10월까지만 자금신청 가능, 연내 사업 종료 필수 • (사업승인) 긴급구호는 KCOC, 그 외 사업은 운영위원회 승인
(전환기) 2018~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규모) 3년간 143억 • (선발방식)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선발 • (지원 분야) 긴급구호, 조기복구, 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분쟁하 성폭력 • (자금신청) 사업공모를 통해 선발, 긴급구호는 연중에 지정된 재난에 한해 신청 가능 • (사업선발) KOICA가 구성하는 선정심사위원회

2.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

1) 주요 사업성과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성과는 ‘이재민들에게 인도적 서비스 제공’,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활동 규모 확대 및 분야확장’,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조직 및 인력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정책 형성 기여’, ‘국제 인도적 지원 규범 형성에 기여’, ‘상호학습 및 동료/연대 공간 조성’, ‘국제인도적 지원 협력 메커니즘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자기구 협력 증대’등 7가지로 정리됨.
- 이재민들에게 인도적 서비스 제공
 -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총 293억 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총 91개의 CSO가 36개국에서 190개의 사업을 실행하여 195만 명의 이재민들에게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낮출 수 있는 인도적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6〉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도입 이후(2012~2020)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분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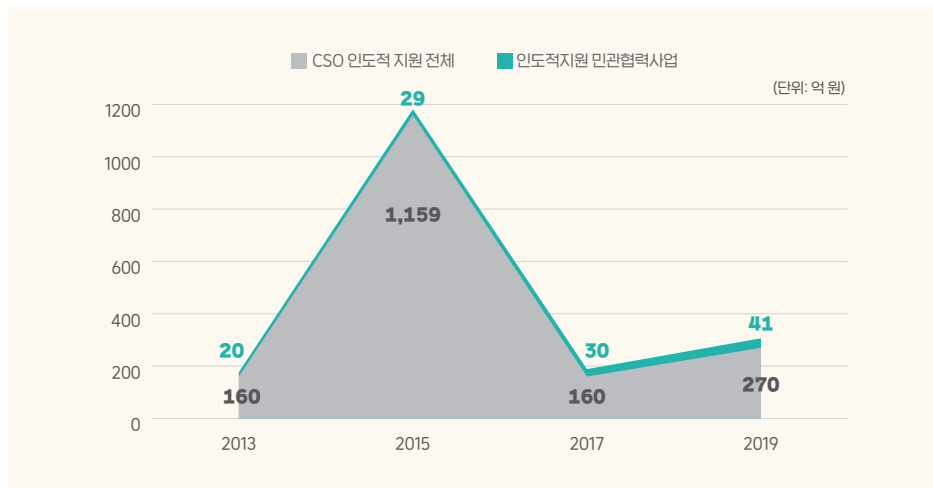
출처: 2012-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발췌하여 연구진 재구성

-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활동 규모 확대 및 분야확장
 - 격년으로 발간되는 CSO 편람에 따르면, CSO의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은 2013년 약

160억 원에서 2019년 약 270억 원에 이르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 중에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정부 자원(ODA 예산)은 2013, 2017, 2019 3년간 평균 약 16.1%를 차지함. 이같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CSO들의 인도적 지원 사업 비 규모가 확대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 기여함.

- 민간모금을 기반으로 한 CSO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긴급구호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된 ODA는 DRR, 난민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도적 위기 발생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여러 형태의 사업수행을 가능케 하는데 기여함³⁾. 이같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CSO의 인도적 지원사업의 확장성을 가져오는 데 영향을 끼침.

<그림 7> 2013~2019년도 인도적 지원 CSO 분야 예산



출처: CSO 편람(2013~2019)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3) 네팔 지진이 있었던 2015년은 CSO들의 자체 사업이 많았던 예외적인 상황임으로 제외함.

〈표 11〉 2011~2019년도 인도적 지원 CSO 분야 예산 및 단체 수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CSO 인도적 지원사업	전체 규모(억 원)	104	160	1,159	160	270
	단체 수(개)	-	43	54	36	4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전체 규모(억 원)	-	20	29	30	41
	단체 수(개)	-	8	8	9	14
CSO 인도적 지원 규모 중 민관협력사업 비율(%)		-	13	3	19	15

출처: CSO 편람(2013~2019)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조직 및 인력 역량 강화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한국 내 CSO의 인도적 지원 전문 인력양성과 신규 CSO의 인도적 지원 분야 진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본 사업을 통해 51회에 걸쳐 인도적 지원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기획 기회를 제공하는 등 총 1,761명에게 사업수행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했음. 인도적 지원 분야에 신규 CSO가 지속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된 인도적 지원사업 수행 및 교육을 경험한 양성된 인력들은 교육생이나 참여자를 넘어서 다른 단체들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 역할을 수행함. 실제로 2012년, 2017년 Sphere ToT(강사양성 교육)를 통하여 발굴된 7명의 실무자가 2014, 2016, 2019, 2020년도 Sphere 교육 강사로 활동함. 또한, 다년간의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과 제공된 교육을 통하여 발굴된 4명의 실무자가 2020년 인도적 지원의 이해 교육에서 ‘국제인도적 지원의 체계 및 조정’, ‘인도적 지원의 책무성과 윤리성’, ‘인도적 지원사업 소개’, ‘인도적 지원 분야의 파트너십’강사로 활동함.
- 더불어, 이전에는 민간단체 내 인도적 지원 전담부서가 미비하였으나 동 사업을 통해 인도적 지원사업의 전문성 담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단체에 요구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전담부서 생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인도적 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에 기여하였음.

〈표 12〉 2012-2020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현황

구분	교육명	교육 연도	실시횟수	교육생 수
기본	인도적 지원의 이해	2012~2020	9회	320명
	Sphere Training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6회	173명
	안전위기관리	2012, 2016, 2017	3회	79명
	Contingency Planning	2012, 2013	2회	34명
심화	Initial Needs Assessment	2012, 2020	2회	49명
	M&E in Humanitarian Context	2019	1회	20명
	현장실습(Needs Assessment, DRR, Peer Review, Gender Analysi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6회	65명
강사양성	Sphere ToT	2012, 2017	2회	25명
	안전위기관리 ToT	2014	1회	6명
현장	인도적 지원의 이해, 젠더 감수성, 교육사업 운영 실습 등	2014, 2016, 2017, 2018, 2019	6회	151명
국외파견	IDHA, DMTC,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Humanitarian Action, Humanitarian Response Workshop	2012, 2013, 2014	4회	21명
온라인	주제별 교육	2020	9회	818명
합계			51회	1,761명

출처: 2012-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발췌하여 연구진 재구성

○ 인도적 지원 정책 형성에 기여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고,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난민 문제에 대해 한국 CSO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분쟁과 재해 상황에서 취약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형성에 CSO가 참여하는데 기여함. 실제 동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단체들은 2019년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방안 ‘3. 취약층 우선지원 및 협력 확대’에 인도적 지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데 기여함.
- 2012년 OECD DAC Peer Review 권고사항으로 2015년 한국 인도적 지원 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인도적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는 CSO들이 중심이 되어 Peer Review 권고사항에 정부 정책 마련 모니터링, 정책 대화 요구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여 인도적 지원전략이 형성되는 데 기여함.

○ 국제적 인도적 지원 규범 형성에 기여

- 2019년 개최된 Global Refugee Forum에서 KCOC를 중심으로 6개 단체(굿네이버스, 더멋진세상,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는 공동공약(Joint Pledge)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공동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 난민지원 활동을 하는 CSO들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업을 모색할 기회를 마련하였음. GRF 아웃리치팀을 구성하여 한국의 CSO 실무자들이 국제 난민 문제 논의의 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 외교부, KOICA, 굿네이버스, KCOC, BRAC, UNDP UGANDA 등과 함께 공동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KCOC의 경우,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난민지원사업 연구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발언함.

○ 상호학습 및 동료/연대 공간 조성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통하여 동 사업을 실시하는 수행단체 실무자 대상 정기·수시 간담회,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맥락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형성하고 단체/동료 간의 유용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2015년 네팔 대지진과 2016년 에콰도르 지진 대응 시 단체간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였음.
- 과거 대형 재난에 대응하여 많은 CSO가 동시에 개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여 시민사회 공동의 교훈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음. KCOC가 조정역할을 하였던 ‘2013년 필리핀 하이엔 태풍 대응’ 및 ‘2015년 네팔 대지진 대응’ 이후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CSO 간담회와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함.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으로 제공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DRR 및 Needs Assessment Workshops, 동료평가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과 고민을 공유함.

○ 국제 인도적 지원 협력 시스템 참여기회 확대 및 다자기구 협력 증대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사업을 이행하는 단체 중 굿네이버스, 팀앤티프는 UNICEF, UNHCR, WFP 등 주요 인도적 지원 다자기구들에게 현지에서 안정적인 사업수행 능력과 적극적인 기여,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클러스터 내에서 글로벌 기구들과의 역할 분담에 기여해 옴.

- 굿네이버스와 팀앤티의 사례는 단체나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문성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다자기구와의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이는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통하여 인도적 지원사업 발굴과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고, 다년 사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결과임.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다자기구들과의 협업 경험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 다자기구의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난민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더멋진세상 및 밀알복지재단의 경우, 난민캠프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UNHCR의 소통과 조정 체계 안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발판을 꾸준히 구축 중임.

〈표 13〉 2012-2019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성과

구분	내용
이재민들에게 인도적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2020년 9년간 293억 원의 자금지원 통해 91개 CSO가 36개국에서, 190개의 사업 실행해 약 195만 이재민들에게 인도적 서비스 제공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활동 규모 확대 및 분야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한국의 약 22개 CSO가 10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실행. 2019년 약 49개 CSO가 234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실행 • 지원 규모 및 참여 기관 숫자 측면에서 약 2.2배 양적 성장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조직 및 인력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0년 전 CSO 중에 인도적 지원 전담부서가 존재하는 CSO는 2개였으나,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과정에서 2020년 5개의 CSO가 인도적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함 • 2012~2019년 동안 51회, 총 1,761명에게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인도적 지원정책 형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DAC Peer Review 권고사항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전략 수립. 이 과정에서 인도적 민관협력사업 참여 CSO들이 중심이 되어 DAC Peer Review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 정책 마련 모니터링, 정책 대화 요구 등 내용으로 정책 애드보커시 시행 및 기여 • 2019년 채택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방안 중 인도적 지원 분야 내용 작성에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참여 CSO 주도
국제적 인도적 지원 규범형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개최된 Global Refugee Forum에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한 CSO들 주축으로 공동공약(Joint Pledge) 작성
상호학습 및 동료/연대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 활동 동료 간의 문의,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 • 스피어 강사, 인도지원 연구 관련 인력, 섹터별/이슈별 실무자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갖춘 그룹 생성
국제인도적 지원 협력 메커니즘 참여기회 확대 및 다자기구 협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단체 중 3개 단체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다자간 인도적 지원 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협력 메커니즘 참여

출처: 2021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사업 수행계획서

- 특히, KOICA로 이관된 이후에는 ‘전체 예산 확대(2017년 30억 → 2018년 41억)’와 더불어 CSO 중심에서 사업에 보다 비중을 두고 심사 및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개별 사업의 규모가 확대(2017년 평균 1.7억 → 2018년 평균 2.4억)’되고 ‘참여하는 신규 단체수도 증대(2012-2017년 중 최대 10개 → 2018-2020년 중 최대 15개)’되었음. 작은 규모의 많은 긴급구호 대응에서 보다 큰 규모의 긴급구호 대응 및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난민/IDPs 지원 사업이 많아짐.
-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범위(coverage)’를 넓히고 ‘현장에서의 개별 사업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 증대’에 기여함. 더불어, 개별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CSO의 기존 사업비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였던 사업 성과관리 및 인력에 대한 추가 편성으로 ‘개별 사업의 효과성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됨.
- 더불어, KOICA 본부 및 현장사무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해짐. 시행기관인 KOICA를 통하여 인도적 위기 발생 시, KOICA 본부-현장사무소를 통한 NGO와의 신속한 정보 교류 및 지원이 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현장 기반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 형성된 초기부터 단체들의 수요가 있었으나 KOICA로 이관된 이후 CSO의 개별 프로젝트에 있어 ‘다년도 사업이 처음 도입(2019년)’되었음. 이는 KOICA가 사업을 직접 시행 및 관리하는 시행기관으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공모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도출된 결과이기도 함. 이에 따라 매년 마다 시행된 사업공모 절차로 인하여 연초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에서의 공백과 사업예산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접근에서의 인도적 위기 대응과 상황에 대처함과 동시에 성과관리 연계가 가능해짐.
- KOICA로 이관된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 등 NGO단체들이 인도적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 2020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구호에 대한 현장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했던 바, 이에 대하여 KOICA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내 추가 전용예산을 편성하여 인도적 지원의 성격에 맞게 적시에 현장에서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음. 기존 예산 내에서의 대응이 아닌 추가 편성과 긴급구호 사업 지원 절차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도

적 지원 사업을 수행함.

- NGO와 국제기구 간의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로 우리NGO가 현장에서 보다 긴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노력을 하고 있음. NGO가 국제기구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nd 역량강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높은 장벽이라고 여겨졌던 NGO의 국제기구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제 사업으로의 참여를 구체화·현실화하고 있음.

3.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기관 의견

1) 개요

- 목적
 - 인도적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CSO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함.

- 구성 및 방법론
 - 초점집단인터뷰(FGI)
 - 특징: KCOC가 2020년 11월 작성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요조사 보고서’ 중 일부 내용 정리
 - 일시: 2020년 10월 21,22,23,26,27일 총 5일
 - 대상: 인도적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5개 CSO의 관리자 5명 및 실무자 14명 총 19명⁴⁾
 - 설문 조사
 - 특징: 연구진이 직접 실시
 - 일시: 2020년 11월 11일~12월 16일
 - 대상: 인도적 민관협력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CSO 15개 단체⁵⁾

2) FGI 주요 내용 분석

- (장점 및 도움 된 사항) 인도적 민관협력사업의 장점 및 도움이 된 내용
 - FGI에 참여한 19명의 CSO 활동가들은 사업의 장점 및 도움이 된 내용에 대해 ‘자금 안정성’,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 ‘사업 영향력 확대’, ‘장기사업 계획수립 가능’에 해당

4) FGI에 참여한 단체는 총 15개로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글로벌케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더멋진세상, 리홍, 밀알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아디, 어린이재단, 컨선월드와이드, 팀앤팀, 플랜한국위원회, 한국월드비전, 한국해비타트임.

5) 설문조사에 참여한 단체는 총 15개로 굿네이버스, 글로벌케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더멋진세상, 더프라마스, 리홍, 밀알복지재단, 사단법인호이,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월드비전, 익명, 팀앤팀, 플랜한국위원회,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한국해비타트임.

하는 내용을 제시했음.

- ‘사업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CSO가 인도적 지원사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등 내부의 조직적 역량구축에 기여한 점은 본 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됨. 또한, 사업을 바탕으로 국제기구협력에 대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큼.
- (개선필요사항)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 CSO 활동가들은 <표 14>과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행정처리 간소화 및 유연성 확대’, ‘실무자 간 네트워크 기회확대’, ‘KOICA 소통 채널 및 역할 확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를 제시함.
 - ‘행정처리 간소화 및 유연성 확대’의 주요 내용으로 전반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것을 제안함.
 - ‘실무자 간 네트워크 기회확대’의 내용으로 제시된 주요 의견들을 정리하면 CSO 담당자들은 형식적인 회의 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자 간 네트워크 및 대화의 장을 원하고 있음.
 - ‘KOICA 소통 채널 및 역할 확대’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수행 기관인 KCOC에 운영 관련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강화할 것을 강조함
 - ‘KCOC 소통 채널 및 역할 확대’의 주요 내용으로 감독자 역할보다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소통을 강조함.
 - 많은 CSO 활동가들이 보다 진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요구함.
- (CPP 사업 대비 장점) 시민사회협력실 CPP 사업 대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장점
- CSO 활동가들은 KOICA의 대표적 민관협력사업인 시민사회협력 사업(CPP) 대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장점으로 ‘자금부담완화’, ‘중간지원단체 운영 방식의 효율성’, ‘참여단체 확장’, ‘행정적 편의’를 제시함.
 - 많은 단체가 제시한 ‘중간지원 단체 운영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KCOC가 사업 시행 단체들을 잘 대변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단체의견 수렴, 조정, 소통, 네트워킹 제시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CPP 사업 대비 개선 필요사항) 시민사회협력실 CPP 사업 대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개선 필요사항
 - CSO 활동가들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친화적 행정 대응 필요’, ‘CPP 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KCOC역할 개선’ 등을 제시함.
 - ‘현장 친화적 행정대응 필요’의 내용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특수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현장 정산, 보고서 제출 시점 고려 등에 대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KCOC 역할 개선’에 대해서는 KCOC의 자율성 및 의사결정 권한 부족으로 결정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KCOC 역할평가) KCOC의 사업참여 CSO 입장 대변 역할
 - CSO 활동가들은 KOICA로부터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KCOC의 역할에 대해 ‘운영의 긍정적 역할수행’, ‘중간지원 단체 역할수행’, ‘KCOC-NGO 커뮤니케이션 역할’, ‘기타 펀드처 마련’ 등 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먼저 ‘운영의 긍정적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KCOC가 인도적 분야 성장에 역할, 정보제공, 단체 책무성 제고에 기여, 단체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실질적 역할에 기여한다고 평가함.
 - ‘중간지원 단체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CSO 간 소통, KOICA 등 정부의 역할수행 제고 등을 요구하고 중간지원단체로서 KCOC의 권한과 책임 증대를 요구하기도 함. 이외에도 CSO보다 KOICA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표명도 있음.
 - ‘KCOC-NGO 커뮤니케이션 역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타 펀드처 마련’의 내용으로 KOICA 이외 기업 등의 펀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함.

- (KCOC 역할 기대) 국내 인도적 생태계 육성을 위한 KCOC 역할
 - 19개 단체의 CSO 활동가들은 국내 인도적 생태계 육성을 위한 KCOC 역할에 대해 ‘단체 간 소통 채널 확대’, ‘단체 역량 강화 지원’, ‘다자기구협력 활성화’, ‘자체역량 강화’를 요구함.
 - ‘단체 간 소통 채널 확대’에 대해서는 대형 및 중소형 단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 사업

사례와 성과공유자리 확대 등을 요구함.

- ‘단체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심화 교육, 분야/수준별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것과 소규모단체의 역량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함.
- ‘다자기구협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자기구 및 현장의 타 NGO들과의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함.
- ‘자체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KCOC가 본 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자체적 의견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기업 펀딩 마련, 대국민 홍보 증대, 학계 연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표 14〉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CSO의 의견

항목	사업의 성과 및 장점	사업운영 개선 필요사항	사업유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안정성 •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 • 사업 영향력 확대 • 장기사업 계획수립 가능 <p><CPP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부담완화 • 중간지원단체 운영방식의 효율성 • 참여단체 확장 • 행정적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리 간소화 및 유연성 확대 • 실무자간 네트워크 기회 확대 • KOICA 소통 채널 및 역할 확대 •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p><CPP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최적화 행정대응 필요 • CPP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 KCOC역할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구분에 대해 응답자의 약 80%가 적절 • 재난의 특성(재난 기간/지속성) 및 지속 혹은 신규사업에 따른 구분과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 사업 전부를 지부형 모두 폐지 • 일반지원금 사업유형 '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구분 대체적으로 적절 • 특별지원금 사업유형인 '분쟁해 상폭력, 긴급구호' 구상에 대해 응답자 약 50% 적절 • 분쟁해 상폭력은 일반지원금으로 편성, 전염병 예방 및 대응, 평화연대(에드보카시)추가, 정부·KOICA의 정책기조에 맞춘 분야 및 자유 추제 트랙 구성
사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야 구성인 '식량안보 및 영양, 식수 및 위생, 보건, 주거 및 비식량물자, 교육, 심리사회지원, 생계지원' 등에 응답자 약 50% 적절 • 추가항목으로는 보호, 재난경감, 다분야(Cross-sectoral), 환경(에너지), 평화구축(Peace-building), 인권 제시 	<p>사업비 규모, 배분 비율, 지급방식</p> <p><사업비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규모 응답자 약 95%가 증대요구 • 개별 사업비 최소 5억 원, 프로그램 사업비 규모 최소 30억 원, 60억 원, 100억 원 제시. 사업비 규모 미설정 의견 제시 <p><사업비 배분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약 50%가 난민위험,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 사업, 분쟁해 상폭력 사업과 긴급구호사업 배분비율 현 6:4 적절. • 3(일반지원금):1(특별지원금)배정, 타 사업분야 6: 긴급구호 4 제시. 그 외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배분, 긴급구호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 절대적 규모(20억 원) 수준의 긴급구호자금 배정의견 제시 • 응답자 40%는 개별사업 상한액 연간 4억 원 규모 유지, 50%는 증대 요청함. 대안으로 5억 원, 8억 원 제시함. 긴급구호는 상한선 설정에 유연성 반영의견 제시 	<p><사업비 지급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사업비 지급방식인 당해연도 1차(70%), 2차(30%)에 대해 응답자 60%가 적절하지 만, 긴급구호사업의 경우 일괄적 지급을 요구. • 일반지원금 KOICA 지원금 8 : CSO 자부담 2 에 대해 70% 이상이 KOICA 지원금비율을 90%, 100%로 확대할 것을 찬성 • 사업변경 선 승인 후 수행방식에 대해 60%가 조정이 필요의견 제시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야 구성인 '식량안보 및 영양, 식수 및 위생, 보건, 주거 및 비식량물자, 교육, 심리사회지원, 생계지원' 등에 응답자 약 50% 적절 • 추가항목으로는 보호, 재난경감, 다분야(Cross-sectoral), 환경(에너지), 평화구축(Peace-building), 인권 제시 	<p>사업비 규모, 배분 비율, 지급방식</p> <p><사업비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규모 응답자 약 95%가 증대요구 • 개별 사업비 최소 5억 원, 프로그램 사업비 규모 최소 30억 원, 60억 원, 100억 원 제시. 사업비 규모 미설정 의견 제시 <p><사업비 배분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약 50%가 난민위험,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 사업, 분쟁해 상폭력 사업과 긴급구호사업 배분비율 현 6:4 적절. • 3(일반지원금):1(특별지원금)배정, 타 사업분야 6: 긴급구호 4 제시. 그 외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배분, 긴급구호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 절대적 규모(20억 원) 수준의 긴급구호자금 배정의견 제시 • 응답자 40%는 개별사업 상한액 연간 4억 원 규모 유지, 50%는 증대 요청함. 대안으로 5억 원, 8억 원 제시함. 긴급구호는 상한선 설정에 유연성 반영의견 제시 	<p><사업비 지급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사업비 지급방식인 당해연도 1차(70%), 2차(30%)에 대해 응답자 60%가 적절하지 만, 긴급구호사업의 경우 일괄적 지급을 요구. • 일반지원금 KOICA 지원금 8 : CSO 자부담 2 에 대해 70% 이상이 KOICA 지원금비율을 90%, 100%로 확대할 것을 찬성 • 사업변경 선 승인 후 수행방식에 대해 60%가 조정이 필요의견 제시

항목	신규단체	사업심사	사업운영상: KCOC 위탁	기타 개선 필요사항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80%가 신규단체 지원금 규모 1억 원 적절평가 • 신규단체도 기존 단체와 동일하게 4억 원으로 사업비 규모 상한선 확대 및 신규단체에 자부담 항목설정 의견 제시 • 신규단체 사업 기간 1년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가 적절 평가 • 1년 6개월, 2년 주장하는 의견 제시 	<p><단체심사: 사업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60%는 대항단체에게만 유리한 현행 제도 개선 필요 제기, 단체 심사비용 낮추어, 단체심사 : 사업심사 비율로 40% : 60%, 50% : 50%, 60% : 40% 등 제시 <p><서류심사: 단체심사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70%이상 현 단체심사(70%)의 내용이 적절, 조정 필요 내용으로 사업 분야 이해도, 전문성, 일관성 비중 제고, 사업책임자에 대한 평가로 전환, 소규모단체에 대한 배려와 기준 필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전략, 계획 반영 및 한국인 직원 유무 등 제시 <p><서류심사: 사업심사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수가 현 서류심사 항목이 적절하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모든 응답자가 KOICA가 KCOC에게 사업의 기획, 수행, 운영과정 및 변경/검토/승인 의사결정권한, 예산변경, 예산중액, 긴급구조사업 행정절차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더 큰 자율성 부여 요구 • KCOC가 자원 투입해 인도적 지원 분야 인적 교류와 지식 공유 등 네트워크 활동 증진 할 것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사업 특성에 맞는 업무성과와 임팩트 설정 • 사업의 자립의 유연화 • 성과 측정 정부-시민사회 공동시행 •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과 중점분야의 민간수행단체 사업 적용을 위한 자료, 가이드 및 지원화 • 다빈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연구, 예산 증대 • 인큐베이팅·포일렛 프로그램 시행 • 사업심사 의견 반영 피드백 • CPP 수준의 예산 수립 및 집행의 유연성 제고 • 패널리 부여와 변화의 동기를 유발하고 촉진 동반 진행 • 사업 인력(특히 현지) 역량 강화 예산편성 • 인도지원사업 생태계 확대 조성 필요
	<p><면접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80%가 면접심사 항목인 정성평가(100)의 항목이 적절하다 평가 • 기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적정 비율로 최종 점수 확정, 현행이해도 항목 비율상향, 현행이해도(30), 사업실행의지(10)로 비중 조정 의견 제시 <p><면접심사 개선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50% 이상이 현 가점내용 적절평가 • 기타 의견으로 최근 1년내 현지 사전조사 경우 한국인 파견이 없는 사업은 현지 인력들의 방문조사도 가산점화, 현지 사업담당인력 가점을 1점보다 상향조정, 방문을 통한 현지 사전조사 항목은 서류심사의 사업타당성에서 평가. • 인도적 지원사업 통해 현지정부 및 국내외 시민을 대상으로한 어드보커시 및 인식제고 목적의 포럼, 간담회, 교육, 포럼 등 개최 가산점화 제안 			

4. 소결

1) 정리

〈한국 인도적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역사〉

-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국제개발협력 정책문서들을 통해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정부-시민사회협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015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19)’, 2019년 ‘한국 ODA의 인도적 지원전략’, 2019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중요한 정책적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정부 정책문서들임.
- 1990년대~2010년대 초반까지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CSO에 대한 정부의 자금협력이 제도화되지 못했고, 인도적 위기 발생마다 잠정적인 협력 프로그램 개설방식으로 실행되었음. 특히, 2011년 아프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2004년 서남아 쓰나미 이후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활동에 정부-시민사회협력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

- 2012~2019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7대 성과
 -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한 7대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서비스 제공
 - 시사회 인도적 지원 활동 규모 확대 및 분야 확장
 -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조직 및 인력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정책 형성에 기여
 - 국제적 인도적 지원 규범 형성에 기여
 - 상호학습 및 동료/연대 공간 조성
 - 국제인도적 지원 협력 메커니즘 참여기회 확대 및 다자기구 협력 증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기관 의견>

○ 15개 CSO의 19명 활동가 대상 FGI 결과

- 사업에 CSO 활동가들은 본 사업을 통해 ‘자금 안정성’, ‘개인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 영향력 확대’, ‘장기사업 계획수립 가능’이라는 성과를 얻었으며, ‘자금부담 완화’, ‘중간 지원단체 운영방식의 효율성’, ‘참여단체 확장’, ‘행정적 편의’라는 장점을 제시함.
- CSO들은 사업운영 개선을 위해 ‘행정처리 간소화 및 유연성 확대’, ‘실무자간 네트워크 기회 확대’, ‘KOICA 소통 채널 및 역할 확대’, ‘KCOC 소통 채널 및 역할 확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현장 친화적 행정대응 필요’, ‘KCOC 역할 개선’등을 제시함.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수행 기관인 KCOC의 역할에 대해 ‘운영의 긍정적 역할 수행’, ‘중간지원 단체 역할수행’, ‘KCOC-NGO 커뮤니케이션 역할’, ‘기타 펀드처 마련’ 등이 제시됨. 국내 인도적 생태계 육성을 위한 ‘단체 간 소통 채널 확대’, ‘단체 역량 강화 지원’, ‘다자기구협력 활성화’, ‘자체역량 강화’ 역할을 요구함.
- CSO들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현재의 사업유형과 사업 분야 개선, 개별 및 전체 사업비 규모 확대, 사업비 내용구성 변경, 사업비 지급방식 변경, 자부담 비율 조정, 사업비 변경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15개 CSO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사업 기간을 3년 이상의 다년 사업으로 확대를 제시함.
- 신규단체의 경우 규모 1억 원, 사업 기간 1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 사업심사에 있어 현 제도를 중소단체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현 서류심사 기준, 서류심사항목, 면접심사 항목, 면접심사 가점제도 등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 KCOC 위탁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큰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2) 시사점

- 한국 CSO의 인도적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 증대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 지난 9년간 한국 CSO의 인도적 지원사업의 규모 증대, 조직 및 인적 역량 강화, 정책 및 규범 형성 참여, 상호학습 및 동료/연대 공간 조성 등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 CSO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2~2020년 수행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 고도화 필요
 - 9년간 시행된 본 사업의 7개 성과인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서비스 제공’, ‘시사회 인도적 지원 활동 규모 확대 및 분야확장’,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조직 및 인력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정책 형성 기여’, ‘국제적 인도적 지원 규범 형성에 기여’, ‘상호학습 및 동료/연대 공간 조성’, ‘국제인도적 지원 협력 메커니즘 참여기회 확대 및 다자기구 협력 증대’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이를 위한 구체적 작업이 필요함. 또한 성과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 규모 확대 및 배분 방식 개선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 CSO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 환경을 제공했고, 신규단체의 인도적 지원 참여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사업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의 개별사업 상한액(연간 4억 원)을 5억 원 이상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구호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일반지원금의 KOICA 지원금 8:CSO 자부담 2의 비율 중 KOICA 지원금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증대를 위한 행정운영 개선
 -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행정처리 간소화 및 유연성 확대’, ‘실무자 간 네트워크 기회 확대’, ‘KOICA 소통 채널 및 역할 확대’, ‘KCOC 소통 채널 및 역할 확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유형 구분 및 사업 분야 다변화, 사업비 배분과 사업변경 방식 및 사업 기간 조정
 - 동 사업의 현재 구분 유형(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원금별 사업유형(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 및 긴급구호), 사업 분야(식량안보 및 영양, 식수 및 위생, 보건, 주거 및 비식량물자, 교육, 심리사회지원, 생계지원 등), 사업비 배분은 적절하나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고 참여단체들의 특성 및 현 상황에 맞게 더욱 다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사업변경 방식은 현재의 선 승인 후 수행방식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 기간은 현재의 1~2년을 개정하여 최소 사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신규단체 세분화에 따른 정책 적용
 - 신규단체 지원금 규모 1억 원 및 사업 기간 1년은 현재의 내용이 적절하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으나 본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단체와 인도적 사업 자체를 처음 시행하는 단체는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심사 시 중소형단체 고려한 조치 필요
 - 사업심사는 중소형단체의 참여를 고려하여 단체심사 비중을 낮추고 사업심사 비중을 증대할 것을 제안함.

- 사업 위탁운영 기관인 KCOC에 대한 권한 위임과 역할 증대 도모
 - 본 사업의 위탁 운영기관인 KCOC의 역할을 강화하고 권한을 증대하여 사업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KCOC에게 사업의 기획, 수행, 운영과정 및 변경/검토/승인 의사결정 권한, 예산변경, 예산증액, 긴급구호사업 행정절차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사업발전을 위한 제안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 사업적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와 임팩트 설정, 사업의 지침의 유연화 및 성과측정을 정부-시민사회 공동시행, 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과 중점분야의 민간수행단체 사업 적용을 위한 자료, 가이드 및 지침화, 다년도 사업성과 평가연구, 현지 인력 역량 강화 예산편성, 인도적 지원사업 생태계 확대 조성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Ⅲ. 타 공여국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1.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담론

- OECD DAC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형태와 방식은 큰 맥락에서 2003년에 출범한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체 원칙(Principles of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이하 GHD)」과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 이하 WHS)에서 합의된 「그랜드 바겐 공동협약」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음.
-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행위에 대한 원칙과 관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대두된 GHD의 경우, OECD 동료평가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OECD DAC 회원국 전체가 가입함. WHS에서 인도적 지원 재원확보 및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합의된 그랜드 바겐의 경우, DAC의 24개 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이 서명한 상태임. GHD와 그랜드 바겐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5〉 GHD & 그랜드 바겐 비교

명칭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협의체 원칙 Good Humanitarian Donorship	그랜드 바겐 공동협약 Grand Bargain Commitment
연도	2003	2016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스웨덴 정부가 주관한 선진 인도적 지원방식에 대한 회의 개최. 선진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 원칙과 관행에 대한 체계화 필요성이 대두하며 공여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WHS에서 합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정은 소수의 대형 공여국으로부터 조달되어 소수의 대형 기구에 의해 집행되므로,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형 공여국과 기구 간 그랜드 바겐에 합의하여 인도적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인도적 지원 조정을 강화
목적 및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여자의 원조행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고, 기금지원, 조정, 사후조치 및 원조행위의 평가와 관련하여 수혜자와 수행기관, 공여국 내 관계자에 대한 책무성을 증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S 협의과정과 협의의 주요 결과인 사람중심의 인도적 지원, 대응의 현지화, 인도적 지원과 개발과의 연계성, 그리고 이를 용이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및 투자환경의 조성을 실천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며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모색함.
주요 내용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여자의 행동 원칙 및 자원 운용 방식,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법 준수 -인도적 지원 기금의 유연성 및 적시성 확보 -인도적 지원 기관의 사업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수혜자의 참여 보장 요구 -현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대비, 대응, 예방, 경감 역량 강화 -인접구호 시 복구 및 장기적 개발과의 연계성 고려 -인도적 지원 재원의 예측 가능성과 융통성 담보 확보 (UN 및 기타 인도적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시) -장기적 기금 마련, 지정 기여의 축소 혹은 융통성 강화 등의 노력 -UN의 대응 체계 및 전략 활용 -공여자의 인도적 위기 대응에 대한 정기적 평가 -보고의 정확성, 적시성, 투명성 확보 및 이를 위한 표준화된 양식 개발 -효과적 대응방식으로써 현물보다 현금 지급 권장 (상황 적합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기관 및 공여자의 협약사항⁷⁾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행기관 및 공여자 간 협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투명성 강화 -최초 대응자로서 현지기관에 대한 지원 및 기금 확대 -현금기반 프로그램 확대 및 이행단계에서의 조정 강화 -인도적 지원과 개발 주제 간의 연계 강화 2) 원조 기관의 협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과 관리(행정)비 축소 -주기적인 기능성 경비 지출 점검 -합동 및 부분 수요조사 확대 -참여 혁명: 의사결정 단계에서 수혜자 경청 및 참여 강화 3) 공여자의 협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년도 인도적 지원 기금 확대 -인도적 지원 기관에 대한 지정 기여 축소 -보고체계 단순화 및 기관 간 조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 관행의 선례로 예측가능성, 적시성, 유연성, 수요비례, 최소한의 지정 기여를 명시하며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여자와 수행기관간의 관계강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최신의 주요 정책 문서임. 현지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 비율을 전체 배분예산의 25%까지 확대, 공여자금의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 기금 마련 및 이에 대한 현지 기관의 접근성 확대, 지정기금(Earmarked) 축소, 보고체계 간소화 등 Top-down 방식의 현행 재정지원시스템을 Bottom-up 방식으로 변경
가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 포함 총 35개국 ※ OECD DAC 회원국가 전체 가입 ※한국은 2009년 7월 20일 가입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63개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37개 기관(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국가: 26개국(OECD 및 EC 별도 서명 포함) ※ OECD DAC 회원국 중 21개 국가 서명 ※ 한국은 2019년 11월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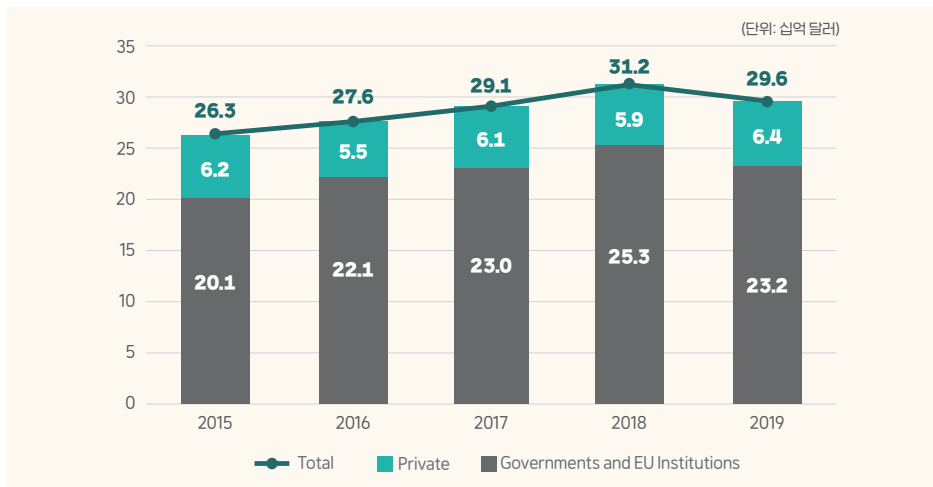
6) 연구진 요약: <https://www.ghdinitiative.org/ghd/gns/principles-good-practice-of-ghd/principles-good-practice-ghd.html>
 7) https://www.icvanetwork.org/system/files/versions/Grand_Bargain_Explained_ICVAbrifingpaper.pdf
 8) 외교부 보도자료 09-392호

- 상기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HD와 그랜드 바겐 공동협약은 대두된 시점이 10년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내용의 핵심 골자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과 책무성 증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 재원의 적시성, 유연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년도 기금을 마련하고 △지정 기여를 축소하며, △의사결정 단계에서 현지 주민(수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여자/기관 간의 보고체계 표준화 및 간소화를 추구하는 점임.
- 긴급대응 시 장기적 개발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점을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음. 특히 장기적 개발과의 연계는 2016년 WHS의 핵심 논의인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umanitarian- Development-Peace, HDP) 넥서스 구축으로 이어짐.
- GHD의 주요 원칙과 행동지침이 공여국에 적용되는 원칙과 지침이라면, 그랜드 바겐 공동협약은 비단 공여자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수행기관인 국제기구,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 연맹, 비정부기구들을 그 범주에 포괄하며 보다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제시한 공동의 행동서약임.
-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방식은 각국의 국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지만(2장 주요 공여국 사례 참고),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GHD와 그랜드 바겐에서 강조한 재원의 예측 가능성, 유연성, 적시성 보장, 다년도 대응 기금 확보, 현지 주민의 참여 보장 등 행동 서약이 반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2.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분야의 현황

○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Report(Development Initiative, 2020)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전 세계적인 인도적 위기의 증가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6%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8년과 2019년 사이 5% (16억 달러) 정도 감소하였음. 이 감소는 정부 부문의 기금 감소에 기인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15년 대비 12%(33억 달러) 정도 높은 수준임⁹⁾.

〈그림 8〉 인도적 지원 규모 추세 2015-2019



출처: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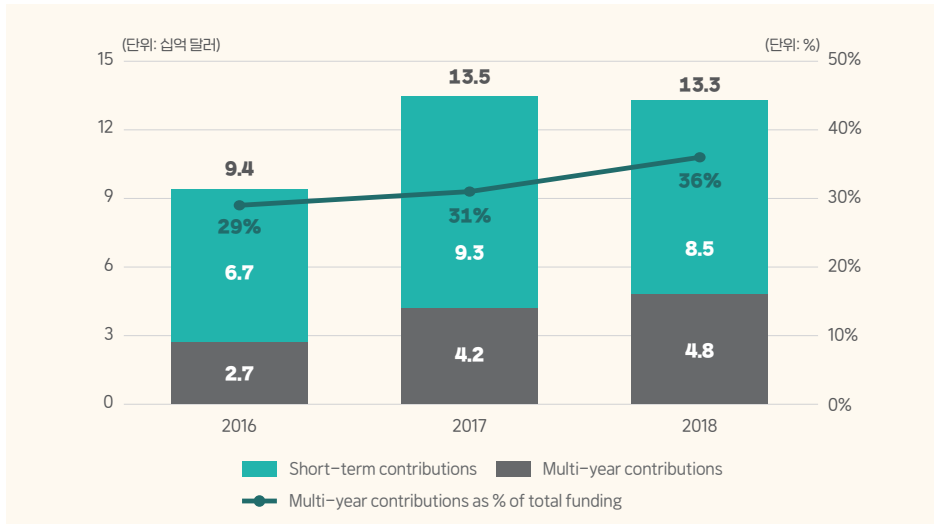
○ 전체 인도적 지원 기금 중(정부와 민간 기금 포함) NGO를 통해 지원되는 기금은 2018년 기준 약 30%에 이르며, 이중 정부는 평균 16%의 예산을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¹⁰⁾.

○ 인도적 기금이 전반적으로 증대하는 가운데 다년도 기금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음.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랜드 바겐 서명국(기관)의 인도적 지원 다년도 기금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10〉은 NGO에 대한 다년도 기금도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9) <https://devinit.org/resources/global-humanitarian-assistance-report-2020/#downloa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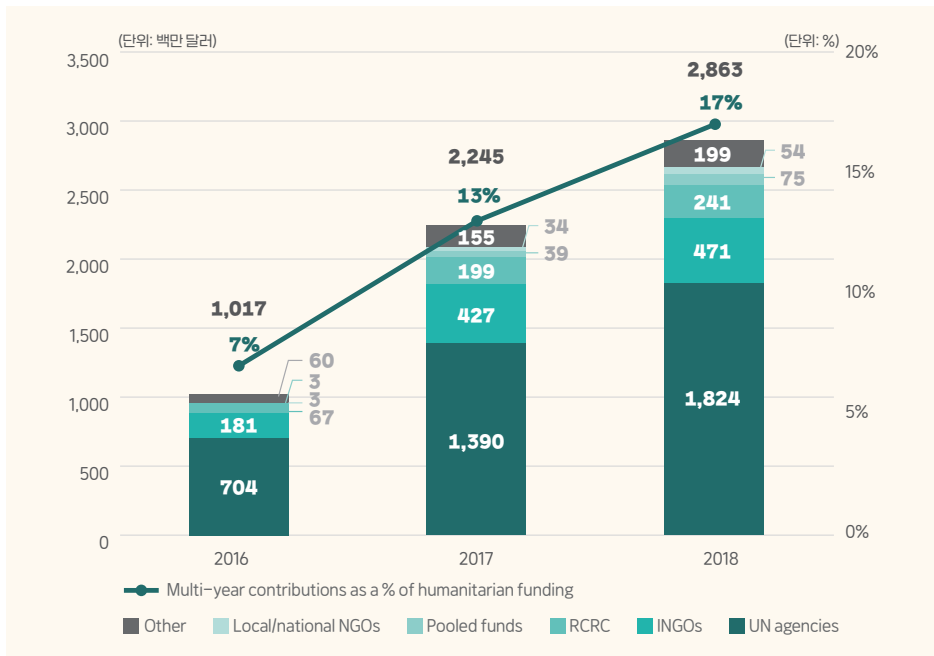
10) <https://devinit.org/resources/global-humanitarian-assistance-report-2020/#downloads>

<그림 9> 주요 공여국의 단년도/다년도 기금 비중 추세



출처: Development Initiative, Multi-year humanitarian funding: Global baselines and trends /devinit.org

<그림 10> 그랜드 바겐 서명국(기관)의 인도적 지원 다년도 기금 추세(대상별) : 2016-2018



출처: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Factsheet_key-trends-in-global-humanitarian-assistance_2019.

3. OECD DAC 15개 회원국 사례

1) 기초조사 15개국 선정

○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OECD DAC 공여국 중 인도적 지원과 시민사회협력에 적극적인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함. 기초조사 대상은 한국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ODA 및 인도적 지원 규모가 크고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로서, 구체적으로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공여국임. <표 13>은 OECD DAC 공여국 중 기초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국가를 보여주고 있음.

● 기초조사 선정 기준

- 첫째, 한국보다 ODA 규모가 큰 국가
- 둘째, 한국보다 시민사회협력 규모가 큰 국가
- 셋째, 한국보다 인도적 지원 규모가 큰 국가
- 넷째, 독립적인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

<표 16> OECD DAC 공여국 중 기초조사 대상 15개국에 선정된 국가¹¹⁾

국가명	한국보다 ODA 규모가 큰 국가(2019년 기준)	한국보다 시민사회협력 규모 큰 국가(2018년 기준)	한국보다 인도적 지원 규모가 큰 국가(2019년 기준)	독립된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있는 국가(2019년 기준)
1 호주	○	○	○	○
2 오스트리아	×	○	×	×
3 벨기에	×	○	×	×
4 캐나다	○	○	○	○
5 덴마크	○	○	○	○
6 스페인	○	○	○	○
7 핀란드	×	○	×	×
8 프랑스	○	○	○	○
9 독일	○	○	○	○
10 아일랜드	×	○	×	×
11 이탈리아	○	○	○	○
12 일본	○	○	○	○

11) 2010년대 이후에 DAC에 가입한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보다 공여 역사가 짧고 공여 규모가 작은 체코공화국,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는 제외함.

13	룩셈부르크	×	○	×	×
14	네덜란드	○	○	○	○
15	뉴질랜드	×	○	×	×
16	노르웨이	○	○	○	○
17	스웨덴	○	○	○	○
18	미국	○	○	○	○
19	영국	○	○	○	○
20	스위스	○	○	○	○
21	EU	○	○	○	○

출처: 한재광, 손혁상, 김성규, 신재은. 2019.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2019년 OECD DAC ODA 통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 정리

○ <표 1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 국가는 미국,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이상 14개 국가임. 이중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규범을 선도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협력 정책을 펼치는 EU를 추가하여 총 15개국(14개 국가 및 1개 지역통합기구)에 대해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정부-시민사회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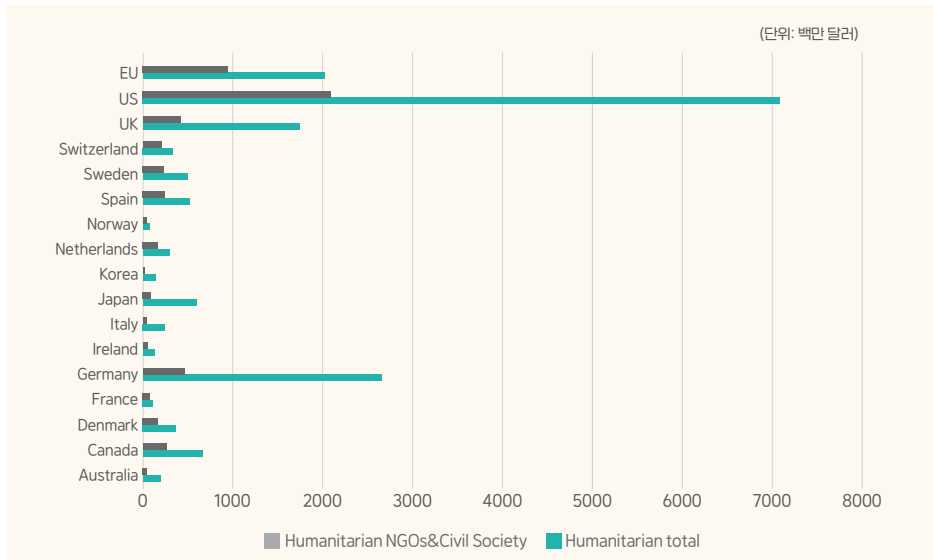
2) 기초조사 대상국의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이행 규모 및 관련 법·정책적 근거

○ 기초조사 대상국의 인도적 지원 분야 시민사회 협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협력 규모와 법적, 정책적 근거를 살펴봄.

(1) 주요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 규모와 시민사회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이행 현황

- 주요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 규모와 시민사회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이행 규모
- 각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규모와 시민사회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집행하는 규모는 다음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15개국의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이행 규모



출처: 2018년 기준.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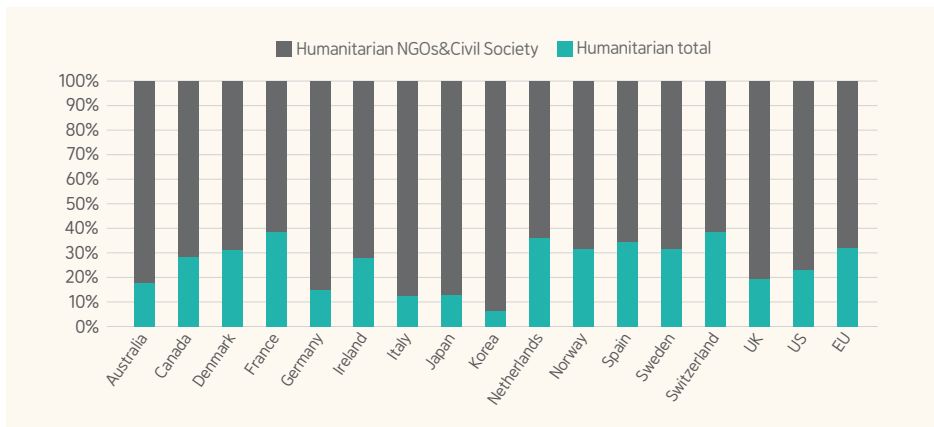
- 기초조사 대상 국가 중 인도적 지원 규모와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임. 미국은 2018년 기준 인도적 지원을 총 7,087 million USD를 집행하였고 그중 2,101 million USD를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집행했음. 미국의 인도적 지원 규모가 전체 인도적 지원 규모의 33.8%(2020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규모 역시 다른 공여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규모임. 미국의 경우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전체 인도적 지원 규모의 약 29.6% 비중으로 시민사회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과 EU를 제외하고 인도적 지원 규모가 큰 국가는 독일과 영국임. 두 국가 모두 시민사회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규모 측면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와 3위를 기록함. 인도적 지원으로 총 2,646 million USD를 집행한 독일은 그중 453.7 million USD를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총 1,738 million USD를 집행한 영국은 그중 411 million USD를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집행하였음. 독일의 경우 시민사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 비중은 17.1%, 영국의 경우 23.6%로 확인됨.
- 다음으로 인도적 지원 규모가 큰 국가는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순서이며,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절대 규모의 순서 역시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 (257 million USD), 노르웨이(235 million USD), 스웨덴(226 million USD), 스위스(200 mil-

lion USD) 순서로 이어지나, 예외적으로 시민사회 협력 비중이 낮은 일본만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은 2018년 기준 총 134.2 million USD를 인도적 지원으로 집행했음. 전체 규모에서 시민사회협력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 규모는 8.8 million USD이며 이는 전체 인도적 지원 규모의 7%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주요 공여국들의 전체 인도적 지원에서 시민사회 협력의 비중

<그림 12> 주요 공여국들의 전체 인도적 지원에서 시민사회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2018년 기준.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그림 12>는 각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전체 규모에서 시민사회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규모의 상대적인 비중을 비교한 결과임. 시민사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그 비중이 62%에 달함. 즉, 인도적 지원의 절반 이상을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담당하고 있음. 스위스 역시 61.8%를 시민사회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었으며, 네델란드와 스페인에서도 시민사회의 비중이 각각 55%와 52%로 전체 15개 국가 중 4개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시민사회협력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40% 이상으로 범주를 확장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EU 등이 포함되면서 전체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EU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15개 국가 중 한국은 시민사회협력이 절대적인 규모뿐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시민사회협력 비중을 보이는 이탈리아와

일본도 각각 13.8%와 14.2%로 한국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의 비중을 보임.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시민사회협력 비중이 명백하게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줌.

(2) 인도적 지원 및 시민사회협력과 관련한 법·정책 수립

- 15개국의 법령 및 인도적 지원정책 및 시민사회협력 정책 수립 여부
- 15개 기초조사 대상국의 법령 및 인도적 지원정책 및 시민사회협력 정책 수립 여부는 아래 <표 17>과 같음.

<표 17> 15개국의 인도적 지원 법·정책적 근거

국가명	스웨덴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덴마크
법적 근거	×	×	×	×	○	×	○	○
HA 정책	○	○	○	○	○	○	○	○
CS 정책	○	○	○	○	○	×	○	○

국가명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델란드	EU
법적 근거	×	×	×	○	○	○	×
HA 정책	×	○	○	○	○	○	○
CS 정책	○	○	○	×	○	○	○

출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15개 기초조사 대상국은 공통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시민사회협력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ODA를 집행하고 있음.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진 국가는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총 6개국임. 반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스웨덴,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독일의 경우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있음.

○ 법적 근거를 수립한 국가

- 스위스는 연방 헌법 제11조와 제54조에서 인류 전체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스위스의 책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범 수위가 가장 강력한 국가로 평가할 수 있음. 헌법을 근간으로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 4년 주기로 발표되는 개발협력 전략문서(Switzerland's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2020)의 제2번 목표에 재해 및 재난 상황, 취약국가의 예방과 대처, 분쟁 예

방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아울러 스위스의 개발협력 주관 기관인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은 주기적으로 시민사회협력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함.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정부-시민사회 협력과 관련한 정책(SDC Guidance for Engagement with Swiss NGOs)이 발표되었음.

- 미국, 덴마크, 그리고 스페인은 해외원조와 국제개발협력 전반을 관장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인도적 지원은 국제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이행됨. 전 세계에서 인도적 지원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대외지원법(Foreign Assistance Act)을 근거로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식량안보 프로그램은 평화를 위한 식량법(Food for Peace(FFP) ACT)이라는 별도 법령에 근거함.
 - 덴마크와 스페인은 각각 덴마크 국제개발협력법(Danish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Consolidated Act no. 541 of 10/07/1998))과 왕실법령(Royal Decree 794/2010)을 가지고 있음. 스페인은 개발협력 전반을 다루는 마스터플랜 아래 인도적 지원전략을 담은 ‘Humanitarian Action Strategy of V Master Plan for Spanish Cooperation 2018-2021’를 발간하여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 분야 활동을 다루며, 덴마크는 국제개발협력법을 근거로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며 시민사회협력에 관한 정책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도적 지원 정책과 시민사회 협력 관련 정책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와 덴마크 두 국가가 있음.
 - 이탈리아는 1987년 제정된 개발원조체계에 관한 법령과 별도로 2014년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네덜란드의 경우, 대외무역과 개발협력에 관한 예산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이 있음.
- 정책과 전략 수립 국가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스웨덴,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독일의 경우, 정책 수준에서 인도적 지원의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을 통해 프로그램 이행에서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스웨덴의 경우, 인도적 지원 전반을 다루는 정책문서를 발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3년 주기의 단기 원조기관(SIDA)의 이행전략을 각각 발간하여 완결성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스웨덴 이외에도 호주, 영국, 일본, 프랑스 EU는 인도적 지원을 다루는 포괄

적인 정책문서를 발간하여 자국(지역통합기구)의 인도적 지원 활동과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인도적 지원은 원조 기관의 전략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독일은 연방 외교부 전략(Federal Foreign Office Strategy)에서 취약국가 및 분쟁지역, 전환국가지원(Transitional Assistance)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탈리아는 분쟁 후 화해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음. 인도적 지원을 전략 수준에서 다루는 것은 인도적 지원 범 분야 전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국의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맥락 속에서 비교우위에 있거나 외교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특정 하위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기초조사 대상국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내용과 특징

○ 인도적 지원 분야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비교

- 15개의 기초조사 대상국들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고찰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음.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비교

- 첫째, 별도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기간
- 둘째, 민관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
- 셋째, 민관협력 프로그램 수행방식(지정/위탁 및 자부담 비율, 사업/단체 지원)
- 넷째, 주요 사업 분야

(1) 독립적인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기간

○ 15개 기초조사 대상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행하는 인도적 지원사업은 인도적 프로그램이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펀딩 형식이 가장 일반적임. 인도적 지원 분야를 특정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틀에 포함되지만, 내용상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펀딩이 있음. 또는 분쟁, 자연재해, 급격한 기후변화

와 장기적인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특정 국가나 지역을 지정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 아래 <표 18>은 기초조사 대상 15개국의 독립적인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기간을 비교함

<표 18> 기초조사 대상 15개국의 독립적인 시민사회협력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기간

국가명	스웨덴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덴마크
프로그램 별도의 HA프로그램 유무	Y	Y	Y	Y	Y	Y	Y	Y
기간 1년 이하	N	Y (4-6, 최대8m)	Y	N	Y	Y	N	N
2~3년	Y	Y	Y	Y	Max 24	Max 36	N	Y
4년 이상	N	Y	5년 협약 (2018- 2022)	Y (1990년대 소수 지원 당시 3-5년 단위)	N	N	N	최대 4년
국가명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¹²⁾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¹³⁾	EU	
프로그램 별도의 HA프로그램 유무	Y	Y	Y	Y	Y	Y	Y	
기간 1년 이하	IA (Max. US 9만)	Y	표현의 자유	N	Y	N	6개월~1년 (긴급구호)	3 (ER, 연장 불 가)
2~3년	CA	미상	인도적 지원	N	18+6	36	혁신펀드/ Women Peace and Security	2년 (긴급구호) / 3년
4년 이상	CA	미상	이주, 난민	Y	Emergency Agreement (4년)	N	Mine Action(4년)	24 (연장 가능)

출처: 각 국가 개발협력기관 홈페이지 및 정책문서를 참고로 연구진 작성

○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프로그램 운영 여부

- 기초조사 15개국 중 명시적으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및 펀딩을 운영하는 국가는 스

12) 미국은 USAID 내 인도적 지원국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과(좌측 칼럼), 국무부(The US Department of State) 내 인구 난민이주국(Bureau for Population, Refugees, Migration, BPRM)이 운영하는 난민 대상 프로그램(우측 칼럼)이 있음. 독일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은 개발사업으로 포함되는 인도적 지원 사업(좌측 칼럼)과 위기관리(TDA) 사업(우측 칼럼)으로 구분됨.
13) 네덜란드는 긴급구호와 별도로 Women, Peace and Security Grant와 Mine Action and Cluster Munitions Programme 등의 인도적 지원 연계 펀딩으로 구분되어 있음.

웨덴,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으로 EU를 포함하여 총 13개국임.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EU 등은 인도적 지원과 별도로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스웨덴,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EU 등 8개국은 프로그램의 목적, 활동 분야, 대상 지역 및 국가, 지원 방법, 지원대상 등이 상이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별도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스위스와 덴마크임. 스위스의 경우 인도적 지원에 한정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주요 핵심 지원 9가지 분야 중 취약 지역, 인도적 지원 시스템, 인도주의 원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전환국가, 인권, 기초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성격의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인도적 지원 분야 사업의 폭이 매우 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덴마크의 경우, 인도적 지원 분야로 명시된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는 아니나, DRC, 콩고, 우간다, 케냐, 소말리아 등 일부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아프리카 국가에 한정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이행하고 있음.

○ 기간

-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기간을 1년, 2~3년, 4년 이상으로 구분할 때(중복가능) 1년 기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는 4개국, 2~3년 프로그램 운영 국가는 9개국, 그리고 4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는 3개로 파악됨. 대부분 국가는 단위를 하나로 일괄 규정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사업 기간을 달리하여 단년, 다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단년(1년 단위) 프로그램 운영

-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단년(1년 단위) 프로그램보다는 다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년 단위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는 일본, 미국, 노르웨이, 스페인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1년 기준으로 이행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함.
- 미국의 경우 긴급구호, 조기복구, 재난경감에 대한 비경쟁적 지원 프로그램과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사업 기간은 1년에서 24개월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비정부기구 협력 프로그램(NGO Programs)의 경우는 12개월부터 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을 통해서 최장 36개월까지 사업의 연장이 가능함.

-노르웨이는 파트너기관을 대형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 및 신규단체를 대상으로는 연간 사업에 관한 약정(Individual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음. 스페인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년 단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2~3년 단위

-스웨덴, 영국,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EU는 2년에서 3년 단위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음.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와 EU는 2~3년을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있음. 스페인은 일반적으로 18개월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한 방식을, 영국과 EU는 2년, 스웨덴과 이탈리아는 3년을 기본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노르웨이는 CA의 경우 3년~5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이행하며 인도적 지원 MPA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사업 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4년 이상

-호주,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기간을 4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현재는 2~3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 소수의 대형 시민사회파트너를 대상으로 지원할 때는 당시 3~5년 단위로 운영한 경험이 있음. 스위스는 자국의 개발협력 전략 주기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최대 4년까지 사업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시민사회파트너들과의 협약을 5년 단위로 설정함.

-독일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 기간을 다르게 설정한 대표적인 예임. 일반 개발사업의 사업 기간이 1년 단위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인도적 지원은 3~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함. 특히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주 및 난민 사업은 5~6년(4년 이상)까지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인도적 위기, 분쟁, 재난에 대응하거나, 위기관리

및 재난 후 인프라 재건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Transi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TDA) 사업의 경우에도 단기 프로그램 없이 3~5년 단위로 이행되고 있음.

-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스페인에서도 찾을 수 있음. 스페인은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2년 단위로 설정하지만,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특별재난기금(Emergency Agreement)을 지원받아 사업하는 경우 사업 기간이 4년으로 설정되어 있음.

• 재난 대응 초기사업: 1년 미만

- 재난재해 초기대응에 해당하는 긴급구호 성격의 사업은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초기 복구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일 년 미만의 단위로 이행되고 있음. EU는 긴급구호의 경우, 연장 불가능한 3개월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도 재난재해 초기대응을 위한 신속 대응 사업(Rapid Response Mechanism)은 6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2) 파트너기관 선정 대상 및 자격

○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여국들은 대부분 파트너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 대상과 자격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음. 아래 <표 19>는 파트너기관 선정 대상 및 자격을 비교함.

〈표 19〉 파트너기관 선정 대상 및 자격

국가명	스웨덴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덴마크	
대상	자국 CSOs로 한정	N	Y	Y		N	Y	N	
	INGOs, 현지 NGOs 포함	Y	현지 NGOs	N	N	Y	N	모든 형태의 시민사회 포함	
자격	사전 선정 단체들 대상 지원	Y	Y	Y (AHP 파트너까지 인정)	N	N (신규단체의 경우 사전 심사)	JPF	적격심사 (4년)	Y
	그 외 특정 자격 요구	N	N	N	N	Y	N	스위스에 본부/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모금 1/3이상 또는 ZEWO 인정단체	N
국가명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델란드	EU		
대상	자국 CSOs로 한정	N	Y	Y	Y	N	Y	EU국가 인도적 지원 NGOs	
	INGOs, 현지 NGOs 포함	자국 CSOs + 현지 CSOs	N	N	현지 CSOs는 IP로만 참가가능		긴급구호는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 등 전문 단체 + 현지 CSOs		
자격	사전 선정 단체들 대상 지원	MPA	APCC	N	N	EA 협약기관 (긴급구호)	N	N/Y (긴급구호)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협약> = Framework Partnership Agreement (FPAs)
	그 외 특정 자격 요구	N	N	Y	Y	스페인 국내 법적 등록 단체 /AECID인정/ DGEHCO의 인도적지원 자격승인	N	Y	다시 IP 기관별로 개별 그랜트 협약 (Specific Grant Agreement)을 체결

출처: 각 국가 개발협력기관 웹사이트 및 정책문서를 참고로 연구진 작성

○ 파트너기관 선정 대상

- 일반적으로 파트너기관 선정 대상은 자국 CSO로 한정하고 있음. EU를 포함하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일본, 영국은 파트너기관을 명시적으로 자국의 CSO로 제한함. 반면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현지 CSO를 예외적으로 포함하기도 함.
- 스페인의 경우 현지 CSO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국 CSO와의 협력관계를 갖는 이행파트너(Implementing Partner, IP)로만 참여를 허용함. 현지 CSO를 파트너

로 선정할 때는 선정 단계에서 현지 자국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보임. 예외적으로 네덜란드는 긴급구호의 경우 유엔, 국제적십자 등 전문기관에 일임함.

- 미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자국 CSO뿐 아니라 글로벌 비정부기구(INGOs)와 미국 국적이 아닌 타국 CSO도 모두 파트너기관 선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미국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그 규모와 지리적 범위에서 압도적으로 크고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폭넓은 시민사회 파트너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음.

○ 파트너기관 자격

- 기초조사 대상 공여국들이 시민사회협력 사업을 이행할 파트너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시민사회 협력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을 미리 제시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들을 먼저 선발하여, 이 풀(Pool)에 포함된 단체에만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식이 있음. 예외적으로 단체를 Pool 형식으로 먼저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지원 자격의 전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둘째,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 있음.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 풀(Pool)을 사전에 선정하는 방식이 있음.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EU 등의 국가는 먼저 파트너단체를 선정하고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파트너단체에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현재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2010년까지는 큰 규모의 소수 NGO에 PPA 자격을 한정하여 해당 단체에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였음.
- 현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먼저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국가들은 아래 <표 20>과 같음. 각 공여국은 다양한 명칭으로 파트너기관 풀을 구성하고 있음. 파트너기관 풀의 규모는 호주 6개 단체에서 일본 44개 단체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함.

〈표 20〉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 풀(Pool)을 사전에 선정하는 공여국

국가	기관풀(POOL)	비고
1 스웨덴	Strategic Partner Organisations(SPO)	SIDA 전략 파트너십 기관에 한해 배분
2 캐나다	인도주의 연합 (Humanitarian Coalition)	긴급구호를 위한 모금과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12개 인도주의 단체들의 협의체. 캐나다 정부의 캐나다 인도적 지원기금(CHAF)에 대한 약정(2-3년 주기)을 체결하여 지원을 받음.
	Canadian Food Grains Bank(CFGB)	만성 및 긴급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교회 기반 15개 단체들의 협의체. 캐나다 정부의 식량지원기금(Food Assistance Fund)에 대한 약정(5년 주기)을 체결하여 지원을 받음
3 호주	The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AHP)	6개 회원기관의 사업제안서 기반으로 사업선정
4 일본	Japan Platform(JPF)	
5 프랑스	APCC	프랑스에 기반을 둔 NGOs 중 APCC 소속 단체에 한함
6 EU	Framework Partnership Agreement (FPA)	FPA에 우선 지원해서 FPA협약을 맺은 개별 기관과 EU가 다시 기관 별로 개별 그랜트 협약 (Specific Grant Agreement)을 체결함.
7 영국	Program Partnership Agreements(PPA)	2010년까지는 PPA에 의거하여 소수 대형 NGOs에게만 배분하였으나 2011년 이후 공모 방식으로 전환됨

출처: 각 국가 개발협력기관 홈페이지 및 정책문서를 참고로 연구진 작성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미국, 스위스, 독일
- 미국의 경우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2 미국 연방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200에 위배되지 않는 비영리기구여야 함. 이 규정은 행정 필수조건, 비용원칙,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별도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정 조사를 포함한 별도의 스크리닝을 진행함. 이러한 사전 절차는 단체의 자격을 미리 제시하여 이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들을 먼저 선발하는 Pool 형식과 유사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음.
- 스위스의 경우 아래 세 단계의 조건을 제시함. 첫째,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사업을 관리하는 NGO로서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을 기반으로 1/3 이상 모금하는 NGO여야 함. 둘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내에서 모금을 진행하는 자선단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기관인 ZEWO가 제시하는 모금 수단, 방법,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부합

하여야 함. 즉, ZEWO의 인증제도(Quality Seal)를 통하여 인증받은 단체에 한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SDC가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적격심사를 사전에 통과하여야 함.

- 독일은 단체에 대한 조건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각각 제시함. 단체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정부와 협력한 충분한 경험과 다양한 섹터 전문성, 폭넓은 파트너십, 예산 규모 확보 등 요구함. 협력 프로그램 역시 다분야, 다개국, 다양한 파트너를 포함하여야 함. 단체와 프로그램 조건을 고려하면,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 규모가 크고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단체에 대한 조건

- 첫째 최소 10년 이상의 BMZ 펀딩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
- 둘째 다층적 접근을 통한 사업수행 가능
- 셋째 개발 전반 및 분야별 정책 전문성
- 넷째 사업수행 국가 내 다양한 파트너와의 연계 가능: 최소 5개국 이상에서의 현지 파트너와의 업무 협력 문서 필요
- 다섯째 단체의 예산 가용력: 연 예산 최소 5백만 유로
- 여섯째 BENG¹⁴⁾가 제공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관련 교육 이수

• 인도적 지원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 아래 4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

- 첫째 1개 분야, 3개 국가
- 둘째 1개 국가, 3개 분야
- 셋째 다분야, 다개국
- 넷째 1개국, 1분야, 최소 3개 현지 파트너

14) BENG¹⁴⁾는 독일 BMZ가 Engagement Globa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 NGO들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센터임. 독일 시민사회단체가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 관리, 수행 역량, 사업 주기 등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함. (the advice centre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GOs) working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 스페인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함. 첫째, 스페인 국내 법적 등록 단체여야 하며, 둘째 스페인 개발협력청(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인 AECID의 인정을 받은 단체여야 함. 마지막으로 EU의 인도지원 사무국(European Union's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epartment, ECHO)의 인도적 지원 자격 승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 국가의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EU의 인도적 지원 자격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공모 방식

- 파트너기관의 풀을 사전에 구성하거나 특정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공모를 통해서 협력파트너를 선정함. 영국은 현재 공모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3) 협력 프로그램 수행방식: 직접/위탁 및 자부담 비율, 사업/단체 지원

- 인도적 지원 분야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지, 또는 제 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지 여부, 자부담 여부 및 비율, 사업지원 또는 단체지원 등 다양한 수행방식을 국가별로 비교함.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수행방식은 크게 개발협력 담당부처 및 주관 기관의 직접지원과 위탁을 통한 수행으로 분류할 수 있음. 몇 국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내용의 특성에 따라 일부는 직접지원을 다른 프로그램은 위탁지원의 방식으로 각각 이행하는 경우도 있음.
- 다음 <표 21>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수행방식을 비교 요약함.

〈표 2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수행방식

국가명	스웨덴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덴마크
수행 방식	직접	대형긴급 및 복합재난(MHD)	N	Y	USAID 인도적 지원국 (BHA)	N	SDC 제도적 파트너십 부서, (IPD)	HMC ¹⁵⁾
위탁 기관	N	Humanitarian Coalition /CFGB	Y 건설팀 연계	UK Aid Direct는 건설팀사에 건설관리 위탁	N	JPF	N	시민사회 협의체
자부담 유무/비율	10%	10%(CHAF)/ 0%(Food Assistance Fund)	N	N	N		50%	N
사업지원 vs 단체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예외 단체 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 단체지원
국가명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EU	
수행 방식	직접	Y	N	Transi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TDA)	N	N	Y	
위탁 기관	N	N	BMZ → EG* 위탁	N	Association ONG Italmae	DRA (긴급구호) ¹⁶⁾	N	
자부담 유무/비율	10%	10%까지 완화가능	0%	N (가점 부여)	N	25%		
사업지원 vs 단체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출처: 각 국가 개발협력기관 웹사이트 및 정책문서를 참고로 연구진 작성

15) Humanitarian Action, Migration and Civil Society

16) Dutch Relief Alliance

○ 주무부처 및 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직접 관리운영 vs 위탁 관리운영

● 직접 운영

- 공여국의 담당부처나 개발협력 주관기관이 직접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함. 스웨덴,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 등이 직접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위탁 기관을 통한 운영 및 관리

- 호주 컨설팅 업체(Whitelum Group)에 AHP 운영 지원을 위임하여 컨설팅 업체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개별단체와의 계약 및 자금 배분,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함.
- 영국은 UK Aid Direct라는 컨설팅사에 사업 관리 위탁하고 있음.
-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경우 정책적으로, 또는 활동에 지원하는 역할로 중간 매개자의 기능이 있지만 제 3자가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수준은 아님. 이탈리아의 경우 Associazione NGO Italiana 협의체를 통해 정책 대화 및 교섭을 이행함. 덴마크에서는 1995년 설립된 Humanitarian Contact Group이 인도주의 NGO와 정부 기관 간 협력 강화 목적으로 활동함. 총 25개 단체(ADRA Denmark)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정보교환과 지원 활동을 이행하고 있으며 32개 회원의 우산 조직으로 난민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덴마크 난민위원회(Danish Refugee Council, DRC)의 역할도 유사함.

● 직접 지원과 위탁지원을 병행하는 사례

-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무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과 위탁 기관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 나누어짐. 캐나다의 경우 대형긴급구호 및 복합재난은 관련 부서(MHD)에서 직접지원 절차를 수행하나, 긴급구호와 식량 위기 프로그램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비영리기구 대상 긴급구호, 조기복구, 재난경감에 대한 비경쟁적 지원 프로그램과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 등 일반적인 인도적지원사업은 USAID 내 인도적 지원국(Bureau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HA)이 직접 운영관리함. USAID 인도적 지원국은 해외재난지원부(OFDA)와 평화를 위한 식량사업부(Food for Peace)에서 통합된 형태로 해당 사업들을 포함함. 반면, 난민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국무부(The

US Department of State) 내 인구난민이주국(Bureau for Population, Refugees, Migration, BPRM)이 담당하며 제 3자에게 용역형식으로 위탁하여 진행함.

- 독일은 개발협력사업 중 인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BMZ가 EG에게 위탁하여 운영함. 예외적으로 전환국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Transi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TDA)은 대체로 BMZ가 직접 관리운영을 맡고 있음.

〈표 22〉 직접 지원과 위탁지원을 병행하는 국가들 사례

국가	직접 운영관리	위탁 운영관리
캐나다	대형긴급구호 및 복합재난은 관련 부서(MHD)에서 직접지원 절차를 수행함.	긴급구호(Humanitarian Coalition: NGO network for joint appeal for humanitarian responses, CHAF)와 식량위기 프로그램(Network of Christianity faith based organizations, CFGB)
미국	USAID 내 인도적 지원국(Bureau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HA)이 직접 운영관리함.	난민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국무부(The US Department of State) 내 인구난민이주국(Bureau for Population, Refugees, Migration, BPRM)이 용역형식으로 위탁함
독일	전환국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Transi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TDA)은 BMZ가 직접 관리운영을 맡고 있음.	일반 개발협력사업 중 인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BMZ가 EG ¹⁷⁾ 에게 위탁하여 운영함.

출처: 각 국가 개발협력기관 홈페이지 및 정책문서를 참고로 연구진 작성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비율을 설정해 놓은 국가는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등인데 스위스가 예외적으로 매우 높게(50%) 설정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정도 수준임. 독일의 경우 개발사업 일반에 대해서 자부담률을 25%로 설정했지만,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 10%까지 완화 가능함. 또한, BMZ가 직접 지원하는 위기관리 사업의 경우는 자부담을 면제함. 스페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나,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그러나 자부담 비율을 설정해 놓은 공여국들이라도 3개월~6개월 사이의 단기 긴급구호의 경우 일괄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7) EG(Engagement Global)는 2012년 설립된 개발정책 구상 및 지원을 위한 중앙연락기관으로,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위임을 받고 BMZ로부터 자금을 받는 비영리 유한회사, KCOC와 같은 시민사회 협의체는 아니며, BMZ의 지회사 형태와 유사함.

○ 사업지원 방식 또는 단체지원 방식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국과 노르웨이가 예외적으로 단체 자체를 지원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운영하고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 사업지원 방식과 단체지원 방식이 혼재하는데 MPA는 NRC, NORCAP(NRC가 구성한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영국은 펀드의 성격에 따라 상이함. UK Aid Direct 프로그램의 하위 단위 펀드인 The Small Charities Challenge Fund와 Collaborative Challenge Fund는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특히 The Small Charities Challenge Fund 중소기업 CSO를 위한 주요 경쟁 펀드로서 SDGs 달성을 목표로 아프가니스탄 포함 24개국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임. 이는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소수 대형단체에만 수의계약방식으로 기회를 부여해온 것에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의 결과로 추측할 수 있음.

(4) 주요 사업 분야

○ 기초조사 대상 15개 국가는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대부분 국가는 인도적 지원 범주에 해당하는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몇 국가는 특정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분야별로 별도의 맥락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 네덜란드, 프랑스, EU 등 특별한 분야에 대한 명시적인 강조 없이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 분야를 포괄함.
 - 스웨덴, 호주, 일본, 노르웨이의 경우 대체로 긴급구호성 재난 대응과 조기복구, 재난 예방 및 재난위험경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요 분야로 명시하고 있음.
 - 스웨덴: 난민, 긴급구호, 조기복구
 - 호주: 긴급구호, 조기복구, 만성재난, 재난위험경감
 - 일본: 난민, 긴급구호, 조기복구 등 포함
 - 노르웨이: 재난 예방, 재난위험경감, 긴급구호, 조기복구 및 기타(난민 등 포함)

- 전략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특정 하위분야를 강조하는 국가
 - 캐나다, 미국, 스위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자국의 인도적 지원 정책과 전략에 따라 특정 하위분야를 전략 분야로 제시하고 있음.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는 전체 개발협력 핵심 프로그램에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음.
 - 캐나다: CHAF(Humanitarian Coalition)를 중심으로 이행되는 긴급구호 및 CFGB를 중심으로 이행하는 식량 위기 대응 두 가지 분야를 전략 분야로 제시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현지 CSO 지원의 경우는 긴급구호를 비롯한 기타 개발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 비영리기구 대상 긴급구호, 조기복구, 재난경감에 대한 비경쟁적 지원 프로그램 및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농업, 경제회복, 식량 지원, 보건, 인도적 조정/정보관리/평가, 인도적 지원 정책/연구/분석/적용, 로지스틱 지원, 다목적 현금지원 등을 주요전략 분야로 제시함. 아울러 주요전략 다분야로서 연령 및 장애, 재난위기경감 주류화, 성 분석 및 통합, 젠더 기반폭력 위험 완화, 현지 역량 강화, 천연자원 관리 등을 제시함. 미국의 비정부기구 협력 프로그램(NGO Programs)은 주요 분야별 전략 내 인도적 지원 분야로서 총 14개 분야를 제시함. 여기에는 보호, 현금지원, 젠더 기반 폭력, 아동보호, 공중보건, 식수 위생, 영양 및 식량안보 등이 포함됨.
 - 스위스: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주요 핵심 지원 분야 중 기초서비스, 취약 지역, 전환국가 지원, 인도적 지원 시스템 그리고 인도주의 원조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독일: 8가지 핵심 프로그램 중 식량안보, 이주와 난민, 귀국자를 위한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위기관리(TDA)' 프로그램에서는 식량 및 영양 안보, 기초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재난위험관리,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분야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음. 평화와 포용을 통한 지역사회 재건까지 핵심분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을 접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이런 사업 분야의 특징은 기초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장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함.
 - 스페인: AECID의 2018-2021 전략에 따라 인도적 지원의 핵심분야를 선정하였는데 긴급구호, 난민지원이 포함됐지만, DRR은 제외되었음. 긴급구호와 난민지원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전략에 따른 주요 섹터는 보건, 식수 위생, 식량안보

및 영양, 보호, 인도주의 상황에서의 교육 등이 지정되었음.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식량안보 및 농업지원, 물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난민 및 여성 지위, 취약계층(아동, 장애인) 보호, 교육, 재난위험 예방을 주요 지원 분야로 선정하였음.

4) 인도적 지원 CSOs 파트너 선정 및 사업평가

- CSOs 파트너 선정 및 사업평가 요약표는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CSO 파트너를 선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비교하였음. 아울러 모니터링 및 평가(M&E) 이행 여부와 평가 주체, 평가 주기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함.

(1) 파트너 선정의 주체와 기준

- 파트너 선정 주체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파트너 선정 방식은 크게 담당부처 및 개발협력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선정하는 경우, 제3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지 대사관을 참여시켜 의견을 조정하는 방식, 그리고 선정 자체를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담당부처 및 개발협력 주관기관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 담당부처 및 개발협력 주관기관이 직접 파트너를 선정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EU 등이 있음. 스웨덴의 경우,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분석에 따른 차년도 자원 배분 계획에 입각하여 매년 파트너기관을 선정함.
 - 미국은 비영리기구 대상 긴급구호, 조기복구, 재난경감에 대한 비경쟁적 지원 프로그램 및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한하여 USAID가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직접 파트너를 선정하고 있음. 여기에는 USAID의 인도적 지원국 본부, 현장 사무소, 지역 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하여 내부 심사로 진행함.
 - 반면 캐나다, 호주,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사업의 일부는 담당 부처와 개발협력 주관기관뿐 아니라 제3 자가 파트너심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구성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인도적 지원의 두 축을 이루는 Humanitarian Coalition(CHAF 기금 운용)와 CFGB(Food Assistance Fund 기금 운용)가 각각 네트워크 소속 멤버를 대상으

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천하면 외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함.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CSO의 주도권이 충분히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반영하는 구조임.

- 스위스는 심사위원회(Approval Panel)를 구성하여 4년 주기로 공모를 통해 파트너를 선정함. 사업심사에 앞서 CSO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과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심사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음.
- 호주와 미국의 비정부기구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파트너 선정을 위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 외교부가 자금지원 및 협약의 주체이나 컨설팅 업체인 Whitelum Group이 AHP 운영을 지원하면서 단체와의 계약 및 자금 배분,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함. 미국은 비정부기구 협력 프로그램(NGO Programs)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통해 파트너를 심사하는 방식을 택함. 이 같은 경우 위탁을 맡은 컨설팅 업체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역량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이탈리아는 2018년 이후 파트너 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이탈리아 대사관과 현장 네트워크의 일관적 참여를 강조함(MFAIC, AICS).

○ 파트너 선정 기준

- 파트너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인데 다음 <표 23>은 미국, 스위스, 독일, EU가 제시하고 있는 선정 기준을 요약한 표임.

<표 23> 파트너단체 선정 기준

국가명	선정 기준	비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지원 제안서 심사표 예시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분석 (5) 2. 수혜자 분석 (5) 3. 사업내용 (젠더 분석 포함) (20) 4. 목적 및 지표 (10) 5.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10) 6. 위기관리 (10)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수혜자 대상 책무성 (5) 8. 조정 (5) 9. 지속가능성 및 역량 강화 (5) 10. 관리 구조 및 과거 경험 (10) 11. 예산 (15) </td> </tr> </table> • 해외지원 컨셉노트 심사표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컨셉의 질 (10) 2. 취약계층을 포함한 수혜자 선정의 적합성 (10) 3.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가능성 (10) 4. 기관의 경험 및 역량 (10) 5. 비용 효과성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분석 (5) 2. 수혜자 분석 (5) 3. 사업내용 (젠더 분석 포함) (20) 4. 목적 및 지표 (10) 5.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10) 6. 위기관리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수혜자 대상 책무성 (5) 8. 조정 (5) 9. 지속가능성 및 역량 강화 (5) 10. 관리 구조 및 과거 경험 (10) 11. 예산 (15) 	비정부기구 협력 프로그램 (NGO Program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분석 (5) 2. 수혜자 분석 (5) 3. 사업내용 (젠더 분석 포함) (20) 4. 목적 및 지표 (10) 5.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10) 6. 위기관리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수혜자 대상 책무성 (5) 8. 조정 (5) 9. 지속가능성 및 역량 강화 (5) 10. 관리 구조 및 과거 경험 (10) 11. 예산 (15)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가지 주요 협력 원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개발 넥서스 강화 -성주류화 및 굿거버넌스를 위한 인권기반접근 -정책 대화 통합 -파트너십 및 다분야 협력 증진 -현지 정부의 주인인식 증진 -효과성, 투명성, 책무성 증진 -비용 효과성 증진 및 거래비용 최소화 • 개발도상국, 전환국, 인도적 위기 지역 내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 스위스의 전문가, 혁신 및 서비스 접근 가능 • 측정가능한 지표 포함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Z 펀딩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최소 1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층적 접근을 통한 사업수행 가능 -개발 전반 및 분야별 정책 전문성 -사업 수행 국가 내 다양한 파트너와의 연계 가능 (최소 5개국 이상에서의 현지 파트너와의 업무 협력 문서 필요) -단체의 예산 가용력(연 예산 최소 5백만 유로) -BENGO가 제공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관련 교육 이수 • 프로그램 규모: 아래 4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분야, 3개 국가 -1개 국가, 3개 분야 -다분야, 다개국 -1개국, 1분야, 최소 3개 현지 파트너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개발협력사업 지원 파트너 단체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임. (위기관리 TDA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음)		
EU	재정지원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 활동 목적 • 활동 지역 • 자원 배분 the funds to be allocated: • 이행 기간 • 이행 전략 			

출처: 연구진 작성

(2) 모니터링과 평가

○ M&E 유무

- 인도적 지원사업의 특성상 소수의 국가만이 M&E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하는 국가들도 일반 개발협력 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행함. M&E를 실시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 스페인, 일본 그리고 EU가 있음.
- 영국, 미국, EU는 M&E를 실시하며 사업종료 평가와 함께,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간 평가를 실시함. 미국은 비영리기구 대상 긴급구호, 조기복구, 재난경감에 대한 비경쟁적 지원 프로그램 및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 사업은 기초 및 종료평가를, 12개월 사업은 관리계획평가를 그리고 18개월 사업은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M&E를 이행하고 있음.
- 영국과 일본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심사를 이행하며 스페인은 심사위원회 (Evaluation Commission)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개발협력 주관기관인 AECID가 평가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매우 소수의 사업에 대해서만 M&E를 실시하고 있음. EU의 M&E의 경우 최종보고에는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3개국 심층 사례

1) 스웨덴

(1)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 현황

○ 인도적 지원 주체

-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은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와 SIDA에 의해 추진됨. 외교부가 전반적인 인도적 지원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SIDA는 인도적 지원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에 있어 외교부는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비지정기본예산(Un-earmarked Core funding) 및 ICRC 본부 차원의 긴급요청(Appeals)을 지원하는 반면, SIDA는 UN의 국가기반 공동기금(Country Based Pooled Fund, CBPF)에 기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와 국제 NGO의 사업비를 직접 지원함.

○ 인도적 지원예산 규모

-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예산은 2015년 공여국 내 난민수용 비용 증가로 인하여 감소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5년 USD 128.2 M에서 2019년 USD 441.39 M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19년 기준 인도적 지원예산 중 43%인 190.58 M USD이 민간단체를 통하여 집행되었음.
- 2020년 스웨덴 전체 ODA 규모는 6,016 M USD으로, 이 중 해외원조 예산은 5,389 M USD임. SIDA는 전체 ODA 규모의 50%(3,074 M USD)를 집행하며 그 중 인도적 지원예산은 486 M USD으로 SIDA가 집행하는 ODA의 15%를 차지함.
- SIDA의 인도적 지원예산은 UN 등 국제기구,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 정부 기관(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이 인도적 지원 예산의 주 대상이며, 각 기관의 비교우위, 적절성, 결과 및 효과성에 입각하여 지원함.

〈표 24〉 2019 SIDA 인도적 지원 예산 배분 현황

구분	규모	구분	규모
다자기구	245.39M USD	대학 및 학술 연구 기관	528.77K USD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	190.58M USD	민간협력(PPP) 및 네트워크	475.89K USD
공공기관	3.62M USD	민간(상업) 기관	33.4K USD

출처: OpenAid¹⁸⁾

○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인도법, 국제난민법, 인권법 등의 국제법, 스웨덴 정부가 비준 및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 및 국제 문서(예: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원칙, WHS 서약사항, Sendai Framework, Grand Bargain 등)에 근거함.
- 상기 국제법, 국제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의 인도적 지원정책 및 전략 수립. 특히 인도적 지원정책 및 전략은 스웨덴 정부가 WHS에서 서약한 내용과 연계되어 있음.
 - 스웨덴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스웨덴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 제시함.
 - 2017-2020 SIDA를 통한 인도적 지원전략(Strategy for Sweden’s humanitarian aid provided through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SIDA) 2017-2020): 스웨덴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SIDA의 역할과 전략 방향 및 이행 방안 제시함.

[인도적 지원 우선순위]

- i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인도법 준수
- ii 공동의 인도적 지원 기준과 규범에 입각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지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력.
- iii 이재민 및 취약계층을 비롯,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
- iv 반복적인 인도적 위기 경감을 위하여, 인도적 개입과 장기 개발협력간의 협력 및 시너지 강화.
- v 인도적 지원 재원의 혁신 추구

18) 자세한 내용: <https://openaid.se/en/activities/compare?year=2019§orCategory=720&agency=SE-6>

[SIDA 인도적 지원 4가지 전략 영역]

- i 인도적 수요에 기반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
- ii 위기에 처한 이재민 보호 증진 및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인도법 준수 강화
- iii 이재민들의 (이재민을 위한) 영향력 확대
- iv 인도적 지원 체계의 역량과 효율성 증진

(2)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은 크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과 비전략적 파트너십 재난 대응 지원으로 구분이 가능함.

● 전략적 파트너십

- SIDA와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ship Organization, SPO)로 선정된 다양한 기관 (UN, 적십자사, CSOs) 간의 다년도 포괄적 협약(Multi-annual Framework Agreements) 체결을 통하여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 선정된 SPO는 SIDA의 연간 자금배분 절차와 기타 전략적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전략적 파트너십의 분야는 인도적 지원 현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수요분석, 연구/조사(Methodological Work)로 분류됨.

● 비전략적 파트너십 재난 대응 지원(Non-strategic Partnership Crisis Support)

- SIDA의 전략적 파트너가 특정 인도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혹은 대응에 필요한 특정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SIDA는 그 해당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기관을 지원할 수 있음.

○ SIDA와 민간단체 간 전략적 파트너십

① 프로그램명

○ SIDA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의 방식은 주요 활동 주체인 UN, ICRC, CSOs 와 다년간 포괄적 협약(Multi-annual Framework Agreements)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별도 프로그램명 없음.

② 전략적 파트너십의 목적

- “무력분쟁, 자연재난 및 기타 재난 상황에 처했거나 처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스웨덴 정부의 인도적 지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SIDA를 통한 인도적 지원전략(Strategy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through SIDA)]에서 제시하는 전략 목표와 결과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
-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엔 및 국제기구, 스웨덴 비상대응기관(MSB), 스웨덴 적십자사 및 11개 CSO와의 다년도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함.

③ 법적/정책적 근거

-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음.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법에서 명기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스웨덴 정부가 서명하고 승인한 국제협약, 즉 Good Humanitarian Donorship 및 WHS의 Grand Bargain Commitment 등의 실현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운용방식이 추진되고 있음.
- 앞서 기술한 인도적 지원전략에 입각하여 전략적 정합성에 부합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협력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

[인도적 지원 전략 목표]

“무력분쟁, 자연재난 및 기타 재난 상황에 처했거나 처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기 위함”

④ 프로그램 내용

- 지원 분야
 - 현장사업수행: 현장사업 수행 SPO는 세 가지 형태의 사업 분야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진행 중인 위기대응 사업(Ongoing Crisis): SIDA가 인도적 수요분석을 통해 인도적 지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지역의 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사업계획수립 및 승인절차 필요(단년도 및 다년도 사업).

※ 재난 대응 및 재난위험경감, 재난 예방 등의 사업요소로 신청 가능.

- 긴급 재난대응사업(Rapid Response Mechanism): 진행 중인 재난 외에 긴급재난 발생 시 24시간 내에 제출된 개별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배분 절차가 이루어짐.

※ 긴급구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재난위험경감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자부담 없음.

- 도구/역량강화사업(Method/Capacity Strengthening Projects): 인도적 지원 사업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지원

- 도구(Methods) 지원: 기금 제한적임. 특정 주제별 부문 내에서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도구 마련에 대한 사업지원

- 역량 강화: 기금 제한적임. SIDA 및 파트너기관의 우선순위에 부합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트너기관 혹은 현지 수행기관의 역량 강화에 직결되어야 함.

[주제별 부문]

수요조사, 국제인도주의법, 인도주의 원칙, 보호(SGBV 예방, 아동 보호), 조정, 책무성, 참여, 혁신적 프로그램, 현지역량강화, DRR, 조기복구

- 인도적 지원정책 및 연구/조사(Methodological Work): Methods Partner 기관들은 인도적 지원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 연구 및 조사,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역할 수행

⑤ 사업운용방식

- SIDA는 별도 위탁 및 운영을 위한 중간매개기관 없이 SIDA가 직접 사전에 전략적 협력기관(Strategic Partner Organizations, SPO)으로 선정된 기관과 다년간 포괄적 협약(Multi-Annual Framework Agreements)을 체결하여 SPO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용됨. 단, 긴급구호기금(Rapid Response Mechanism) 내에서 신속 대응 관련 명확한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비지정 기여가능함.

⑥ 사업수행 거버넌스

- SIDA(Humanitarian Unit)의 역할
 - SPO 선정(매 4년/기관에 따라 상이)
 - 연간 장기화된 위기(Ongoing Crisis)에 대한 인도적 지원 수요분석
 - 제출 사업심사 및 승인
 - 사업비 배분(연초 및 연 중간)
 - 연중 긴급구호자금 승인
 - 민관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평가
 - 인도적 지원 기관 간의 정책 협의 주도

- SPO의 역할
 - SIDA의 연간 인도적 지원 수요분석 과정에 참여
 - 사업제안서 제출
 - 승인된 사업수행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⑦ 사업지원/수행기관(SPO) 선정

- 선정 주기: 매 4년 인도적 지원 전략 수립/갱신 주기에 따라 SPO 신청 절차 개시
- 선정 대상: 자국 CSOs 및 국제 CSOs
- SPO 분류: 현장사업 수행을 위한 SPO 및 정책/연구/조사 목적의 SPO로 구분됨
- 선정 요건/지원 자격: SPO 선정은 기본적 요건은 해당 기관의 사업이 정부의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음. 분야 전문성, 현지 접근성, 현지의 특정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 비교우위 점유 필요
- 대표성, 독립성, 고정적인 현장사업 운영(Representativeness, Independence and well Anchored Operations)
- 기관 내부의 사업 관리 체계 구축(System for Internal Management and Control)
- 정부의 추진 전략을 달성하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역량 및 기술 보유(Capacity and Skills to achieve and report relevant results against the Strategies)
- 정책과 도구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 보유(Capacity and Skills in Policy and

Methodological Work)

※ 인도적 지원 분야의 SPO의 경우, 개발협력 분야의 SPO와 다른 형태를 띤. 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15개 Framework Organizations이 SPO가 되어 Framework Organization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이나, 인도적 지원 분야의 SPO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SIDA가 지원하는 형식임.

- 시민사회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예산지원, 비용 효과성, 정책 수립 및 옹호 활동, 도구 개발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짐.

⑧ **지원대상:** 선정된 단체가 지원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⑨ **지원 기간 및 횟수:** 각 기관과의 다년간 협약에 따라 상이

⑩ **예산 규모(2019년 기준)**

- SIDA의 인도적 지원 규모: 4,050 MSEK(USD 480M)
- 인도적 지원 규모 중 긴급구호(RRM) 유보금: 전체 예산의 약 29%인 1,185 MSEK(USD 140M)
- SPO 지원 규모(ICRC포함한 CSOs): 전체 인도적 지원 예산의 38.5%인 1,560 MSEK (USD 185M)
- 사업비 규모: 연간 SIDA 인도적 지원 예산규모 및 인도적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별 사업비 배정액 상이함.
- 진행 중인 위기(Ongoing Crisis)에 대한 계획된 사업의 경우, 기관의 재난 대응의 규모에 따라 개별 사업비 규모 연 USD 1M~USD 5M 등 상이함.
- 긴급구호(RRM):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진행 중인 위기 대응 사업 대비 사업비 규모가 작음. 평균적으로 사업당 USD 1M 미만 지급함.

⑪ **사업참여 대상단체:** 자국 CSOs 및 국제 CSOs

- 2020 현재 SPO 명단

〈표 25〉 SPO 분류 및 명단

현장사업수행 파트너	정책/조사/연구 Methods Partner
Action Against Hunger, Church of Sweden Diakonia IHL Global, IC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slamic Relief Worldwide Norwegian Refugee Council Oxfam GB, Plan Sweden Save the Children Sweden Swedish Mission Council Swedish Red Cross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ACAPS), ALNAP, ATHA Development Initiatives'(DI) (limited to the support to the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GHA) report), Humanitarian Policy Group(HPG), IRIN

⑫ 사업추진절차

- 위기 대응 국가 및 파트너기관 선정: 10월~12월
 - 양적 지표 중심 조사 및 분석
 - 차년도 대응 사업을 위하여 당해연도 10월에 SIDA는 CSO파트너에게 차년도 우선 순위사업에 대한 개요서 제출 요청
 - UN의 Humanitarian Needs Overview(HNO)와 Strategic Response Plan, Humanitarian Response Plan(HRP)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여 ICRC Appeal, ECHO의 Humanitarian Implementation Plan(HIP)와 파트너 기관의 요청 문서를 토대로 지원 국가 1차 선정
 - 질적 조사 및 분석
 - 상기 문서들을 토대로 선정된 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인도주의 위기 분석 실시: Humanitarian Crisis Analysis(HCA)
 - HCA 결과에 따라, 재난상황, 대응 우선순위 및 대응분야를 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기관을 선정하며 해당 재난에 대응할 것을 의뢰(이미 파트너십에 포함된 단체들 중심)
 - HCA 분석 과정과 동시에 기관과의 협의 과정 진행: 각 기관이 계획한 활동이 인도적 수요조사(HNO) 및 인도적 대응 계획(HRP)과의 부합 여부 파악
 - 선정된 기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협의 진행
- 자금배분 착수: 당해연도 1사분기
 - 통상 당해연도 3월 이내 전체 기금의 75% 가 계획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배분되며, 남은 금액은 긴급구호 유보금(RRM)으로 활용되어 연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이나

위기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⑩ 모니터링 및 평가방식

- SIDA는 Grand Bargain, Good Humanitarian Donorship, WHS 등 스웨덴 정부가 서명하고 동의한 국제합의사항 준수를 위하여 각 사업수행기관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인정
- Outcome Level에서의 평가 기본 지표 및 기준은 SIDA의 인도적 지원 전략목표의 부합도에 기초함.
- 사업수행기관은 연간보고 및 협약 기간 종료시점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제출함.
- SIDA는 개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아닌 다년간 협약 프로그램을 이행한 기관의 수행역량 등 평가 수행.
- 기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금 결정에 참고함
 - 본부직원의 현장방문: 현장에 담당 직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본부직원이 기금협약 서명 후, 연간기금 배분 결정 전에 연 3개월의 시간을 현장방문에 할애하여 현장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 현장직원의 후속조치: 현지 SIDA 사무소에 4명의 인도적 지원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 역할 수행(공여국 조정회의 참여, 사업현장방문, 파트너 협력 업무 등 수행) / 대사관내에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담당관이 배치되어 필요한 정보공유 업무 수행.
 - 단체의 보고서 및 평가: GHD 원칙에 입각하여 파트너기관의 자체 양식을 활용한 보고서 검토
 - 연간파트너정례회의: 각 파트너기관과의 개별적 정례회의 실시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사업진행현황 관련 협의
 - 타 공여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취합: 타 공여기관(예: ECHO, DFID 등)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타 공여기관으로부터 파트너 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

⑭ 회계 관리방식

- 상기 모니터링 및 평가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업수행기관 자체의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함. (단, 행정성 경비는 전체사업운영경비의 최대 7% 이내에서 책정 가능)
- 다년간 협약 종료시점에 독립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별도 제출 필요.

⑮ 정부 내 담당 기관

- SIDA 본부: Humanitarian Unit 내에 전임직원 30명
- 현장: 현장 SIDA에 4명의 인도적 지원 전임직원 배치 및 스웨덴 대사관 내 인도적 지원 파트타임 담당자 17명 배치.

2) 캐나다

(1) 캐나다 인도적 지원 일반 현황

- (주체) 캐나다 정부는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이하 GAC)를 통해 긴급한 재난 대응과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 전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고 있음. 외교부 내 국제인도적 지원국(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이하 IHA)이 인도적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당함.
- (목적)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와 안보 정책을 아우르는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에 근거하여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인도적 지원을 실시함.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캐나다의 정치 및 기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원 규모) 2015-2016 회계연도 기준 57개 국가의 인도적 위기 상황과 27건의 자연재난 발생에 대응하였음. 2010년 약 5억 캐나다 달러의 인도적 지원예산은 2015년 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기준 캐나다 공적 개발원조의 17%를 차지함¹⁹⁾. 캐나다는 국제사회 최대 인도주의 지원국 10개 국가 중 하나임.

- (지원방안) 긴급한 재난 대응 상황 및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상황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지원방안과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긴급 재난) 시의 적절하고 필요에 기반한 긴급 재난 대응을 위해 직접 사업 외 사전 협의된 다양한 기금 및 파트너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실시함. 이는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26〉 캐나다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주요 기금 현황

기금명	협력 기관	연 예산
중앙 긴급 대응 기금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UN 사무국 (공여국 간 협력)	2,94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 신속대응기금 WFP Immediate Response Account	WFP (공여국 간 협력)	600만 달러
긴급재난지원기금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	국제적십자사	350만 달러
캐나다 식량곡물 은행 식량 지원 기금 Canadian Foodgrains Bank Food Assistance Fund	교회 파트너십 (캐나다식량곡물은행)	2,500만 달러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 Canadian Humanitarian Assistance Fund	NGO 파트너십 (인도주의 연합)	300만 달러

출처: GAC 홈페이지 및 Evalu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Program, 2019

-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대응 사업은 장기적이며 예측 가능한 예산 확보 아래 사전 조사를 통해 수립된 대응 계획에 맞춰 비용 효과적이며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자기구 파트너를 통해 다년도의 제한되지 않은(Unearmarked) 예산을 지원하며 매년 Consolidated Appeal Process(이하 CAP)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s) 대상 공모를 진행하여 직접 사업을 발굴함.

19)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of Canada, 2018, pp.40

- CAP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 공모를 시작으로 10월 초 컨셉 노트 검토, 1차 선정 대상단체 발표 및 세부 실행계획서 개발을 거쳐 차년도 2월 예산 신청과 4월 예산을 승인하는 일정²⁰⁾.
- CAP 프로그램은 2015년까지 자국의 중소형 NGOs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 그 대상이 국제 NGOs로 확대되면서 사업 제안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²¹⁾.

(2)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 (지원 규모) 캐나다는 NGOs의 현장 전문성과 같은 비교 우위를 높이 평가하고 캐나다 정부가 서명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발맞춰 NGOs를 통한 인도적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음. 그 비중은 2012년 전체 예산의 14.3%에서 2016년 25.3%까지 증가하였음.²²⁾
- (커뮤니케이션 매커니즘) GAC는 캐나다 인도주의 비영리기구 협의체인 ‘인도주의 대응 네트워크(Humanitarian Response Network, HRN)와 협력하여 시민사회와의 정보 공유, 인도적 대응 조정, 조직적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음. 인도주의 대응 네트워크는 35개 인도주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도주의 정책 및 실행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인도주의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는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을 조사함.

① 프로그램(기금)명

-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Canadian Humanitarian Assistance Fund, 이하 CHAF)

② 프로그램 목적

-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은 세계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Smaller-Scale)의 긴급한

20)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Program, 2019, pp. 24

21) Ibid, pp.16

22)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of Canada, 2018, pp. 40

(Rapid-Onset)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조성되었으며 긴급 식량, 식수, 위생, 응급 의료, 보호소 지원 등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

- 자금 운영은 아래와 같이 5가지 목표를 가짐.
 -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재난 대응에 대한 자금지원
 - 필요 기반의 인도적 지원 자금 배분 강화
 - 적시성과 신속성을 가진 자금지원
 - 최적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도주의 활동 성과 증진
 - 조정, 적시성, 효과성 강화를 위한 혁신 증진

③ 법적/정책적 근거

○ 법적 근거

- **ODA Accountability Act(ODAAA; 2008)**는 캐나다의 모든 개발 원조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캐나다의 모든 해외 개발 원조는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의 가치, 외교 정책,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 증진, 국제 인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정책문서

- **(개발협력 정책문서)** 2017년 새롭게 발표된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는 모든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및 안보 지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조로 함. 빈곤을 퇴치하고 더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과 여아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시하고 있음.
 - **(정책 목표)** 해당 문서는 6개의 활동 분야(Action Areas)를 제시하고 분야별 목표를 명시하고 있음.
 -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신장(중점)
 - 인간 존엄성 증진(보건 및 영양, 교육, 인도주의 활동 영역)
 - 모두를 위한 발전 촉진
 - 환경과 기후 활동 증진
 - 포용적인 거버넌스 지원

- 전 세계적 평화와 안보 강화

- **(인도주의 활동)** 두 번째 활동 분야인 인간 존엄성 증진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인도주의 활동 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 즉, 여성과 여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춰 지원함으로써 더 크고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은 4가지 하위 핵심분야를 선정함.

- 인도주의 원칙 및 국제인도법 준수 및 옹호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젠더기반 폭력의 예방과 대응 전략 강화

- 인도주의 활동 시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전방위 지원

- 지역과 국가 내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신장 및 역량 강화 지원

-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문서)** 상기 언급된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의 기초 아래 GAC는 캐나다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협력 정책으로 Canada's Policy for Civil Society Partnership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 A Feminist Approach를 발표하였음. 이는 자국, 국제 및 현지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이하 CSOs)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캐나다 정부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최대화하며 견고하고 활기찬 시민사회 영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책 목표)** 해당 문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책 목표는 총 9가지로 다음과 같음²³⁾.

-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신장 및 양성평등 도모를 통한 빈곤 감소

-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환경조성

-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 존중

- 혁신적인 시민사회단체 리더십 양성

-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를 국제 지원 프로그래밍에 통합

-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며, 유연하고, 투명한 펀딩 매커니즘 형성

- 국제적 지원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 활용

- 국제적 지원에 있어 캐나다인의 참여 확대

- 지속가능성, 투명성, 책무성 및 결과 도모

- **(인도주의 활동)** 세 번째 목표인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 존중 목표는 인도주의 활동과

23) 한재광, 손희상, 김성규, 신재은, 김민영, 이하늬, 라수정(2019).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p. 172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GAC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목표를 △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완화 시키며,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 국제법에 명시된 의무와 원칙에 발맞춰 일관되고, 조정되며,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 △ 전 세계적 인도적 위기에 대한 준비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함.

④ 프로그램 내용

- 태풍, 지진, 쓰나미, 싸이클론과 같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나 재난 규모가 작아 미디어 및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조용한’ 재난에 특정되어 지원됨.
- 재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난민과 국내 실향민도 포함함.
- 재난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사업 분야가 결정되며 주로 식수 위생, 식량안보, 보호소, 비식량 물품(Non-food Items), 보호, 생계, 교육에 대한 활동을 지원함.

⑤ 사업운영방식

- 캐나다 정부 GAC가 인도주의 연합(Humanitarian Coalition) 사무국에 기금을 위탁하고 사무국은 회원단체에 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함.

⑥ 사업수행 FO

- 인도주의 연합(Humanitarian Coalition, 이하 HC)
- 역사 및 참여 배경²⁴⁾
 - (설립 배경 및 과정) 인도주의 연합은 단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 역량이 제한된다는 배경 아래 설립됨. 2004년 아시아 쓰나미 재난 대응 당시 NGOs 간의 과도한 경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2005년 파키스탄 지진에 대한 공동 어필을 계기로 첫 활동을 시작함. 2010년 아이티 대지진과 파키스탄 홍수 대응을 중심으로 캐나다 내 모금 활동의 핵심 단체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독립 법인으로 전환함.
 - (초기 활동 및 자금 마련) 2005년 4개 단체(Care Canada, Oxfarm Canada, Oxfarm Quebec,

24) The Canadian Humanitarian Coalition: is three-tiered humanitarianism the making?(2016)

Save the Children Canada)가 공동 재난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동을 시작함. 초기 조성 당시 재난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미디어 기관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도모함. 또한, 각 단체 리더십의 공동 대응 및 옹호 활동을 통해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 마련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2014년 캐나다 연방 정부의 ‘캐나다 긴급 구호 기금(CHAF)’ 조성으로 이어짐.

○ 현황

- **(회원 단체)** 인도주의 연합의 회원 단체는 총 12개로 아래와 같음.
 - Action Against Hunger
 - Canadian Foodgrains Bank
 - Canadian Lutheran World Relief
 - CARE Canada
 - Doctors of the world
 - HI International
 - Islamic Relief Canada
 - Oxfarm Canada
 - Oxfarm Quebec
 - Plan Canada
 - Save the Children Canada
 - World Vision Canada
- **(협의체 구조)** 인도주의 연합은 각 회원단체의 대표들이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주관하며 사무국(Secretariat)과 각 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committee)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조정함. 현재 사무국에는 6명의 상주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후원자 관리 담당자, 프로그램담당자, 홍보 및 마케팅담당자, 콘텐츠 및 미디어 담당자, 웹그래픽 담당자로 나뉨.
- **(예산)** 인도주의 연합의 2019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수익은 약 910만 캐나다 달러로 한화 약 76억에 달함. 이 중 캐나다 외교부의 자금은 약 700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의 수입 및 지출과 외교부의

자금지원 현황²⁵⁾은 <표 27>과 같음.

<표 27> 최근 5년간 인도주의 연합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연도	수입(CAD)	지출(CAD)	외교부 지원금(CAD)	외교부 자금 비율
2019	\$9,118,219	\$8,328,333	\$6,902,513	76%
2018	\$2,890,757	\$2,588,832	\$1,576,727	55%
2017	\$5,064,035	\$4,992,967	\$2,686,878	53%
2016	\$5,397,487	\$5,570,409	\$3,767,150	70%
2015	\$5,298,357	\$5,294,696	\$1,894,153	36%

출처: 2015-2019 인도주의 연합 연간 재무보고서

○ 회원 단체 선정

- (선정주기) 인도주의 연합의 이사회가 논의를 거쳐 신규단체를 공모 및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립 초기(2005년) 4개 단체를 시작으로 2011년 1개 단체, 2017년 2개 단체, 2019년 5개 단체가 새로 가입하게 되었음. 선정 주기와 규모는 협의체의 수용 역량에 따라 달라지며 정기적이지 않음.
- (선정기준) 협의체의 회원단체가 되기 위한 기준²⁶⁾은 다음과 같음.
 - 최소 3년 이상 된 캐나다 기반 자선 단체
 - 캐나다 인도주의 대응 네트워크(Humanitarian Response Network of Canada) 회원단체
 -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의 행동강령 준수 및 재난 구호(Disaster Relief) NGO로 서명한 단체
 - 캐나다 외교부(GAC) 국제인도적지원국(IHA)의 파트너 단체. 파트너 단체가 되기 위한 최소 자격요건은 <표 28>과 같음.
 - 지난 3년간 매년 1천만 캐나다 달러의 사업비를 지출한 단체
 - 지난 3년간 매년 2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수입을 낸 단체
 - 협의체의 자금 운용 결정에 대한 책무성을 보인 단체
 - 세계 각지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조직적 헌신을 가진 단체

25) Financial Statement of Humanitarian Coalition 2016-2019

26) Summary of Membership Criteria, Humanitarian Coalition, <https://www.humanitariancoalition.ca/our-members>

- 인도주의 현장 및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Sphere)에 대한 책무를 보인 단체
- 양성평등 및 인도적 위기에서의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수행 방안을 가진 단체
- 성 착취 및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수행 방안을 가진 단체 특히, 회원 단체는 캐나다국제개발협의체(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CIC) 대표자 선언인 “성추행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선언”에 서명
-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갖춘 단체
- 각 단체의 정관에 따라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후원금에 대한 재무적 정직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단체
- 협의체의 규약 및 정관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

〈표 28〉 GAC IHA 파트너단체의 최소 자격요건

제도적 필요조건	
1	합법적 법인 기관
2	비영리조직으로 등록된 비정부기구
3	이사회 또는 그에 준하는 구조 보유
4	캐나다 반테러법령의 요구조건에 대한 조치 확립
재무적 필요조건	
5	지난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6	국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지난 3년간 매년 최소 50만 캐나다 달러의 사업비를 관리한 단체
국제인도적지원의 필요조건	
7	최소 5년 동안 최소 3개 국가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전문성 보유
8	국제 인도적 지원 행동 강령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적십자/적신월 운동의 행동강령 및 재난구호에서의 NGOs 행동강령 준수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성폭력 및 성착취 보호에 대한 행동강령 및 활동계획 준수
9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Sphere) 준수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품질 개선과 책무성 강화에 대한 헌신
10	기구간상임위원회(IASC)의 클러스터 시스템을 활용한 과거 조정 경험 보유

출처: Funding application guidelines for NGOs, GAC IHA, 2013, pp. 2

○ 인도적 지원사업에서의 역할

- 인도주의 연합은 △ 인도적 위기대응을 위한 대국민 공동 모금 △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 소규모 재난 대응 활동을 진행함. 대규모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캐

나다 외교부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과 국가 수준에서의 모금을 진행함. 외교부는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모아진 기부금과 함께 사전에 약정된 국가 지원금을 협의체에 제공함. 협의체의 회원 단체는 이를 배분하여 해당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함. 소규모 재난의 경우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기금(CHAF)을 활용하여 재난에 대응함. 협의체는 특정 재난에 대한 각 회원 단체의 역량을 판단하여 자금 지원을 결정함.

○ FO 선정 방식

- 해당 기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여 인도주의 연합과 체결된 약정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는 FO를 변경하는 방식이 아님.

○ 정부의 지원 내용

- 1차 시범 약정
 - 기간: 2014년 4월 ~ 2015년 9월(18개월)
 - 예산: 25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30억)
 - 국가: 이라크, DR콩고, 카메룬, 니제르, 네팔, 방글라데시, 터키, 인도
 - 분야: 식량, 영양, 식수 위생, 보호소 등 총 8개 사업
- 2차 약정
 - 기간: 2015년 9월 ~ 2018년 8월(36개월)
 - 예산: 95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80억)
- 3차 약정
 - 기간: 2018년 9월 ~ 2020년 8월(24개월)
 - 예산: 1,0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84억)
 - 내용: 기존 사업 분야와 동일하나, 중간 규모의 재난 대응도 포함됨. 3차 약정으로 진행된 2019-2020년 사업 목록은 <표 29>와 같음.

〈표 29〉 2019-2020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CHAF) 지원 사업 현황

연도	단체	사업비(CAD)	기간	재난 유형	수원국
2020.10	World Vision Canada	\$267,920	6개월	홍수	캄보디아
2020.10	Islamic Relief Canada	\$70,000	6개월	실향민	말리
2020.10	CARE Canada/Oxfarm Quebec	\$555,300	6개월	홍수	베트남
2020.09	Islamic Relief Canada	\$297,500	6개월	홍수	수단
2020.06	Plan International Canada	\$297,500	4개월	열대성 태풍	엘살바도르
2020.05	Save the Children Canada	\$299,000	5개월	홍수	우간다
2020.04	World Vision Canada	\$212,500	6개월	싸이클론	바누아트
2020.02	Islamic Relief Canada	\$350,000	4개월	폭설	파키스탄
2020년 소계(현재 진행 중)		\$2,349,720			
2019.12	CARE Canada	\$306,850	4개월	태풍	필리핀
2019.11	Plan International Canada	\$297,500	4개월	지진	필리핀
2019.10	CARE Canada	\$255,000	5개월	홍수	가나
2019.09	Islamic Relief Canada	\$297,500	5개월	홍수	말리
2019.07	Islamic Relief Canada	\$299,000	4개월	홍수	방글라데시
2019.05	Islamic Relief Canada	\$297,500	3개월	싸이클론	인도
2019.05	Save the Children Canada	\$299,000	4개월	싸이클론	모잠비크
2019.04	Oxfarm Canada	\$260,000	4개월	홍수	아프가니스탄
2019.03	CARE Canada	\$297,500	4개월	싸이클론	말라위
2019.03	Plan International Canada	\$297,500	4개월	싸이클론	말라위
2019.03	Oxfarm Canada	\$595,000	6개월	싸이클론	모잠비크
2019.02	Oxfarm Canada	\$297,500	6개월	토네이도	쿠바
2019년 소계		\$3,799,850			

출처: 캐나다 외교부(GAC) 홈페이지, 2020

⑦ 지원대상

-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은 소규모의 긴급한 재난 대응을 위한 기금으로써 아래와 같이 ‘재난규모’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1,000명 또는 그 이상의 재난 피해자 발생(최대 5,000명까지)

- 인도적 지원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재난
 - 인도적 대응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 재난
 - 현지 및 수원국 정부와 협력이 가능한 재난
 - 현지 긴급 대응 역량을 갖춘 단체가 존재하는 재난
- 중간 규모 재난의 경우 아래 기준이 추가로 고려됨.
 - 피해자 수가 250,000 - 750,000명에 이르는 재난
 - 재난의 여파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여 소규모 재난 대응으로는 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재난(한 국가 내 여러 지역 및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재난 등)
 - UN Flash Appeal이 발표되었거나 예정된 재난
 - 기타 중간 규모 재난으로 분류되어야 할 명확한 요소가 있는 재난

⑧ 지원 기간 및 횟수

- 개별사업 당 4~6개월의 사업 기간을 가지며 한 달씩 두 번에 걸쳐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한 국가, 한 가지 재난에 한 개 단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동일 재난이더라도 국가가 다른 경우, 국가가 같더라도 서로 상보적 사업이 수행될 경우, 중간 규모 재난 대응 일 경우에는 여러 단체를 선발할 수 있음.

⑨ 규모

- 프로그램 내 개별사업은 단체의 역량 및 재난 규모에 따라 사업 당 10만에서 35만 캐나다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이는 한화 약 8,500만 원에서 3억 원 규모임.
- 3기 약정 사업부터는 중간 규모(Medium-Scale) 재난 대응도 가능하며 재난별 70만 캐나다 달러(약 6억 원)까지 지원 가능함. 다만 본 기금 본연의 목적(소규모 긴급한 재난 대응)에 따라 중간 규모 지원은 전체 기금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⑩ 사업참여 대상단체

-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은 ‘인도주의 연합’의 회원단체만 받을 수 있으며 인도주의 연합 회원은 자국 NGOs만 가능함.

⑩ 지원자격

- 해당 기금은 인도주의 연합 회원 단체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회원단체 자격 기준은 회원단체 선정에서 기술한 바 있음.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3가지 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자격 여부를 평가함.
- 재난 발생 지역 및 인근에 이미 활동 영역을 가진 단체
- 피해자들의 필요에 맞춰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단체
- 재난 긴급대책(Disaster Contingency Plan) 또는 이에 준하는 계획으로 준비가 갖춰진 단체

⑪ 자부담

- (1차 시범 약정 기간) 자부담 15%, 협의체의 자체 긴급구호 기금 10%,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 75%으로 전체 사업비가 조성됨.
- (현재) 자부담 10%, 협의체의 자체 긴급구호 기금 5%,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 85%로 조성됨.

⑫ 모니터링 평가 방식

- 약정 기수 별 기금 운영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함.
- (모니터링) HC 사무국의 프로그램 담당자는 사업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성인지적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Gender-sensitive Monitoring, Evaluation and Learning Framework)를 개발 및 활용하여 기금 전체와 개별사업을 관리함.
- (중간평가) 약정 체결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함. HC 사무국이 주관하여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GAC IHA, HC 회원단체 등)이 협력하는 구조로 진행됨. 현재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사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중간평가를 통해 발견된 사항들은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공유되며 다른 기금 사업(START, EDAF 등)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공동 학습의 기회로 활용함.
- (종료평가) 2년 주기로 CHAF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약정 종료 시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함. 성과 평가는 CHAF 사업의 종합적 사업 영향 평가로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되며 3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또한, 현장방문이 진행되지 않은 회원 단체 3곳을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받아 총 6개국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함. 평가에 반영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음.

- HC 성과 및 산출물 지표에 대한 기술적 품질
 - SPHERE와 HAP 기준 준수
 - 성인지적 고려
 - 지역사회 참여
 - 세부 활동의 적절성
 - 수혜자 및 현지 파트너의 참여
- (학습) 회원 단체의 공동 학습을 통한 사업성과 개선을 위해 ‘학습 우대(Incentivized Learning)’ 메커니즘을 운영함.
- 리서치 등 근거 및 교훈 축적을 계획할 경우 전체 예산의 1%를 추가 예산으로 지원
 - 학습을 위한 추가 예산은 단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혁신적이고 공동 학습이 가능한 방법을 권장
 - HC 사무국은 추가 예산을 받은 단체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학습 결과를 수집하고 검토 후 CHAF 관계자들과 공유함
 - 학습 결과를 제출한 단체에 대해 추후 최적 단체 선발 시 우선 고려
- (보고) HC 사무국은 CHAF 운영 전체에 대해 IHA에 연례보고를 실시하며 회원 단체는 각 개별사업에 대해 HC 사무국에 사업 결과보고를 진행함.
- (CHAF 운영) HC 사무국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체 사업 및 CHAF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 IHA에 제출함. 결과 보고에는 전년도에 CHAF로 운영된 전체 사업의 성과와 수치, 성공 사례가 들어가며 IHA 제출 후 HC 홈페이지에 게재됨. 또한 IHA 지침에 따라 세부 내역이 담긴 재무 보고서를 제출함.
 - (개별사업) HC 회원단체는 각 사업의 종료 후 2.5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사무국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IHA에 해당 보고서를 전달함.
- ⑭ 회계관리방식
- 개별사업에 대한 회계 관리는 IHA에 제공한 양식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사업 종료 후 2.5개월 이내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해

야함. CHAF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회계 관리 지침은 <표 30>과 같음.

<표 30> CHAF 주요 회계 관리 지침

구분	내용
예·결산 내용	총 11개의 항목(heading)이 있으며 1) 인건비, 2) 공급 및 배급품, 3) 로지스틱, 4) 현지 행정비, 5) 파트너 지원비, 6) 모니터링 및 평가, 7) 안전 및 보안, 8) 학습우대, 9) 단체 행정비, 10) HC 행정비, 11) 홍보비로 나뉨.
예산변경	각 항목 예산의 15%를 초과하는 예산변경일 경우 HC 사무국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함. 예산 변경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사업제안서 및 계약서의 일부 개정으로 간주됨.
행정비	회원 단체는 GAC IHA 지원금의 6.5%까지 행정비로 사용할 수 있음. GAC IHA 지원금의 1%는 회원 단체가 아닌 HC가 CHAF 운영 전반을 위한 행정비로 사용할 수 있음.
환위험	회원 단체는 환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환차로 인한 이익은 보고되고 사업에 재투자 되어야 함.
이자발생	지원금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는 보고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 명시된 활동에 책정되어 사용되어야 함.
회계감사	HC 이사회를 통해 임명된 회계사가 HC 자체 자금 및 CHAF 운영 전체에 대해 매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HC 사무국은 이를 IHA에 제출하며 HC 홈페이지에 게재함.

출처: CHAF 가이드라인 3.1(2019)

⑮ 선정심사

- (선정과정) 사업심사 및 선정과정은 <표 31>과 같으며 각 단계에 따른 의사결정 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모든 심사 과정은 기금 활성화 요청 후 7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표 31> 기금 활성화 및 선정과정

단계	번호	내용	진행 일정
활성화 요청	1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원하는 단체는 재난평가 툴(Disaster Assessment Tool)을 작성하여 기금 활성화 요청서와 함께 HC 사무국에 제출	
선정 평가	2	HC 사무국은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아래 내용 확인 후 관련 문서 접수(24시간 이내) 1) 다른 회원 단체 중 대응을 원하는 단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출된 재난평가들에 대한 다른 회원 단체의 적합성 평가	
	3	대응 적합성 확인 후, HC 사무국은 국제인도적지원국(IHA) 검토 및 피드백 요청	1일 차
	4	1) (긍정적일 경우) 활성화 진행 2) (부정적일 경우) 활성화 요청서 부결, 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와 추가 논의 3) (대응에는 적합하나 여러 단체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 지원 단체 중 최적 단체 선발 요청	2일 차
	5	여러 단체가 대응 준비 시, 대응을 원하는 단체는 사업개요서를 HC 사무국 및 사업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 실시	3일 차

기금 활성화	6	최종 선정된 단체는 사업개요서를 사무국에 제출	4일 차
	7	사무국은 IHA 승인(Green light) 요청	
	8	IHA 검토 진행(만약 IHA로부터 이틀 이내에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승인으로 간주) 및 결과 알림	6일 차
	9	승인을 받은 단체는 사업제안서를 HC 사무국에 제출	13일 차
	10	HC 사무국은 사업제안서를 IHA에 전달 및 대중 홍보 및 배포를 위한 재난대응전략 문서 준비	15일 차

출처: 2019 CHAF 가이드라인 3.1

- (선정 기준 및 주제) 동일한 재난에 여러 단체가 지원했을 경우 HC 사업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이 논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최적 단체를 결정함.
 - 현장 및 재난 지역에서의 역량
 - 대응 일정: 이미 자체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단체, 대응 확장을 고려중인 단체, 기금 활성화를 첫 번째로 요청한 단체 우선 고려
 - 대응 형태: 초기 평가 시 발견된 활동의 핵심적 공백에 대한 대응
 - 수혜자 수
 - CHAF 자금 활용으로 인한 잠재적 가치 창출 여부

-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과정으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HC 사무국은 IHA 승인 직후 이에 대한 공문을 선정 단체에 발송함. 공문을 받은 단체는 계약서 작성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업 착수 가능함. 계약에 따라 단체는 12일 내에 사업 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⑩ 사업수행 거버넌스

- 캐나다 정부 부처 GAC IHA, 인도주의 연합 사무국, 인도주의 연합 회원단체는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기금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함. 기능별 책임과 역할은 <표 32>와 같음.

〈표 32〉 CHAF 기금 운영에 대한 기능별 역할과 책임

GAC IHA	인도주의 연합 사무국	인도주의 연합 회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F 기금 조성 및 제공 • 기금 활성화 요청에 대한 피드백 및 개별 사업 승인(2일 이내) • CHAF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 전달 • CHAF 사업에 대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F 기금 지침 준수 여부 확인 • 의사결정 조정, 주기별 사업관리, 커뮤니케이션, 행정, 재무 및 회계, 감사 등의 일반 운영 • CHAF 사업 활동에 대해 IHA에 적시 보고 • 회원단체 대상 CHAF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 CHAF 사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 • 회원단체의 대응 역량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 • CHAF에 대한 온라인 정보 포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F 지침에 따른 사업 운영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CHAF 메커니즘 관리 • CHAF 사업 운영과 관련된 이슈(사업기간 연장, 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 등)에 대해 사무국에 보고 • CHAF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 학습 활동에 참여 • 각 회원단체의 대응 역량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출처: 2019 CHAF 가이드라인 3.1

- (사업운영위원회) 각 회원단체의 중견급 실무자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는 사무국과 함께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매월 CHAF 운영에 대한 점검 회의를 실시함.
- (연례회의) CHAF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GAC IHA, HC 사무국, 사업운영위원회)는 매년 CHAF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 점검 회의를 실시함.

⑰ 정부 내 담당 기관²⁷⁾

- 기관: 캐나다 외교부(GAC) 내 국제인도적지원국(IHA)
- 부서
 - 정책 및 제도적 관계 관리부
 - 인도주의 대응 사업부
 - 인도적 지원 조정 및 자연재난 대응부
- 직원 수: 30명(2018년 기준)

27)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Program, 2019, pp.6, pp.45

3) 호주

(1) 호주의 인도적 지원 현황

- (주체)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이하 DFAT)는 호주 정부의 국제적인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정부 부처로 긴급 재난 대응, 만성 위기 대응 및 재난위험경감 활동을 담당함.
- (목적) 호주 정부는 인도적 지원 목적을 “분쟁, 재해 그리고 기타의 인도주의 위기 중 혹은 그 이후에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고, 존엄성을 보존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위협을 경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4가지 하위 목표 즉, △인도-태평양 연안 지역과 연계한 개선과 혁신을 통한 국제 인도주의 활동 강화,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인근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재난위험경감 증진, △재난에 대한 보다 나은 대비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연안에서의 긴급 재난 및 만성 재난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과 보호 지원 제공, △인도주의적 구호에서 장기 복구와 개발로의 전환 등을 달성하고자 함²⁸⁾.
- (지원규모) 2017-2018 회계연도 총 408,446,000 호주 달러, 2018-2019년 회계연도 총 413,387,000 호주 달러를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용함. 이는 17-18년 기준 호주 공적개발원조의 10%, 18-19년 기준 9%를 각각 차지함²⁹⁾.
- (지원방안) 긴급한 재난 대응 상황 및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상황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지원방안과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28) DFAT(2016), "Humanitarian Strategy"

29) DFAT(2019), "Australi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atistical Summary, 2018-2019"

〈표 33〉 호주의 인도적 지원 방법

구분	세부내용
호주의료지원팀 (Australian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 직후 긴급한 의료 서비스 지원.
재난지원팀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	수색 및 구조를 기본으로 건물 안정성 평가, 위험물 제거 등 지원
구호 물품 지원 (Relief supplies and logistics)	식수 정화제, 위생 물품, 담요 등 긴급 물품 보유 및 지원
호주 적십자 (Australian Red Cross)	인도적 지원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50,000,000 호주 달러 협약을 통해 주요 인도적 위기에 대응
호주 인도주의 파트너십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으로 호주 NGO들이 재난과 만성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
호주 지원 (Australia Assists)	자연 재난과 분쟁 예방,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파견 프로그램. 750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
위기 대응팀 파견 (Crisis Response Team)	전문 인력 파견 프로그램. 호주 공관 및 파트너들의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
다자 파트너 (Multilateral Partners)	WFP, UNICEF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출처: 호주 외교통상부(DFAT) 홈페이지. 2020

(2)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① 프로그램명: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이하 AHP), 2017-2022

- AHP는 “무력 갈등, 자연재난 그리고 다른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 존엄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한 준비 및 회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과 혁신의 강화 및 지역 공동체가 예방, 대응, 조기 복구, 위험경감 및 복원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FAT와 호주 NGO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② 프로그램 목적

- 위와 같은 장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HP는 3가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조기복구
 - 태평양 연안 도서 국가들과 동티모르의 지역적인 인도주의의 대응 역량 강화와 회복력 강화

- DFAT와 HRG(Humanitarian Reference Group)의 파트너십 강화

③ 법적/정책적 근거

○ 정책문서

- 호주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은 DFAT의 인도지원 전략(Humanitarian Strategy, 2016)과 연계되어 실시
- 2016년 DFAT에서 발표한 인도주의 전략문서로 호주 정부의 인도적 지원의 원칙, 전략 목표, 우선순위 및 실적평가 프레임워크(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AHP 프로그램의 정책적 근거 문서로 4가지 호주 인도적 지원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국제인도주의의 활동 강화: 특히 인도-태평양 연안 지역에 맞는 국제 인도주의 체계의 개혁과 혁신 지원. SDGs 및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인도적 지원 활동의 통합 등을 모색
 - 재난위험감소: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연계된 재난위험방지를 위한 지원 및 정부와 지역사회가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 실시
 - 예방과 효과적 대응 지원: 특히 인도-태평양 연안 지역에서의 긴급/만성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 활동 지원
 - 조기복구 강화: 긴급구호에서 중장기 복구와 개발로의 전환을 지원. 재난 또는 위기 이후 기초서비스, 시장과 생계 복구에 집중

- 호주 인도주의 전략은 AHP 프로그램의 목표와 협력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즉, 인도지원 전략의 지역, 분야, 목표에 따라 AHP의 3개 성과 목표가 구성 되었으며, 또한 민관협력 파트너 NGOs에 대해 “호주는 핵심 파트너로 사전 선정된 NGOs들과 인도주의 활동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로 정의함으로써 AHP 내 민관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④ 프로그램 내용

- AHP의 3가지 성과 목표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지원 분야 및 자금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음.

〈표 34〉 AHP 성과목표별 지원 분야

성과 목표	지원 분야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조기 복구 ³⁰⁾	긴급재난 대응, 조기 복구, 만성재난 대응, 난민 지원 등
태평양 연안 도서 국가들과 동티모르의 지역적인 인도주의 대응 역량 강화와 회복력 강화 ³¹⁾	재난경감 위험, 역량강화(특히 현지 기관)
DFAT와 NGOs간의 파트너십 강화 ³²⁾	홍보(Visibility) 및 학습 촉진

출처: DFAT,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2016

⑤ 사업운용방식

- AHP ‘Support Unit’이라는 위탁 조직을 구성하고 이 조직이 DFAT를 대신하여 AHP 참여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자금 배분 관리, 평가 및 보고, 홍보 등)를 수행함.

⑥ 사업수행 FO

- 이름: AHP Support Unit
- 역사 및 참여 배경
 - AHP 이전 인도지원 민관협력 프레임워크인 HPA(Humanitarian Partnership Agreement)에서 발견된 주요 개선 현안들, 즉 NGO들 간의 협력 약화와 경쟁심화, 장기 재난 지원에 대한 부적절한 사업체계, HRG와 중복된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낮은 대중 홍보 등을 고려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타 대안들 즉, △DFAT의 직접 관리(Direct management by DFAT), △ 민간기관 주도(A private sector-led humanitarian response facility), △ NGO 협의체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Block Funding to an NGO-managed consortium)에 대한 평가 실시.
- DFAT의 직접 관리(Direct management by DFAT) 방식
 - 장점: DFAT의 인도적대응과 개발프로그램 사이에서의 연계 강화, 긴급구호 대응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행정 소모 감소, 공여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 유지.

30) Effective response and early recovery

31) Local humanitarian capability in the pacific is strengthened to anticipate, prepare for, respond to and reduce risks from natural hazards; and Pacific communities are more resilient to the impacts of natural hazards.

32) The DFAT-HRG partnership is strengthened: HRG member NGOs, their local partners and DFAT work together more effectively.

- 단점: DFAT 내 인도적 지원 전문성 확보 및 관리 인력 증가 필요. 이전 HPA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된 DFAT와 NGOs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후행.
 - 결론: DFAT 내 직원 부족. 협력과 파트너십을 후행하는 방식.
- DFAT를 대신하여 협약/계약과 지불을 대행하는 위탁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A Private Sector-led Humanitarian Response Facility)
- 장점: 신속한 자금지원 가능, NGO와 DFAT의 행정업무 감소.
 - 단점: DFAT와 NGO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배치, 긴급구호 대응 중 과도한 업무량으로 제3자 기관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높음.
 - 결론: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할 유닛 구성은 필요하지만 고비용의 제3의 기관을 NGO와 DFAT 사이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NGO 협의체/컨소시엄에 대한 전적인 자금지원 방식(Block Funding to an NGO-Managed Consortium)
- 장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부족한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가능. NGO 간 협력 강화 및 DFAT의 업무 부담 감소
 - 단점: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는 부족.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가시성을 낮춤으로써 국민적 호응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 결론: NGO의 의사결정은 중요하지만, 호주 정부와 별개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비생산적임.
- DFAT는 각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단체 방식이 아닌 위탁자(Contractor) 방식의 Support Unit 구성 방식으로 결정함. 이를 위해 NGOs(HRG NGO 포함), NGO 협의체(ACFID 포함) 및 기타 민간 기관(Private Sector Bodies)을 대상으로 Support Unit을 주관할 기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Whiltelum Group³³⁾이 선정됨.

33) 컨설팅 업체

〈표 35〉 Whitelum Group의 대표 프로그램

[국제개발/인도적 지원 컨설팅 업체로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 중]	
① 호주인도주의 파트너십(AHP) Support Unit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AHP) Support Unit)	- DFAT의 AHP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Support Unit을 관리하고 호주 NGO에 대한 보조금을 관리하며 파트너십, MEL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제공
② 호주 자원 봉사자 사업 지원 서비스(Australian Volunteers Program Support Services)	- 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및 Cardno와 협력하여 호주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제공. 위 두 기관의 컨소시엄 기관으로 평가를 담당.
③ 디지털 지구 아프리카 사업 디자인(Digital Earth Africa Investment Design)	- Geoscience Australia 및 DFAT의 Digital Earth Africa Initiative에 대한 사업 설계

출처: Whitelum Group 홈페이지, 2020

⑦ 현황

- AHP Support Unit 담당 인력 구성 AHP SU는 아래 표와 같이 5명의 담당 인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단기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됨.

〈표 36〉 AHP Support Unit 구성인력

담당 인력	직무
Partnership Dir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Unit 관리 업무 총괄 • 사업추진 및 거버넌스 체계 운영 • 연간 국별, 지역별 사업 리뷰 및 평가 관리 • 국별 위원회(Disaster READY) 월례회의 주관 • DFAT와 AHP 참여 기관간의 파트너십 촉진
Operation and Grants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AT와 참여기관 간 계약관리 • 단기 채용 인력 계약관리 • 예산 관리 • 보고서, 홍보물, 평가 결과물 홍보에 대한 지원
Communications and Visibility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홍보 관리 • 사업 및 개발 효과성 홍보를 위한 스토리 개발 • 웹사이트 관리 • 주제별 보고서 발간 • SNS 홍보물 개발 및 지원
Monitoring and Evaluation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업데이트 • 국별 평가 체계 개발 및 평가 지원(Disaster READY) • 연간 국별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Disaster READY) • 활동 성과 공유회 지원 • 평가 계획 수립 및 관리 등
Program Offic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지원(회계, 계약, 행사 등)

출처: DFAT,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2016 및 Whitelum Group 홈페이지, 2020

- 이러한 Support Unit은 주관 기관(Hosting Organization)의 관리를 받지만 별개의 분리된 조직으로, 위 AHP SU 구성인력은 DFAT 대표와 두 개의 HRG 회원기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채용을 결정함.

⑧ 인도적 지원사업에서의 역할(AHP에서의 역할)

- 재난 대응 실시 프로세스(Response Activation Process) 관리
 - AHP 참여기관으로부터 재난 대응 사업 실시를 위한 제안서 접수, 사업 선정위원회(긴급재난: Response Committee/ 장기재난: Technical assessment panel) 소집, 사업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통합 제안서(Consolidated Response Proposal)를 DFAT에 제출
 - 통합제안서 승인에 따른 계약관리 및 자금 집행: DFAT로부터 지원금 수령에 따른 해당 NGO와의 관련 계약 체결 및 지원금 전달
 - 사업실행관리: DFAT에게 실행계획서(Consolidated Response Implementation Plan) 제출, 중간보고서(Consolidated Response Progress Reports, 6개월 이상 사업의 경우) 및 결과보고서(Consolidated Response Final Report) 제출

- DFAT와 HRG(Humanitarian Reference Group) 간의 협력 강화
 - DFAT 및 HRG 간 AHP 사업 간담회(DFAT-HRG Partnership Brokering Discussion) 개최
 - 연례 인도주의 정책 회의 개최
 - 분기별 인도주의 파트너십 간담회 개최 등

- Lear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 HRG 참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과 공유회 개최, 성과 보고서(Lesson learning report) 배포
 - AHP 사업성과 데이터 관리, 사업 관련 보고서 관리
 - MEL Framework 개정
 - 재난 대응 공동 평가(Joint Response Evaluation) 관리
 - AHP 프로그램 중간, 결과 평가 지원
 - 연례 DFAT-HRG 파트너십 Health Check 지원

○ 인도지원 대중 홍보 및 인식개선

- Communication Plan 개발 및 실행: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템플릿 등 개발과 실행
- 언론 배포, SNS, 블로그 등 내 스토리 자료 수집 및 제공(기고문, 사진, 그래픽 등)
- 참가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운영(홈페이지 등)

⑨ Support Unit 위탁기관 선정 방식

○ AHP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AHP Support Unit를 위탁 운영(Hosting)할 기관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선발함. 그 선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선정 기준
 -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 호주 NGO와 그들의 로컬 파트너와의 업무 경험
 - 호주 정부의 원조 프로그램 특히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식과 경험
 -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원칙에 대한 이해와 이행
 - 복잡한 파트너십 관리의 경험
 - 기관 간 중개 및 협상 경험
 - 다양하며 때론 경쟁적인 기관들을 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해 본 경험
 - 계약 추진 능력
 - 계약 양식 개발 능력 / 계약 관리 능력
 - 빠른 시간 내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빠른 업무 추진 능력
 - AHP 실행을 위해 기한 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의지 및 능력
 - 필요시 업무 시간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

⑩ 지원대상

○ 단체 지원방식으로 선정된 기관만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비선정 된 기관은 선정된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함.

⑪ 지원기간 및 횟수

○ 전체 지원 기간: 2017-2022년(5년)

○ 프로그램별 지원 기간 및 횟수

- 분야에 따른 기관별 참여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지원 기간은 차이가 존재함. 긴급대응의 경우 사업 기간은 2개월~12개월로 참여 기관은 년 중 발생 재난별로 대응 자금을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³⁴⁾. 장기 대응 사업은 사업 기간이 최대 30개월로 긴급대응과 차이가 있으나 횟수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을 받음.

<표 37> AHP 프로그램별 지원 기간 및 횟수

구분	지원기간	횟수
긴급 대응(Rapid Response)	사업당 최대 12개월	제한 없음
장기 대응(Protracted and Slow-onset Response)	사업당 최대 30개월	제한 없음
재난위험경감 및 긴급대응 역량 강화 (Disaster READY)	2018년 1월 ~ 2022년 6월(4.5년)	제한 없음

출처: DFAT, Investment design document for AHP, 2016.

- 반면, 재난위험경감 사업(Disaster READY)은 아래 표와 같이 사업대상 국가별 컨소시엄 (Disaster READY Country Committees)이 구성되어 한 기관이 여러(국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사업 기간은 단위 국가 프로그램당 총 4.5년으로 한 개 기관은 4.5년 동안 총 호주 달러 5백만 불(약 한화 41억)의 자금을 지원받음.

<표 38> 국가별 Disaster READY 참여단체 현황

국가	참여단체
Regional	World Vision, Oxfam Australia and Plan International
Fiji	Plan International Australia, Caritas Australia/CAN DO and CARE Australia(Live&Learn)
PNG	Plan International Australia(ChildFund), World Vision Australia, CARE Australia and Caritas Australia/CAN DO
Vanuatu	CARE Australia, World Vision Australia, Oxfam Australia, Plan International Australia, Caritas Australia/CAN DO and Save the Children Australia
Timor-Leste	Oxfam Australia, Plan International Australia (&ChildFund), World Vision Australia and CARE Australia.
Solomon Islands	Oxfam Australia, World Vision Australia, Caritas Australia/CAN DO, CARE Australia and Plan International Australia.

34) CARE Australia의 경우 2018년 기준 총 4건의 재난(Tonga, PNG, Laos, Indonesia) 대응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음.

35) 사업실행단체별 지역 협력 단체는 AHP 홈페이지 참조

⑫ 규모(프로그램 전체 규모/기관별 상한액)

- AHP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년 도별 차이가 발생함. 4.5년 동안 전체 사업비 호주 달러 5,000만 불(한화 약 416억 원)이 확정된 Disaster READY와 달리 긴급구조 및 만성재난/위기 대응은 DFAT의 당해연도 인도적 지원 자금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이 발생함.

<표 39> AHP 프로그램별 지원 규모

(단위: AUD)

구분	지원 규모
긴급구조 (Rapid-Onset)	- 2017년: AUD28,000,000 - 2018년: AUD35,000,000 - 2019년: AUD10,000,000
만성재난/위기 (Protracted and Slow-Onset)	
재난위험경감 및 긴급대응 역량 강화 (Disaster READY)	- 전체 규모: 5년간 총 AUD50,000,000 - 프로그램 예산: AUD42,500,000 - 참여 기관 당 기본 년 AUD5,000,000 - 위탁 조직(Support Unit) 운영비 및 모니터링 평가비 등: AUD7,500,000

출처: AHP Humanitarian Response Annual Progress, 2018. 2019.

⑬ 사업 참여 대상단체

- 직접 참여 기관은 아래 표와 같이 호주 단체(Australian NGOs)만 가능함. 호주 NGO들 중 ACFID(Austral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내 의 인도주의 활동기관들로 구성된 HRG(Humanitarian Reference Group)³⁷⁾ 소속 기관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기타의 기관(현지 CSOs 포함)들은 HRG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만 사업참여가 가능함. 현재 AHP(2017-2022)에 선정된 단체들은 아래 <표 40>과 같이 총 6개 기관임.

36) AHP Humanitarian Response Annual Progress에 따르면 Update, 17년~19년간 총 지원예산은 73,132,000AUD 임.

37) ACFID의 Humanitarian Reference Group은 ACFID 회원 기관 들 중 인도적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 AHP 프로그램 공모가 시작된 2016년 5월 기준 당시 기준으로 Act for Peace, ActionAid Australia, ADRA, Australian Lutheran World Service, CARE Australia, Caritas Australia, Child Fund Australia, Habitat for Humanity Australia, Oxfam Australia, Plan International Australia, Save the Children Australia, Transform Aid Australia and World Vision Australia 가 소속되어 있었음.

〈표 40〉 2017년~2022년 AHP 참여단체

수행단체	컨소시엄 단체
CARE Australia	Live & Learn
Save the Children Australia	
Caritas Australia/CAN DO	Caritas Australia, Act for Peace,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Anglican Board of Mission, Anglican Overseas Aid, Australian Lutheran World Service, Transform Aid International and Uniting World.
Plan International Australia	ActionAid, ChildFund Australia, International Medical Corps UK, CBM Australia and 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OXFAM Australia	ABC International Development, CBM Australia and Habitat for Humanity Australia.
World Vision Australia	Habitat for Humanity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CBM Australia and Field Ready.

출처: AHP 홈페이지. 2020.

⑭ 지원 자격

- AHP 프로그램은 아래 세 가지의 자격을 갖춘 단체만이 지원할 수 있음.
- ACFID Humanitarian Reference Group(이하 HRG) 회원 단체인 13개 단체만이 사업 참여가 가능함.
- NGO 간 컨소시엄, NGO와 영리기관간의 컨소시엄 모두를 장려하나 이 경우 HRG 멤버가 컨소시엄의 대표단체가 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함.
- 참여 단체는 전 세계적인 활동이 가능해야 함.

〈표 41〉 2020년 기준 현재 ACFID 내 HRG 회원 단체

단체명
Act for Peace, ActionAid Australia, ADRA, Australian Lutheran World Service, CARE Australia, Caritas Australia, Child Fund Australia, Oxfam Australia, Plan International Australia, Save the Children Australia, World Vision Australia

- ACFID HRG는 AHP 이전 DFAT의 인도적지원 NGO 지원 체계인 “HPA(Humanitarian Partnership Agreement)”에서 인도지원 관련 DFAT와 NGO간의 주요 정책 협의 기구 역할을 수행함. HRG 소속 기관들은 DFAT의 ANCP(Australian NGO Cooperation

Program) 프로그램에서 이미 인증³⁸⁾을 받은 기관들로서 AHP를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가 불필요함.

• 기관선정 방법

-AHP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고 하는 기관들은 총 여섯 종류의 부속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제안서(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Proposal)을 DFAT에 제출함. 별도의 선정위원회(Selection Criteria the Evaluation Committee)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

<표 42> 제출 문서

문서명	주요 내용
기관 개요서(Applicant Details)	기관 개요 및 호주 정부와의 파트너십 경험
선정 기준 대응서(Response to Selection Criteria)	총 5개의 주요 선정 기준에 대한 후보 기관의 경험/역량 기술
인도지원 역량 기술서(Humanitarian Capability Map)	후보 기관의 모든 사업 지역/국가별 역량을 기술(맵핑)
추천서(Referee Information)	(이해상충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추천인/기관의 추천서
서약서(Organization's Certification)	심사, 사업 이행에 대한 이행 서약서

출처: AHP Competitive Grant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up to 6 Humanitarian Reference Group(HRG) member NGOs. 2016

• 참여 선정 기준

-AHP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총 5가지의 주요 기준에 대한 기관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① 긴급 재난/위기 대응(조기 복구 포함), ② 장기/만성 재난/위기 대응(조기 복구 포함), ③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의 인도적 대응 역량 강화, ④ 보호와 참여의 전문성, ⑤ 파트너십, 혁신과 커뮤니케이션 등에 해당하는 역량을 증명해야 함.

-또한, DFAT는 아래 <표 43>과 같이 참여 기관의 인도주의 역량 맵(Humanitarian Capability Map)을 확인하여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 국가와 그 국가에서의 사업/활동 역량을 검증함.

38) 승인은 5개 영역(①거버넌스 및 위기 관리, ②개발 접근 및 관리, ③파트너십과 협력에 대한 접근 방식, ④커뮤니케이션, ⑤회계관리 15개 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함.

〈표 43〉 인도주의 역량 맵(Humanitarian Capability Map) 구성 내용

구분	내용
지역	예시) 태평양 연안,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가	
정부와의 관계	사업 국가 정부로부터 받은 활동 승인 문서 등
사업 지역	세부 사업 지역(Districts, Villages 등)
분야	활동 중인 주요 사업 영역
수혜자	핵심 사업 활동 대상(아동, 여성, 노인 등)
사업국가내 자원	사무소 규모, 비축 물자 등 국가 내 자원
파트너십 현황	긴급대응시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현황(로컬 파트너, 영리 기관 등)
활동 방식	직접 사업 운영, 로컬 파트너를 통한 사업 운영 등 사업 운영 방식
기존 대응 경험	2010년 이후 최근 재난 대응 활동

출처: AHP Competitive Grant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up to 6 Humanitarian Reference Group(HRG) member NGOs. 2016

⑮ 자부담

- 참여단체에 대한 별도 자부담 규정 없음.

⑯ 모니터링 평가방식

- AHP는 사업, 성과목표별 다양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함. AHP 모니터링 및 평가는 학습을 통한 개선, 책무성 강화, 결과 취합, 학습 결과의 적용,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업 결과 소통을 목표로 함. 사업의 성과목표별 모니터링 평가 체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조기 복구

- 개별 참여 기관의 보고서: 개별 기관은 사업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 제안서 내 계획된 지표 달성을 확인함.
- 개별 참여 기관의 평가보고서: 개별 기관은 사업비의 10%를 평가 비용으로 사용 가능함. 이를 통해 사업기관은 종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 파트너기관의 평가 수행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데 지원할 수 있음.

- 통합 성과 취합: Support Unit의 역할로 사업별 결과 정보(성과 및 지표 등)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DFAT에 보고함.
 - 공동 평가: 참여 기관들의 공동대응에 해당. Support Unit의 조정과 관리하에 외부 독립 기관(또는 독립 컨설턴트)이 평가를 수행함. 평가는 인도주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s)을 기반으로 사업의 성과, 학습, 대응의 질을 중심으로 진행됨.
- 태평양 연안 도서 국가들과 동티모르의 지역적인 인도주의 대응 역량 강화와 회복력 강화
 - 개별 참여 기관의 보고서: 사업참여 기관은 매년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이 보고서는 DFAT의 기관 평가 및 국별 평가를 위한 정보로 사용됨.
 - 개별 참여 기관의 평가보고서: 개별 기관은 사업 4년 차에 사업 평가를 실시해야 함. 이 결과는 DFAT가 수행하는 독립 평가 자료로 사용됨. 각 기관은 평가의 독립성 담보를 위해 최소한 1인의 외부 평가인의 참여가 권고됨.
 - 국별 평가: 국가별 대표기관과 Support Unit의 공동 작업으로 년 국별 사업 이행 결과보고서를 작성. 국가별 목표 성과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사업국가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논의 자료로 사용
 - 통합 성과 취합: Support Unit은 매년 국가 및 프로그램 수준에서 핵심 성과 지표 대비 그 결과들을 취합하여 사업의 이행결과를 평가함. 그 결과는 DFAT의 AHP 참여 기관들에 대한 평가 및 사업성과의 평가 도구로 사용됨.
 - 프로그램 평가: 사업 4년차 DFAT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독립 평가를 실시함. 독립 평가는 다음 회기(2022-2027) AHP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됨. 이와 별개로 DFAT는 매년 소규모 평가(Small-scale Evaluation)를 실시함. 이 평가는 젠더(Gender Equality), 장애 포괄(Disability Inclusion) 등 특별 주제 또는 사업이 실제 재난 대응 후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함.
 - DFTA와 NGOs간의 파트너십 강화
 - 재난 대응 선정 기관에 대한 책무성 평가: 총 2회 실시(1년차, 3년차). 대응 기관 선정과 대응 과정에 대한 책무성과 효과성 검증, 효과성 검증의 경우 공동대응의 추가 펀딩에 대한 기여 여부를 판단함.
 - 파트너십 검진(Partnership Health Check): Support Unit 주도로 매년 1회의 파트너십

검진 워크숍을 개최함. AHP 파트너십 원칙(AHP Guiding Partnership Principles)에 근거하여 DFAT와 AHP 참여기관들의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 실시

- 성과 공유회: 개별 대응 후 모든 HRG 회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대응 활동 성과 공유회 개최
- DFAT-HRG 파트너십 숙고 회의: 본 성과목표의 중간평가의 일환으로 모든 HRG 회원기관들이 참여하여 파트너십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함.

⑰ 회계관리방식

- 긴급대응 및 만성 재난 대응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공된 양식 (Consolidated Final Acquittal)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함. 반면, 재난위험경감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년 활동 종료 3개월 전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긴급대응 및 만성 재난 대응 사업은 사업 착수 후 8주 내 통합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최초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 사업예산을 변경할 수 있음.

⑱ 사업 선정심사

- 사업선정: 대응 분야별 기금 지원 과정
 - DFAT는 발생 재난의 성격에 따라 AHP 참여 기관들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 방식은 AHP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계된 세부 사업 △긴급구호(Rapid Response), △장기/만성 재난(Protracted and Slow On-set Response), △재난 위험경감 및 긴급대응 역량강화(Disaster Ready)으로 구분됨.
 - 긴급구호(Rapid Response)
 - 재난 발생 후 외교부 장관의 지원 승인이 결정되면, DFAT는 AHP 참여기관과 AHP Support Unit에게 지원 내용(지원금 규모, 분야, 대상지, 참여 기관의 수, 보고서 규정) 등과 함께 선정 기준, 대응위원회 구성(Response Committee), 의사결정 일정표 등을 공지하고 지원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에게 통합 대응 제안서(Consolidated Response Proposal)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대응위원회의 구성은 아래 <표 44>와 같음.

〈표 44〉 대응 위원회 구성표

참여기관	참여자
AHP 참여 기관	기관별 1인
AHP Support Unit	디렉터 1인
Humanitarian Reference Group	대표 1인
외부 전문가(DFAT 지정)	1인

출처: DFAT,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2016

- 이후 AHP SU는 72시간 내 대응위원회를 소집하여 DFAT에서 공지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AHP 6개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역량 맵(Capability Map), 이전 활동의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원 기관을 선정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AHP SU는 대응위원회의 선정 결과, 제안서 개요 및 통합 대응 제안서를 96시간 내 DFAT에 제출함.
 - DFAT는 AHP SU로부터 수령한 통합대응제안서를 검토하고 8일 이내 승인을 내리거나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 요청의 경우 해당 기관은 24시간 내 관련 정보를 DFAT에게 제공해야 함. 최종 지원 결정이 승인되면, DFAT는 AHP SU로부터 송장(Invoice)를 받고 지정된 금액을 입금 처리함. Support Unit은 그 금액을 각 해당 기관에 지원하면서 사업이 실시됨.
- 장기/만성 재난(Protracted and Slow On-set Response)
 - 장기/만성 재난 대응 결정을 위해 DFAT는 HRG 회원기관들과 주요 재난에 대한 현황 및 정부의 대응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 실시. 이후 재난 대응에 대한 외교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DFAT는 AHP 참여기관과 AHP Support Unit에게 지원 내용(지원금 규모, 분야, 대상지, 참여 기관의 수, 보고서 규정) 등과 함께 선정 기준, 기술평가위원회(Technical Assessment Committee), 의사결정 일정표 등을 공지하고 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에게 통합 대응 제안서(Consolidated Response Proposal)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은 아래 〈표 45〉와 같음.

〈표 45〉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표

참여기관	참여자
AHP 참여 기관	대표 1인
DFAT	대표 1인
외부 전문가(DFAT 지정)	1인~2인

출처: DFAT,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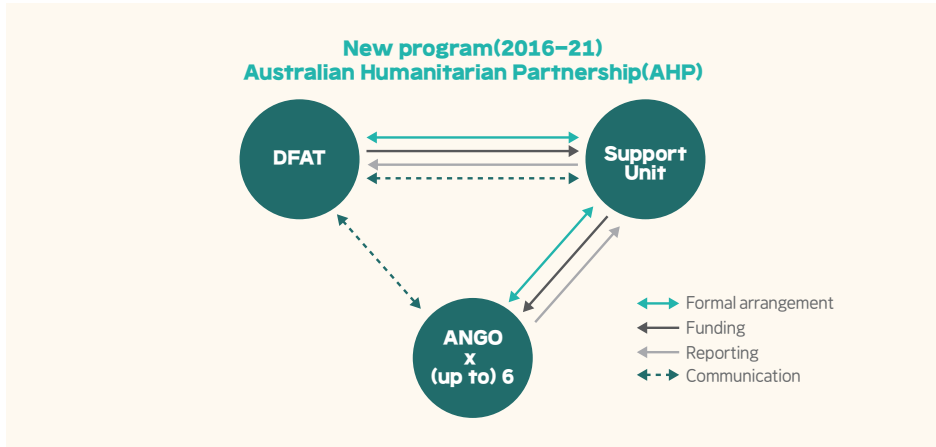
- 이후 AHP SU는 14일 이내 기술평가위원회(Technical Assessment Committee)를 소집하여 DFAT에서 공지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AHP 6개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역량 맵(Capability Map), 이전 활동의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원 기관을 선정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AHP SU는 기술평가위원회의 선정 결과, 제안서 개요 및 통합 대응 제안서를 2일 이내에 DFAT에 제출함.
- DFAT는 AHP SU로부터 수령한 통합대응제안서를 검토하고 2일 이내 승인을 내리거나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 요청의 경우 해당 기관은 2일 이내 요청 정보를 DFAT에게 제공해야 함. 최종 지원 결정이 승인되면, DFAT는 AHP SU로부터 송장(Invoice)을 받고 지정된 금액을 입금 처리함. Support Unit은 그 금액을 각 해당 기관에 지원하면서 사업이 실시됨.
- 재난위험경감 및 긴급대응 역량 강화(Disaster Ready)
 - 사업 국가 5개국(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동티모르, 솔로몬군도 등)을 선정하고 AHP SU의 주관아래 AHP 참여 6개 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본 사업을 위한 프레임워크(AHP Disaster READY Overarching Framework, 4,5년)를 수립함.
 -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AHP 참여기관, AHP SU 및 DFAT 국가사무소가 협력하여 국별 사업계획(Country Plan, 1년)을 수립하게 됨. 사업계획에는 국별 상황, 공동 성과 목표, 거버넌스 혹은 조정 관련 계획을 포함함. 이 국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기관(AHP NGOs)은 세부 사업계획(NGO Activity Plans, 1년)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됨.

⑨ 사업 수행 거버넌스

- AHP 사업의 거버넌스는 DFAT, HRG, AHP 참여기관 그리고 AHP SU으로 구성됨. 거버넌스 체계의 DFAT와 HRG의 파트너십과 HRG 회원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구축됨. 이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AHP는 정책적 수준 및 사업수행 수준에서의 파트너십 회의를 정례화함.
 - 정책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AHP는 파트너기관 고위 관계자 미팅을 정례화함. 먼저 HRG 회원기관의 대표들과 DFAT의 관계부서장(First Assistant Secretary)이 참석하는 연례 인도주의 정책 회의를 실시함. 다음으로 관리자 수준(Humanitarian Director)의 정례 미팅을 분기별로 실시함.
 - 사업 수행 수준에서 DFAT를 포함한 각 참여 기관은 조정 및 협력, 정보교환과 숙고를 위해 정기/비정기 회의를 진행함. 회의의 종류는 ① 재난대응 성과 공유회, ② 분기별 협력 강화 미팅, ③ 비정기적 전화회의 등을 포함한다.
- 아래 <그림 13>은 AHP 사업 수행 체계를 도식화 한 것으로 핵심 참여 주체인 DFAT, 참여 기관 그리고 AHP SU 간 계약 체결, 자금지원,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확인할 수 있음. 주체별 AHP 사업내 역할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DFAT는 HRG 와의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략적 대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임을 인지함. AHP SU과의 계약 관리와 함께 자금지원을 받는 기관들에게 명확한 요구 조건들을 제공할 책임을 짐. DFAT는 재난대응기금 승인을 참여 기관들에게 공지하며, 이 기금이 정해진 기간 내 전달 될 수 있도록 보장함.
 - 참여기관은 다양한 파트너십 및 성과 공유 및 숙고 활동에 참여함. 또한, 참여 기관들은 대응위원회(Response Committee)에 참여하여 동료 검토를 실시함. 사업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제 인도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책무성을 증진함. 정해진 문서 양식에 사업 성과를 보고함.
 - Support Unit는 AHP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 기관들을 지원하며 사업운영을 위한 일상적 업무 진행. 재난대응 실시 관리 즉, 각종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초빙, 의사결정 문서화, 참여 기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실시하며, 공동 보고서 발간 및 관련 문서 공유를 통한 숙고 및 학습 증진을 촉진함. 이와 더불어 AHP SU는 DFAT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함께 홍보용 자료를 생산하여 사업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그림 13> AHP 참여 주체별 관계도



출처: DFAT, Investment design document for AHP, 2016.

⑳ 정부 내 담당 기관

- 기관: 인도주의, NGOs와 파트너십부(Humanitarian, NGOs and Partnership Division)

5. 소결

1) 기초조사 대상 15개국

(1) 정리

-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시민사회 협력 비중
 - 15개국 중 4개 국가에서 전체 인도적 지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시민사회협력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절반 가까운 국가들이 시민사회협력을 통하여 전체 인도적 지원의 약 40%를 집행하고 있음. 반면 한국의 경우 전체 인도적 지원 규모의 약 7%가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민사회협력이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여줌.

- 프로그램 기간
 - 15개국은 공통적으로 긴급하고 단기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긴급구호를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 또는 만성위기대응과 구분하여 사업기간을 달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단년, 다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되고 있음. 절반 이상 국가들은 4년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파트너 선정
 -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여국들은 대부분 파트너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단체심사를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사업 이행 경험, 사업 예산 규모 확보, 인도적 지원 분야 전문성, 폭넓은 파트너십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 대상과 자격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음.

- 운영방식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주무부처 및 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직접 관리운영과 위탁 관리 운영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수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거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기관 자격을 사전에 선발하여 풀(Pool)을 구성하고 있음.

- 자부담 비율
 - 일반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전체적으로 일반 개발협력 사업과 비교하여 낮은 편임.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수준임. 독일의 경우 개발사업 일반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자부담을 25%로 설정해 놓았지만,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 10%까지 완화 가능함. 단기 긴급구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음.

- 인도적 지원 생태계 조성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국과 노르웨이가 예외적으로 단체 자체를 지원하는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운영 중임. 이는 일반적으로 소수 대형 단체들만이 인도적 지원사업을 이행하는 구조에서 중소기업도 인도적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함.

(2) 시사점

-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시민사회 협력 비중
 - 한국의 경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시민사회협력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임.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적극적이고 전문성과 비교우위를 갖춘 CSO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시민사회 간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기간
 -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호부터 만성재난 대응까지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매우 상이한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음.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사업 성격과 사업 대상, 사업 지역의 특성 등 현지 맥락을 잘 반영하여 단년사업과, 다년사업, 또는 3년 이상 장기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파트너 선정
 - 인도적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현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심사와 더불어 단체심사를 기반으로 사전에 파트너를 선정하거나 파트너기관 풀(Pool)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을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부담 비율
 - 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부담 비율을 주요 공여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인도적 지원 생태계 조성
 - 인도적 지원사업을 이행하는 파트너 풀(pool)을 단체의 경험, 예산규모, 전문성 등의 조건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분야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CSO도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인도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심사를 기반으로 한 별도 트랙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2) 심층조사 대상 3개국

(1) 정리

- 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 및 정책 일관성
 - 3개국 정부는 자국의 중장기적인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이행전략을 기반으로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의 방향성, 우선순위 그리고 전략 분야를 분명하게 제시함. 아울러 정책과 이행 전략에 따라 파트너와의 협력형태 및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구성함으로써 정책일관성을 높임.
 - 특히 스웨덴은 UN과 EU의 인도적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지원 국가들을 1차 선정하고 독자적으로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심층 분석(Humanitarian Crisis Analysis, HCA)을 실시하여 인도적 수요조사(HNO) 및 인도적 대응 계획(HRP)을 수립함.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우선순위와 계획한 활동에 부합 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파트너기관을 선정함.
- 시민사회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 3개국 정부는 오랜 현장 경험, 현지 파트너 구축, 근접성 등 시민사회단체가 가진 비교우위를 인정하며,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조함. 시민사회의 비교우위를 인정하는 배경에는 인도적 지원 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엄격한 제도, 재정, 역량, 경험 등 다층적인 조건을 만

족하는 소수 단체들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전략적 파트너십

-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정부가 시민사회의 사업수행 역량, 경험,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년도 포괄적 협력을 통하여 파트너단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스웨덴과 호주는 앞서 설명한 시민사회의 비교우위 인정을 전제로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상이한 사업운영 방식

- 인도적 지원은 긴급재난, 만성재난, 난민 및 이주민, 재난 예방 등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대응방식이 상이한 점을 반영하여 3개국은 인도적 지원 대상 재난의 성격과 활동의 특성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사업 기간 및 사업 기간 연장, 자부담 비율, 자금 배분 및 사업변경 승인 메커니즘, 평가 여부 등에 대한 조건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

○ 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 캐나다와 호주 정부는 CSO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성과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체 또는 사업수행 FO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협의체 및 사업수행 FO의 권한과 책임의 범주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지원 단체 선정,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기금 운영 전반을 책임짐.

○ 지원 단체 선정 요건과 지원 자격

- 전략적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스웨덴과 호주는 물론, 캐나다 역시 지원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조직의 역량, 사업 규모, 재무상태, 분야 전문성, 경험과 다양한 층위의 파트너십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조건을 제시함. 특징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기본적 요건은 해당 기관의 사업이 정부의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는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캐나다는 국제 인도적 지원 행동 강령 준수 여부, UN OCHA 클러스터를 통한 협력 경험 여부 등을 조건에 포함하고 있음.

○ 모니터링 및 평가

- 인도적 지원의 특성상 모니터링과 평가의 초점이 개별사업보다는 다년간 협약 프로그램을 이행한 기관의 수행 역량(스웨덴), 약정 기수별 기금 운영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캐나다) 등에 맞춰져 있음.

(2) 시사점

○ 정부 인도적 지원정책과 연계되는 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구성

-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인도적 위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한국의 비교우위를 근거로 한국 인도적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꾀해야 함.

○ 한국적 맥락 고려하여 사업에서의 CSO 자율성 반영

- 다른 한편, 심층 분석 대상 3개국과 비교하여 인도적 지원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의 맥락을 고려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대상, 분야, 인도적 지원방식 등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함.

○ 투 트랙 방식의 사업운영 통한 효과성 제고

- 대규모 시민사회단체와 중소규모 시민사회단체의 특성과 강점을 각각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정부-시민사회가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위의 두 가지 방안을 접목하여 투 트랙(Two-Track)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

-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전문성을 반영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과 중소규모의 시민사회단체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찾아서 기여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운영을 위한 FO제도 도입

-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는 파트너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한 파트너단체에 대해서 자율성과 협의체/운영 FO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현지 맥

락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개발 및 인도적 지원 협력 정책에서 강조한 혁신성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반영할 수 있음.

-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시 CSO 자율성 증대
 - UN OCHA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시, 현장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CSOs의 사업 이행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및 단기성 사업구성
 - 난민, DRR, 만성위기 대응과 같은 인도적 지원 사업의 중장기적 안정성과 긴급구호 등 단기적인 신속성 등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할 수 있음.

- 한국 시민사회 특성 고려한 사업 매칭 비율 고려
 - 시민사회의 매칭 비율과 관련해 우리나라 시민사회 지형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에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긴급구호의 경우 매칭 비율을 낮추고 사업선정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인도적 지원사업 특성 고려한 M&E 실행
 - 인도적 지원 모니터링과 평가는 파트너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인도적 지원사업의 현지 맥락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근거로 해야 함.

IV. KOICA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개선방안 제안

1. 제언 도출을 위한 연구 결과의 시사점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역사
 -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음. 2010년대 중반 이후 변화하는 국제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정부는 2015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19)’, 2019년 ‘한국 ODA의 인도적 지원전략’ 및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등의 정책/전략문서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 한국 시민사회는 1990년대 르완다 내전(1994), 2000년대 아프간 전쟁(2001), 이라크 전쟁(2003), 서남아 쓰나미(2004), 아이티 지진(2010) 및 2010년대 필리핀 태풍(2013), 네팔 지진(2015) 등 지구촌의 인도적 위기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자체적으로 및 정부와의 협력으로 인도적 지원을 실행해옴.

-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의 성과
 -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2010년대 이전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은 2012년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 한국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의 제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짐. 구체적으로는 한국 CSO의 인도적 지원사업의 규모 증대, 조

직 및 인적 역량 강화, 정책 및 규범 형성 참여, 상호학습 및 동료/연대 공간 조성, 국제 인도적 지원 협력 메커니즘 참여기회 확대 및 다자기구 협력 증대 등의 성과를 달성했고, 한국 CSO의 인도적 지원사업의 생태계 조성 및 안정화에 기여했음.

〈표 46〉 2012~2019 8년 사업성과 요약

구분	내용
이재민들에게 인도적 서비스 제공	• 2012~2020년 9년간 298억 원, 91개 CSO, 36개국, 190개 사업 실행, 약 195만 명 지원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활동 규모 확대 및 분야확장	• 2011년 22개 CSO 100억 규모 → 2020년 약 49개 CSO가 234억 규모의 인도적 지원실행 • 긴급구호 중심에서 조기복구, 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분쟁하성폭력 등 사업 분야 다양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조직 및 인력 역량 강화	• 2012년 CSO 중 인도적 지원 전담부서 존재 CSO 2개 → 2020년 5개 • 2012~2019년에 제공된 교육으로 51회, 1,761명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정책 형성에 기여	• 2015년 인도적 지원 전략 수립, 2019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작성과정에서 본 사업참여 CSO 정책 애드보커시 시행
국제적 인도적 지원 규범형성에 기여	• 2019년 Global Refugee Forum에서 본 사업참여 CSO들 주축으로 공동공약(Joint Pledge)작성
상호학습 및 동료/연대공간 조성	•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내 인도적 지원 그룹 형성 및 인도적 지원 분야 전문 강사진 활동으로 생태계 활성화 기여
국제 인도적 지원 협력 메커니즘 참여기회 확대 및 다자기구 협력 증대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참여 3개 단체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협력 메커니즘 참여

- 동 사업이 KOICA로 이관된 이후의 성과는 하기와 같음.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전체 예산 확대에 따른 개별사업 규모 확대 및 참여하는 신규 단체수 증대
 -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coverage) 확대
 - 현장에서의 개별 사업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 증대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KOICA 본부-현장사무소의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
 - 다년도 사업 신규 도입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내 추가 전용예산 편성(코로나-19 대응)
 - 보다 긴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 인도적 분야 민간협력사업 참여 CSO의 제도개선 의견

- 사업참여 CSO들이 KOICA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시한 다음의 내용을 향후 제도적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전체 사업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업 상한액 규모 증대, 사업비 일괄 지급 및 KOICA 지원금 비율 확대가 필요함.
 - 소통, 행정 유연성 증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효과성 증대를 위한 행정 운영 개선이 필요함.
 - 사업유형 구분 및 사업 분야 다변화, 사업비 배분과 사업변경 방식 및 사업 기간 조정 등이 필요함.
 - 사업 운영에 있어 신규단체와 중소기업체를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 적용이 필요함.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운영 기관인 KCOC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ECD DAC 15개 공여국 기본조사

- 15개국의 인도적 지원에서 시민사회 협력 비중은 평균 38%였으며 한국보다 ODA 규모 및 인도적 지원 규모가 작은 DAC 공여국을 모두 포함한 DAC 평균은 29%임. 가장 높은 국가인 프랑스(62%)에서 한국을 제외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일본도 13%로 한국(6.6%)의 시민사회 협력 비중이 여타 공여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음. 이같이 타 공여국에 비해 낮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 분야의 시민사회 협력 비중을 증대하여 정부-시민사회 간 상호보완성 증대에 기반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93%)가 다년 사업을 운용 중이며 긴급구호 사업만 1년 이하 단위로 운용되고 있음. 9개국(60%)은 만성위기대응을 위해 4년 이상 장기사업을 운용 중인 점을 참고하여 한국도 사업 기간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타 공여국의 73%는 단체심사 기반 사전 파트너 선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46%는 파트너기관 풀을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한국도 사업에 참여하는 CSO 선정 방식을 한국 CSO가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을 주요 공여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인도적 지원 분야의 시민사회 협력에 다양한 단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트랙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5개 공여국 중 60%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FO를 통하여 사업을 시민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3개국 심층 사례조사
- 정부는 중장기적인 인도적 지원 정책/전략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우선순위,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을 구성해야 함.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역량이 있고 경험이 많은 대규모 CSO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경험이 적은 신생 CSO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투트랙(Two-Track) 형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스웨덴, 캐나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전문적인 인도적 지원 CSO들이 참여하는 전략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적 지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및 단기적 대응 등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민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운영 FO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단체 선정,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기금운용 전반에 걸친 권한위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CSO의 자율성을 증대하여 국제기구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있어 인도적 지원 현장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중 단기간의 긴급구호사업은 CSO 자부담 매칭 비율을 낮추고 사업선정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상기 내용에서 정리된 한국의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역사와 성과 및 타 공여국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는 하기와 같이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을 제안하는 바임.
- 동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방향에 대해 정립을 제안하는 바이며, 세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CSO의 참여와 인도적지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투 트랙(Two-Track)³⁹⁾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연구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화되는 등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KOICA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예산 증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사회가 가진 오랜 현장 경험과 지역사회 기반의 파트너십 및 사업수행 적시성, 신속성, 현장 대응력 등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과 상호보완적 역할로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정부-시민사회 간의 시너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 인도적 지원 규모에서 시민사회협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15개국의 타 공여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각국의 인도적 지원 ODA 규모에서 시민사회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3.7%(2019년 기준)을 보임. 시민사회협력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50% 이상을 상회하기도 하나 그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일본도 각각 13.8%, 14.2%로 우리나라의 인도적지원에서 시민사회협력이 차지하는 수준은 월등히 낮다는 것을 보여줌.
-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적극적이고 전문성과 비교우위를 갖춘 CSO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에 정부와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CSO들을 동 사업에 참여시켜 위기는 여전하나 국제사회의 주목받지 못하는 ‘잊혀진 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역량을 쌓고 경험과 정보들이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9) <부록 30>KOICA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진의 제안 내용, 본보고서 164쪽 참고

- 기존과 같은 예산 규모에서는 동 사업에 기 참여한 단체들이 사업수행 경험을 통하여 쌓인 역량(learning-by-doing)과 어느 정도 구축된 조직적인 체계로 인하여, 자체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CSO들의 동 사업으로의 신규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함.
- 예산 확대를 통하여 기존의 역량이 쌓인 단체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인도적 수요에 대한 지원범위(coverage)를 넓히고, 자체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CSO의 신규 참여 촉진이 필요함. 사업수행 경험을 통한 역량과 조직적인 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수행단체로 성장시켜 장기적인 방향에서 인도적 지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들이 가진 현장에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인도적 위기의 수요에 함께 대응하도록 함.

1)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추진 방향 제안

(1) 사업명

- 인도적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Humanitarian Partnership Program, HPP)

(2) 사업목적과 목표

-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분쟁, 재난 등으로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한 지구촌 이웃들의 '생명보호, 고통 경감, 존엄성 유지, 위기 예방 및 대응태세 강화'라는 정부 인도적 지원전략 상의 비전과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목적인 '인도주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5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정부의 안정적 자금지원, 중간지원단체 활용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효과적 제도운영
 - 시민사회의 사업수행 적시성, 신속성, 현장 대응력을 활용한 효과적 사업수행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기반한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역량 증대
 -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분야 국제적 동반관계 증대
 - 인도적 지원 분야 한국 시민사회 생태계 활성화

(3) 사업 방향

- 상위법/정책/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 정립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가 제시하는 내용 중 '인도주의를 실현하고'를 실현하는 사업임. 또한, 정부가 2016년 발표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2019년 발표한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 및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에 법적, 정책적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임. 이에 본 사업은 상위법, 정책 및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본 사업의 방향이 중요하게 고려할 정책적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정부-민간 간 협력 채널 구축(2016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민간의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2016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내실화(2019년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
 - 국제기구-국내 NGO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2019년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
 - 재난 대응, 재건 복구, 재난 예방, 평화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인도지원 사업(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인도주의-개발-평화 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등 취약층을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에서의 협력 확대(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정부-시민사회 간 상호보완성 증대를 통한 파트너십 효과성 제고
- 국제사회는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의 중요 요인을 각자의 특성에 기반한 상호보완성이라고 규정함(Bruyn and Huib, 2015).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다음의 포괄적 상호보완성 원칙에 의거해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포괄적 상호보완(Extensive Complementarity)⁴⁰원칙 적용
 - 정부, KOICA의 인도적 지원 전략의 대상 지역과 타겟그룹, 분야를 시민사회와 각자

40)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 가진 특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궁극적인 국제개발협력 목표달성에 기여함. 시민사회는 정부가 담당하지 않는(혹은 못 하는) 지역, 그룹,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목표에 기여하는 것

특성에 맞게 역할 분담하여 구분하고 결과적으로 포괄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출함.

예) 일반지원금의 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특별지원금의 조기복구사업, 분쟁하성폭력 및 긴급구호는 중점협력국, 정부의 중점분야 여부에 관계없이 CSO의 발굴에 따라 시행함.

- 이후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전략이 구체화 될 경우, 정부 정책/전략과의 부합성이 강조되는 다음과 같은 집중적 상호보완(Intensive Complementarity)⁴¹⁾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음.
 -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및 KOICA의 인도적 지원 사업 전략과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과 타깃 그룹 및 분야를 설정하고 정부 정책 및 사업과의 직접적 시너지 효과를 높임.
- 외교부 - KOICA - KCOC 간 사업 운영 거버넌스 체계의 명확성 강화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정책적 측면은 외교부가 사업 운영 측면은 KOICA가 사업 관리 측면은 KCOC가 담당하고 있음.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자 간 사업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정교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외교부, KOICA, KCOC는 다음의 내용을 이행해야 함.
 - 외교부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인도적 지원 정책/전략 측면에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및 위상을 분명히 규정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라는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수립 및 운영과 예산 배정을 해야 함.
 - KOICA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이 가지는 성격과 시민사회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사업을 운영해야 함. 특별히 현재 인도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CSO들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 효과성 제고, 생태계 조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능한 환경조성 등이라는 점들을 사업 운영에 중요하게 적용해야 함.
 - KCOC는 외교부-KOICA 등 정부 기관의 정책 방향 및 내용을 사업수행 CSO들과 잘 공유하고 양자가 정책적, 사업적 측면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함. 또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또는 참여를 준비하는 한국 CSO들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효과성 제고, 생태계 조성, 역량 강화, 국제사

41) 정부와 시민사회는 특정 지역, 분야 등의 영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함. 시민사회가 가지는 강점을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대외정책,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국제 과제 등과 시민사회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직접 연계함.

회와 협력 가능한 환경조성,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함.

3. 이해관계자별 향후 과제

1) 정부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 구성
 -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목적/명분/이행 원칙을 명확히 제시 해야 함. 이를 위해서 기존의 관련 정책 문서인 ‘2019 인도적 지원전략, 2019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인도적 지원정책 포함) 및 대외정책과 인도적 지원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간 전략적 연계 방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 이행방안 구성
 - 중장기적 사업규모, 내용(분야, 주제, 자부담 비율, 참여자격, 선발 등), 성과관리 및 M&E 방식 등을 구성해야 함.
 - 운영방식으로서의 FO제도를 한국적으로 맥락화하여 적용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정책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예산 증대
 - 점진적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시민사회협력 비중 확대를 통해 참여단체 수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및 세분화 등 동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대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2) 운영기관(FO)

- FO로서의 사업 위탁운영 기관의 역할의 활성화
 - 일반적인 개발협력 사업과 달리 인도적 지원사업은 현지 정세, 정부 정책, 기후 및 복잡

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상황변화가 자주 일어나고 그 내용도 복잡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특성을 가짐.

- 이에 호주, 캐나다 및 기타 주요 공여국들은 인도적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CSO와의 파트너십을 효율 및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CSO 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 FO)에게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활용함. 전문적인 FO를 통한 사업위탁 운영방식을 채택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증대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함.

○ 사업수행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 정례적 협의 제도화

- KOICA-운영기관-참여 CSO 대표단체 간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연 2회 개최
- 사업공모, 배분, 보고, 평가 등 사업 및 제도 운영에 대해 협의
- 정책, 사업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을 연 2회 이상 개최
- (외교부)- KOICA- 운영기관 -참여 CSO 간 사업 관련 소통의 장을 개최하여 정부 정책 변화 및 인도적 지원 글로벌 동향 공유,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 관련 시민사회 의견 청취

○ 사업참여 CSO의 조직 역량 강화, 참여 인력 역량 강화라는 이원적 접근

- 사업참여 CSO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 역량 강화 시행
- 인도적 지원전략 구성
- 인도적 지원 분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전략 및 방법론
-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 평가
- 기타 조직, 사업전략 및 정책적 측면의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 사업 경험이 부족한 신생 단체에 대한 기초적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 참여 CSO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량 강화 시행
 - 분야/주제별 역량 강화
 - 현지인 인력의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사업 경험이 부족한 활동가 역량 강화

○ 한국 사회 내 홍보 활성화

- 정부 기관 대상 사업성과 공유

- 시민사회 대상 사업성과 공유
- SNS 통한 홍보

- 성과 체계화를 위한 노력 전개
- 인도적 지원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지표개발 및 적용
- 사업참여 CSO들의 성과를 정리해 논문발표 및 게재 통해 성과 고도화

- 학계/전문가그룹 연계
- 학계 및 분야, 지역, 기술전문가 참여 통로 구성해 사업 전문성 제고

3) 시민사회(CSO)

- 2012~2021년 사업 수행 경험 기반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
- 현재의 7대 성과를 구체화 및 세분화하여 근거에 기반한 사업성과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한 시민사회 전체 및 참여 개별CSO 자체의 변화를 구분하여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 작업을 통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참여단체 교육 및 성과 측정에 활용하여 근거기반 사업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 한국형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운영방식으로서의 FO연구 및 적용
- 기본 연구 기반으로 한국형 FO 제도를 정부/KOICA와 협력하여 (공동)연구하여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마련함.

- 한국 사회 주요 구성원 대상 사업 필요성 제시
- 정부, 국회, 학계, 시민사회, 기업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의 필요성을 세계적 추세와 수요,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위상 그리고 성과를 근거로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책 애드보커시, 캠페인, 교육활동을 전개 해야 함.

참고문헌 및 부록

1. 국내 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 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7(1).
- 관계부처 합동. (2010) 제 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제 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8(1).
- 관계부처 합동. (2010) 해외긴급구호 업무 표준 매뉴얼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 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2(1).
- 관계부처 합동. (2019a)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32(3).
- 관계부처 합동. (2019b) 우리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안), 제 3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33(3).
- 관계부처 합동. (2020)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 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35(1).
- 국무조정실. (2005)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002, 2003, 2005, 2011) 총회 자료. 서울: KCOC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012-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사업결과보고서. 서울: KCOC.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013, 2015, 2017, 2019)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서울: KCOC.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014, 2016)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실행계획. 서울: KCOC.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018, 2021)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사업 수행계획서. 서울: KCOC.
- 권구순, 이재원, 김성규 (2019). 주요 공여국의 시민사회단체 협력사업 양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태연구, 26(1), pp. 127-160.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2015) 해외긴급구호 대책안
- 외교부. (200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 07-635호.
- 외교부. (2009)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HD) 가입. 보도자료 09-392호
- 외교부. (2010)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
- 외교부. (201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발협력 기본정책
- 외교부. (2018)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 외교부. (2020) 5차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 한국국제협력단(KOICA). (1994, 2002, 2003, 2005, 2008, 2010) KOICA 연보.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08) 1차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6) 해외긴급구호의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관련 주요 공여국 사례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7) 프로젝트 사업의 취약계층 포괄적 접근 현황평가 및 강화방안 연구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재광, 손혁상, 김성규, 신재은, (2019).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 홍지영. (2016) 한국의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정책의 거버넌스 구축과정과 그 복잡요인, 25(1), 한국정치연구, pp. 23-50.

2. 해외 문헌

- AECID (2019) Spanish Cooperation's Humanitarian Action Strategy 2019-2026. and humanitarian action. Copenhagen K: DANIDA.
-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2019) Annual Progress Update 2018, AHP support Unit. (<https://www.australianhumanitarianpartnership.org/ahp-and-disaster-reports>)
-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2020) Annual Progress Update 2019, AHP support Unit. (<https://www.australianhumanitarianpartnership.org/ahp-and-disaster-reports>)

- annual-reports)
- Bengo,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9) Guiding framework funding of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MAP) with private executing agencies.
- Björn Ternström Ingela Ternström Anne Davies (2019), Evaluation of Sida Humanitarian Method Partners, Sida Decentralized Evaluation, 2019:12, SIDA Civil Society, Stockholm: Sida
- DANIDA. 2014. Policy for Danish Support to Civil Society. Copenhagen K: DANIDA
- DANIDA. 2017. Danish Support to Civil Society: A Monitoring and Evaluation
- DANIDA. 2017. The world 2030: Denmark's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2012) Operational Plan 2012-2015, DFID Conflict, Humanitarian and Security Department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2009). Eliminating World Poverty: Building our Common Futur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SBN: 978-10-176562-6.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2016) Civil Society Partnership Review, London: DFID.
- DFAT (2014) Australian aid: promoting prosperity, reducing poverty, enhancing stability, June 2014. Canberra: DFAT
- DFAT (2015), DFAT and NGOs: Effective Development Partners, Canberra: DFAT
- DFAT (2014) Making Performance Count: enhancing the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Australian aid, DFAT, (<https://www.dfat.gov.au/about-us/publications/Pages/making-performance-count-enhancing-the-accountability-and-effectiveness-of-australian-aid>)
- DFAT (2016)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AH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HP - SOP 2016/00, DFAT, (<https://www.dfat.gov.au/about-us/business-opportunities/Pages/australian-humanitarian-partnership-call-for-proposals>)
- DFAT (2016)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Competitive Grant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up to 6 Humanitarian Reference Group (HRG) member NGOs,
- DFAT (2016)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A partnership between DFAT and

- Australian NGOs, DFAT. (<https://www.dfat.gov.au/about-us/business-opportunities/Pages/australian-humanitarian-partnership-call-for-proposals>)
- DFAT (2016) Humanitarian Strategy, Canberra: DFAT (<https://www.dfat.gov.au/about-us/publications/Pages/humanitarian-strategy>)
- DFAT (2018) Australi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atistical Summary, 2017-18. Canberra: DFAT.
- DFAT (2019) Australi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atistical Summary, 2018-19. Canberra: DFAT.
- DFAT (2019) Australian Aid Budget Summary 2019-20. Canberra: DFAT.
- DFAT (2020) Annual Report, 2019-2020. Canberra: DFAT.
- EU (2015)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 EU (2020)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FDFA)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2020) Terms of Reference 'External review of the Swiss Humanitarian Aid Unit(SHA)'. Berne: FDFAS
-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FDFA),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2017) Independent Evaluation of SDC Partnerships with Swiss NGOs
- Federal Foreign Office (2012) Strategy of the Federal Foreign Offic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broad, Berlin: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 Federal Foreign Office (2019) Federal Foreign Office Strategy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broad. Berlin: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0) Strategy on Transi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Overcoming crises-strengthening resilience-creating new prospects. Berli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ivision LK3.
- Framework to Demonstrate Results. Copenhagen K: DANIDA
-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2020) (<https://www.ghdinitiative.org/ghd/gns/principles-good-practice-of-ghd/principles-good-practice-ghd.html>)
- Government of Sweden (2017)"Policy Framework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 Humanitarian Assistance” Government Communication, 2016/17, 60 pp. 42-45.
- Government of Sweden (2019) OECD DAC Peer Review 2019, Memorandum of Sweden, 2018
- Government of Sweden (2021) (<https://www.government.se/>)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1) Development Cooperation: Dutch Policy, Emergency aid and Humanitarian diplomacy (<https://www.government.nl/topics/development-cooperation/the-development-policy-of-the-netherlands>)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1) Dutch Policy: Refugees and Migration. (<https://www.government.nl/topics/development-cooperation/the-development-policy-of-the-netherlands/refugees-and-migration>)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1) Grant Programmes: Women, Peace and Security Grant (<https://www.government.nl/topics/grant-programmes/women-peace-and-security-grant>)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1) List of signatories to the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6-2019 (<https://www.government.nl/topics/grant-programmes/documents/publications/2016/05/15/list-of-signatories-to-the-national-action-plan-on-women-peace-and-security-2016-2019>)
- Grand Bargain (2020)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grand-bargain-official-website/grand-bargain-signatories>)
- Huib Huyse, Tome De Bruyn(2015). New Trends in Governmental Funding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 Comparative Study of 9 OECD-DAC Donors. HIVA-KU Leuven - Research Institute for Work and Society.
- Humanitarian Coalition (2019) CHAF Guidelines 3.1
- Humanitarian Coalition. (2016) Financial Statement of Humanitarian Coalition 2016-2019
- International Assistance Evaluation Division (PRA) (2019) Global Affairs Canada. Evalu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Program
-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2013) Global Affairs Canada. Funding application guidelines for NGOs.
- Johanna Lindström, Viktoria Hildenwall, Stefan Dahlgren (2014) Final Report “Organisational

Assessments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CSO) in view of possible qualification as Sida's framework and/or strategic partner

MFA (2011) Humanitarian Aid Policy of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jp/policy/emergency/pdfs/aid_policy_japan.pdf)

MFA (2017) Japan's Humanitarian Assist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jp/files/000357360.pdf>)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2013) Master Plan of the Spanish Cooperation 2013/2016.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4) Strategy on government-civil society cooperation in post-2015 development poli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DANIDA (2009). Strategy for Danish humanitarian action 2010-2015: Addressing vulnerability, climate change and protection challenges. Copenhagen K: DANID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18) Guidelines for programmes & Projects ver1. Copenhagen K: M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19) Guidelines for programmes & Projects ver2, Copenhagen K: M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2021) Humanitarian Aid. (<https://www.dutchdevelopmentresults.nl/theme/humanitarian-aid>)

Norad (2009) Principles for Norad's support to civil society in the south. Oslo: Norad.

Norad (2018) Norad's support to Civil Society, Oslo: Norad.

OCED (2006) DAC Peer Review of the United Kingdom, The OECD Journal of development, 7(3), Paris: OECD. ISSN: 1816-8124

OCED (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Kingdom 2014,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Enabling effective development, OECD Publishing, Paris: OECD.

OCED (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Denmark 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OECD.

OCED (2007)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Peer Review of Spain.

- OECD (2011)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Spain. ISBN 978-92-64-11712-9.
- OECD (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Spain 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OECD.
- OECD (2018)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of Canada. Memorandum of Canada.
- OECD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Sweden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OECD.
- OECD (2019) The DAC's ma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Extract from: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Sweden 2019, Paris: OECD. (https://www.oecdilibrary.org/developmen/oecd-development-co-operation-peer-reviews-sweden-2019_9f83244b-en)
- OECD (2019)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Norway 2019,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OECD: Paris.
- OECD (2020)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Japan 2020,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OECD.
- OECD (2020)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Sweden 2019,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0. "Denmark",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Paris: OECD.
- OpenAid (2021) (<https://openaid.se/en/activities/compare?year=2019§or=720&agency=SE-6>) "organisations" 2012-14 (Reference number 2011-0001308), SIPU
-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07) Multi-donor support to civil society and engaging with 'non-traditional' civil society, London: ODI
-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1997) Spanish Aid Policies for Poverty Reduction. London: ODI.
-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97) Eliminating World Poverty: A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 Sida (2017) Strategy for Sweden's humanitarian aid provided through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2017-2020, Sida) (<https://www.government.se/country-and-regional-strategies/2017/03/strategy-for-swedens->

humanitarian-aid-providedthrough-the-swedish-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agency-sida-20172020/)

Sida (2017), Strategy for support via Swedis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period 2016-2022, Stockhol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Sweden

Sida (2018) Guiding Principles of Rapid Response Mechanism, Sida, (<https://ihs.smc.global/documents/E4C13304-845B-4E70-AD54-6017931B5827/Rapid%20Response%20Mechanism%20-%20Sida%20Guiding%20principles.pdf>)

Sida (2019) Guiding Principles for Sida's Engagement with and Support to Strategic Development Associates (2015) Review of the DFAT-NGO Humanitarian Partnership Agreement 2011-2016, DFAT,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review-dfat-ngo-humanitarian-partnership-agreement-aug-2015.pdf>)

Stéphanie Maltais, Yvan Conoir (2016) The Canadian Humanitarian Coalition: is three-tiered humanitarianism the making?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2019) SDC Guidance for engagement with Swiss NGOs. Bern: SDC

Tasneem Mowjee Lydia Poole Langdon Greenhalgh Sarah Gharbi (2016) , "Evaluation Report of SIDA's humanitarian Assistance", Sida Decentralized Evaluation, 3, SID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2019) World Humanitarian Data and Trends 2018. Geneva: OCHA. ISBN: 978-92-1-132049-7

USAID (2020) Bureau for Humanitarian Assistance: Emergency Application Guidelines.

USAID (2020) Checklist of Required Elements for Full Applications.

USAID (2021) BUREAU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HA) (<https://www.usaid.gov/who-we-are/organization/bureaus/bureau-humanitarian-assistance>)

USAID (2021)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https://www.usaid.gov/partnership-opportunities/ngo>)

VENRO (2017) VENRO Strategy 2017-2022: From idea to Implementation.

<부록 1> 인도적 민간협력사업의 장점 및 도움이 된 내용

구분	1. 자금 안정성	2.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	3. 사업 영향력 확대됨	4. 장기사업 계획수립 가능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모금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확실한 예산가능 • 매년 안정적인 펀딩으로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계획 및 수행가능 • 사업규모 확장 가능 • 파트너분담금 매칭이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관부담 완화 • 시급한 필요성에 근거한 적정 문서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승인 받는데 도움 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직원 파견할 수 있어 사업관리 및 운영 등 깊이 들여다 보는 기회형성 • 외교부 철수단계에 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 가능 • 불참 시, 인도적지원 생태계 진입이 어려워짐. 참여 타 단체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직원 및 조직 역량을 높임 • 신규사업으로서 미흡한 행정절차에 대한 도움을 얻고 역량을 키움. •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수행역량 향상. ex) 사업투명성 및 책무성-KOICA 가이드라인 공유 및 리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사업보다 사업형태의 임팩트가 분명하게 나타남. • 신규단체 경우 현장에서 단체의 역량만으로 투입되는 것이 쉽지 않음. • 사업지역의 보다 협조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ex) 에티오피아 • 대내외적 공신력 획득가능 ex) 단체홍보,국제기구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확대 및 장기 2년 사업 진행이 가능하여 자체사업으로 불가능한 분야를 정부지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단년도 사업 대비, 사업 개시시점과 약정시점 연동 등 사업을 이어서 진행하고자 할 때 느껴지던 어려움 해소.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원 한계 넘어 안정적 운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이해관계자 협상에 유리한 작용 ex) 팀의 관심과 확대 • 타 NGO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실무자간 교류 가장 좋았음. • 교육적 차원에서 기본 개념 및 Sphere 등 인도적지원 사업영역 역량제고 • 관련 교육의 참여를 장려하고 고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적으로 기금 통한 조직변화 ex) 사업예산의 10배이상으로 확장 후 인도적지원팀을 꾸림. • 경험 바탕으로 인도적지원팀 조직, 운영가능 • 재원확보로 인도적 지원 전담인력 고용 • 기타 정부사업으로의 진입이 용이함. ex) 긴급구호 사업 등 • 국제기구 협력활동 등 전략적 방향에 큰 영향 끼침. • 단체차원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내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확대하여 더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등 성과로 연계 • 예측가능한 사업들을 진행 가능

출처: KCOC. 2020.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수요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부록 2>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구분	1. 행정처리 간소화 및 유연성 확대	2. 실무자 간 네트워크 기회확대	3. KOICA 소통채널 및 역할확대	4. KCOC 소통채널 및 역할 확대	5.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지원 사업 특성 고려하여 현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지침 필요 CPP 사업과 비교할 때 예기치 못한 서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청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부담과 행정부담 중첩 구조적으로 KOICA의 규정따름으로 인한 행정소모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자간 몇 번의 회의, 중요사항 결정 외에는 크게 네트워크 형성 없음. KOICA 요청 중간보고나 간담회가 전부, 애로사항이나 의견 공유등 단체 간 대화의 장을 희망 소규모 단체 경우 역량 강화 위한 정보 공유 필요. 축적 경험 바탕으로 한 사례 공유 통한 한계 사항 및 대응방안 학습기회 필요 국내 네트워크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제안 	<p>[KOI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너 입장에서의 새로운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안 KCOC의 역할을 딜리버리로 국한한다면 KCOC와 단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효율성 극대화 위해 문제 해결 위한 커뮤니케이션 희망함. 사업운영에 대한 권한 및 결정이 KCOC로 넘어간다면 유연하고 효율적 사업 될 것으로 기대 KOICA내 담당인력 부족함 인지하고 있음. 사업 및 이슈에 대해 운영기관에 burden sharing이 필요 	<p>[KCO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급상황 시 배경과 이유 충분한 설명 희망 중요내용에 대한 공식적 소통희망, ex) 소통 시 선 메일 후 카톡 등 공식적 채널에 대한 방식 등 일률적 담당자 배정 필요 및 변경 과정 소통 필요. ex) 담당자가 아닌 분들에 의한 혼선 나타남. 지나친 보고서로 인해 단체입장에서는 평가단체로 느껴지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정기적 운영 혹은 온라인 녹화 통해 교육기회 접근성 제고 제안 내용 측면에서 더욱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 희망 프로그램을 보다 단계별, 경력별 다양화를 희망 ex)실무자와 단체총괄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움.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호유보금 승인 관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승인 제안함.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권한 부여하고 특별 승인 받도록 할 때 신속대처 가능 특성고려하여 행정 단순화 하길 기대 사업변경 면에서 두 기관 절차에 따른 오랜 시간 소요 및 신속 수행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직급 및 레벨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이 다르며,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들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는 여전히 부족 실제 인도적지원 활동 하는 비영리기관들의 주도적 네트워킹이 필요 인도적지원 분과위원회 활성화/발전 기대 대형 및 중소단체 상생방안 모색, ex) 컨소시엄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선정방식) 단체 Pool 방식의 형식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 사업초창기 및 현재 선정방식을 복합적으로 융합하는 것 필요 생태계 육성 위한 사업 예산 파이 증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지원 생태계 육성 및 인력양성 역할 기대. 감독아닌 관리 기관으로서 보다 NGO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람. 인도주의의 날 행사의 실효적 홍보 필요함. ex) 방송 속, 정책토론회, 기타 정책결정자의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OC 플랫폼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제안 기타 온라인 교육과의 차별성 필요 생태계 육성 위한 홍보 제안 기본 교육을 넘어선 교육자체의 업그레이드. ex) sphere 교육, IOM과의 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난민분야 강화 통한 예산 확보 가능

출처: KCOC, 2020.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수요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처리함.

<부록 3> 시민사회협력실 CPP 사업 대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장점

구분	1. 자금부담 완화	2. 중간지원단체 운영방식의 효율성	3. 참여단체의 확장	4. 행정적 편의 및 기타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분담금 매칭이 필요조건 아니라는 점에서 기관부담 완화 시급한 필요성에 근거한 적정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승인 받는데 도움 줄 수 있다는 점 긍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체(KCOC)의 오랜 경험이 사업특성 이해도 및 NGO에 대한 조언 줌. 단체 대변하여 KOICA와 논의 및 이슈관련 상황 설명 뛰어나 개별적 문제해결 부담을 덜어줌. 단체 의견 수렴, 조정 및 변화를 만들어 냄. 단체들의 네트워킹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선정 및 지원형식과 달리 공모형식으로 변하면서 참여가능한 단체의 풀 넓어짐. 다년도 기획 가능하여 인큐베이팅화가 긍정적으로 보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단체 실무자 모아 빠른소통 및 정보/정책 공유 가능하게 만들어줌. CPP 경우 단체간 정보 통제되어 협력보다는 경쟁구도의 모습으로서 이와 대비됨. 단체와의 직접대화보다 필터링을 통한 대변 안정감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P 대비 신속한 측면이 있음. CPP가 예산이 크고 행정적 부담은 더욱 큼. 네트워크 풀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4> CPP 사업 대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개선 필요사항

구분	1. 현장 친화적 행정대응 개선필요	2. CPP 사업과의 혼재성 내 차별화필요	3. KCOC역할 개선 및 기타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불안정하고 가변적 환경이므로 현장 상황 고려한 행정적절차 및 규정 대응 완화가 필요 사업 현장의 유연성 부족, 정산절차 현장에서 끝내는 등 시범적 운영 필요 CPP 대비 제출서류 유연성이 떨어져. ex) 반기보고서 제출시점, 내용, 예산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을 따르면서도 인도적지원 사업 특성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두 사업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소통할 수 없음. ex) 회계사 구분 부재 구체적 회계법인 교육 및 지원 부재 기존 인도적지원 민협사업과 비교시 CPP와의 차별화가 명확했으나 현재는 다른 바를 인지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변경 등 KOICA와 직접 다루지 않아 결정과정 시간 소요가 보다 오래걸림. 인큐베이팅 절차와 방식면에서의 의문성 ex) 배정 예산 자체의 유의미한 확장 없으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짐.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지원 민협사업 특성 고려한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및 행정적 편의배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절차가 CPP화 되는 경향이 있으나 굳이 따라가지 않고 특성에 맞는 단순화 필요함. 기본적 특수성이 배제된 채 민협사업의 모든 지침으로 일원화시켜 업무적 불편함 겪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결정 효율성 제한 KCOC 자율성 및 의사결정 권한 부족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5> KCOC의 사업참여 CSO 입장 대변 역할

구분	1. 운영의 긍정적 역할수행	2. 중간지원 단체 역할수행	3. KCOC-NGO 커뮤니케이션 역할	4. 기타 펀드처 마련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운영 및 인도적 지원 분야 성장에 큰 역할 • COVID 대응 전문가그룹 형성 및 정보 공유 • 감시역할로서 세부적 부분에서 단체의 사업책임성 제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체들 더 많은 소통 통한 브릿지 역할 기대 • KOICA와의 결정사항 전달 늦어지거나 추가의견 전달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 입장에서 전체간담회 외 추가적인 KCOC와 NGO간 간담회 통한 애로사항 등 논의 장 기대 • KOICA와 대화중 나온 배경 및 이유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ex)사업성과 • 소통라인 정리가 필요함. ex) 현지 공급증을 단체로 바로 연락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시점에서 KCOC 대신하는 역할 기관 존재하지 않음. • 단체간 협력 가능하게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보다 관리자인 KOICA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 아쉬움. • 정부 인도적지원 정책 관련 제대로 된 역할을 감시하고 입장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 기대 •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함. 보다 적극적인 KCOC의 (KOICA에게) 요청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간담회 통해 평가 아닌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제안함. ex) 이슈별, 정례회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한계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공공기관, 기업 등의 펀드처 확보하는 노력 필요 • 기타 자원 특히 기업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고려 제안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6> 국내 인도적 생태계 육성을 위한 KCOC 역할

구분	1. 단체 간 소통채널 확대	2. 단체 역량강화 지원	3. 다자기구 협력 활성화	4. 자체 역량 강화 및 기타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 협의체로서 대형 및 중소단체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역할 필요 • 사업 사례 및 성과 공유자리 확대 ex) 단체간 peer-revi ew, 사업별 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지원 관한 테크니컬 부문 심화교육 지속적 제공 필요 • 분야/수준별 역량강화 기회 제공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다자기구와의 협력장 필요 • 현장에서의 주요주체가 되기 위한 부분 고민필요 ex) 회계 및 글로벌 스탠다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대변 넘어 운영기관차원 목소리 확대 필요성. ex) 민협사업 기금의 확대, 인도적지원 정책, 규정 개선 이니셔티브 등 지위 강화 • 정부 펀딩 넘은 기업펀딩 등 역할 역시 기대 ex) 재팬플랫폼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통한 데이터 정리, 발표 및 공유역할 기대 • 수행NGO 위한 장, 모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단체 진출 위한 노력 ex)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및 현장에 있는 다른 NGO와의 연합 통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통로 및 제도, 정책 역할 모색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지원 민협사업 좋은 사례 자체개발하고 이를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인도적지원 민협사업 중요성 홍보필요 • 대국민 차원 홍보 통해 정부뿐 아닌 국민에 대한 홍보 고민 필요 • 담당자에 따른 의견차 발생 • 회원단체 넘어 학계 등 확대방안 모색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7> 사업유형의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구분의 적절성 및 변화 필요내용과 이유

답변구분	적절함(11)	적절하지 않음(2)	기타의견(1)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구호는 연중 시기 예측 어려워 일반지원금보다 특별지원금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절함. 2020 개정 수행안내서에 따른 일반과 특별지원금의 차이는 수행단체 부담금의 여부임. 이는 개별 단체 자원 동원 역량과 직접적인 연계가 됨. 그러나 유형의 구분은 참여자(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과 연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소시엄 및 파일럿에 대한 별도 트랙 필요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의 특성(재난 기간/지속성)에 따른 구분을 제안함. 가령, 만성화된 장기적 분쟁 및 반복적 자연재난은 일반지원금으로, 감염병과 긴급분쟁과 같이 단시간에 빠르게 발생한 재난은 시의성을 고려한 특별지원금의 형태로 제안함. 지속사업 혹은 신규사업인가에 따른 구분을 제안함. 자부담을 모두 없애는 특별지원금의 형태로 진행하기를 제안함. 동시에 수행단체 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책무성, 무분별한 사업지원 요청 억제)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 선행 필요. 자부담제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인도적지원 분야의 생태계확장이 민간협력사업의 명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8> 현 일반지원금 사업유형의 변경 필요사항

답변구분	현행 유지, 이견없음(10)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지원 내 국내실향민(IDP) 포함, 난민지원 사업 비율 높이는 것 필요. 정책변화 및 지원 별도 분야 필요함. 현장 지역정부 및 중앙정부와 밀접한 협업 수행중임. 물리적인 산출물 발생하는 사업 트랙에서 해당국가의 인도적지원과 연계한 정책수립 지원 트랙은 목적에 부합하다고 여겨짐. 신규사업 또는 지속사업으로 구분하는 법 (2,3개년 사업도 첫해는 신규사업으로 생각해야 함) 장기적 관점의 사업들을 한 그룹 (난민, 재난위험경감, 기후변화대응)과 단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사업(긴급구호, 조기복구) KOICA 및 정부 ODA 정책기조 부합 테마사업(특별지원금) VS 그 외 모든 사업(일반지원금)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9> 특별지원금 사업유형의 변경 필요사항

답변구분	적절함(7)	변경(3)	추가 (5)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하 성폭력은 긴급구호와 달리 사전조사 및 계획될 수 있는 분야 아니므로 일반지원금 사업으로 편성 분쟁하 성폭력은 GBV 사업분야로 볼 수 있음. 분쟁 상황 속 위기성에 따라 긴급유형으로 이해되나, 사업유형 분류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분쟁하 성폭력은 장기화되는 경향 있어 일반지원금으로 편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예방 혹은 전염병 대응을 특별지원금 유형으로 편성. 이러한 유형은 왜 특별히 지원하는데에 대한 설명을 공모 및 수행안내서에 안내 제안. 평화연대(에드보커시)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고 싶은 분야에 맞춘 변경 KOICA 주요 정책 기조에 부합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구분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현 규모 하에서는 더 이상의 세분화는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으며, 충분한 예산의 증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인도적지원의 특별지원금 취지에 맞는 분야 제안할 수 있는 '자유 주제' 트랙을 신설하고, 인도적지원의 새로운 유형 발굴하는 형태 제안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0> 현재 사업분야 외에 추가, 변경되어야 할 항목

답변 구분	적절함(7)	추가 (8)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사회 지원과 어느정도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보호"를 신설하던지, 심리사회 지원을 보호 분야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지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 많은 단체들이 민협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도 아동보호나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음. 보호는 인도적지원의 필수 대응분야이기도 함. - 보호, 보호는 이전에는 사업의 mainstreaming으로 적용되었지만 GBV, Child Protection이라는 sub-sector을 가지면서 개별 섹터로 통용되고 있으며 분쟁취약국이나 COVID-19와같은 감염병 재난에서도 섹터가 필요함. • 재난위험경감. 사업유형에는 재난위험 경감이 있으나 사업 분야엔 없음. • 인도적지원사업(특히 난민지원사업)에 있어서의 수요가 점점 단일 섹터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를 조합하여 구성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Cross-sectoral` 분야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정부차원에서 젠더 및 취약계층 이슈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조에 근거, 젠더 및 취약계층 이슈를 각각 더욱 상세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봄. • 환경(에너지). 난민캠프 내에서도 환경 및 에너지 이슈가 계속 제기되는 바, 다양한 NGO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 열효율조리기구 배분을 하고 있음. • Peace-building. 로힝야 난민 사태를 풀기 위해서 NGO들이 할 수 있는 Peace-building 업무는 Advocacy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분쟁 그룹간의 논의의 장 마련, 교류 기회 확대 등의 업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권. 인도적 지원 사업, DRR의 측면에서 인권문제는 중요한 이슈임.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1> 현재 사업대상 외 추가, 변경되어야 할 부분

답변구분	적절함(13)	추가 (1)	기타 (1)
내용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지원의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로 변경. 사업대상이 결국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저렇게 명시하는지 의문이 됨. 아니면,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대상을 구분해서 적는 게 좋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상: 인도적지원의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상당한 자구의 노력으로도 삶의 질이 스피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 - 우선대상: 인도적 위기 시 취약계층으로 아래 3개의 분류에서 1가지라도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성별: 여자, 제3의 성,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둘째, 연령: 미성년자(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셋째, 기타: 장애인, 소수민족 등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2> 사업비 규모 관련 의견

답변구분	적절함(1)	증대(14)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규모가 늘어난다면 늘어난 규모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단체들이 있고, 인도적지원 현장은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규모가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았으면 바람. • 한국 정부의 인도적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인도적지원 민간협력 예산은 증가추세이긴 하나 증가폭이 적은 편임. 한국 NGO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를 리딩하고 그러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이루려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많이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일반 개발협력 사업에 비해 민간단체가 실시 중인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의 규모가 작은 편임.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의 양질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 증대를 통해 단체 간 경쟁구도보다 협력 및 연대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로 인해 신규단체들의 참여기회 확대가 가능하고, 이미 경험이 있는 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더 경쟁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인도적 지원사업의 수요확대, 난민증가, 난민장기화 • 2021년도 예산에는 현재 신규사업 예산이 없음. 다년도 사업으로 인도적지원이 변경되면서 21년도 사업 예산 증액에서 신규사업의 공간이 없어진듯하므로 매해 예산증액 없이는 신규사업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신규사업 진입이 가능한 예산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전체 사업비 규모는 인도적 지원사업의 전체 사업비 대비 시민사회 협력의 규모비율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018년부터 20년까지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민간단체협력사업비 규모는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전체 ODA 중 인도적지원사업의 비율을 4.5%, 시민사회협력비율도 2.5%에 그침. 따라서 ODA 인도적지원사업의 비율 6%, 시민사회협력비율도 6%까지는 증대시켜 ODA 사업내의 인도적사업의 역할과 시민사회 협력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있음. • 인도적지원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약속한 바가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가 필수적임. 민간의 인도적지원 참여로 통해 민간사회의 역량이 많이 상승되었고, 사업 분야가 다각화되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이 확장되었음. 다각화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규모로는 미비함. • 인도적 상황이 장기화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흐름에 따라 사업의 규모 또한 이에 맞게 최소 30억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 100억까지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수행단체 그룹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20개 남짓이고, 추가로 더 들어오길 희망하는 단체가 10개 정도 있다고 보면 개별 단체별로 1~10억 원 이상은 소화할 수 있음. 평균 3억으로 봐도 30개 단체를 곱하면 90억임. • 50억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위기경감사업, 지속난민대응 사업들에 미리 배분 될 것이고, 매년 발생하는 긴급구호성 대응에 50억이 다시 배분된다면 인도적 지원사업 생태계가 정말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 UN기관과 INGO가 모이는 긴급구호 클러스터 미팅에서 한국 토종NGO가 들어가서 특정 지역을 할당 받으려면 최소 5억 정도의 지원금은 예상해야 함. • NGO들이 지난 10년간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을 개발, 운영, 관리하며 난민, 긴급구호, 재난위험경감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역량치가 성장하였다고 생각함. 단년도의 사업 기간도 인도적 지원사업의 차별화와 사업 성과 창출이라는 필요 아래 다년도로 바뀌고 있음. 개별협력 민간협력사업도 현재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프로그램 형태로 변화되는 가운데, 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사업의 운영 인건비(파견 직원, 한국 주재직원 등) 그리고 분쟁 취약지역에서의 상대적 높은 사업 운영비(안전 이슈 등), 평가 조사 연구 진행 등의 현실적인 비용들을 고려할 때 개별 1개 프로젝트 예산이 최소 5억정도는 지원금으로 확보되어야 함. • 사업비의 규모는 참여 단체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다자실의 포트폴리오 내 시너지를 고려한다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며 인도적지원 사업이 국제기구 협력사업과의 연결성, 시민사회 간 시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 금액의 상황이 요구됨. • 인도적 지원에 적절한 사업비 규모는 없음. 시기에 따른 이벤트 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연한 사업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3> 사업비를 난민위험,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 사업, 분쟁한 성폭력 사업과 긴급구호사업으로 배분한 기준의 적절성 및 배정비율에 대한 의견

답변구분	적절함(7)	제안(7)	기타(1)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비 배정은 약 6:4의 비율로, 적절하다고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략적으로 3(일반지원금):1(특별지원금) 배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긴급구호에 대한 증액이 필요, 그 외:긴급구호=6:4의 비율이 적당함. 연내 어떤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름. 긴급구호사업 예산 증액 필요함. 구체적 배분 기준 보다는 현장의 수요에 맞춘 유연한 배분 필요함. 상존하는 문제에 대한 인도적지원 비율이 높아질 필요가 있지만 긴급구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체규모가 상승시 난민,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 분쟁하 성폭력 사업의 지원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매년 난민의 추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비율을 따지기 보다는 긴급구호 자금의 절대적 금액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당장 내년에 긴급구호 지원금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금액이 최소 20억 정도는 항상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VID19 상황에서 긴급구호 상황이 많아진 만큼 증액이 필요. 그러나 한편으로 긴급구호사업은 그야말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자금의 목적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역의 안정성을 코이카에서 주요 체크사항으로 두고 있어 긴급구호 예산에 대한 성과목표치 기준완화가 필요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4> 개별사업 상한액 연간 4억의 규모 증대 필요 및 최대 상한선 규모와 이유

답변구분	적절함(6)	증대(7)	기타(2)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실 민관협력사업처럼 5억 상한을 맞추는 것 제안. 인도적지원사업의 경우 국제기구랑 소통하면서 많은 기금을 요청받기도 함. 이를 통해 국제기구 파트너십도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시민사회실 기준과 비슷하게 가는 것을 제안함. 연간 5억원,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정도 임팩트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고 봄. 최대 5억원 적합함. 난민캠프 또는 IDP캠프 사업 기획 시 다양한 활동 기획이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더 많은 수혜자를 지원할 수 있음. 또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분야별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더 많은 성과 도출가능함. 8억(사업비 상한으로 10억, 8:2 매칭 고려) 연간 상한액이 높을 수록 그만큼 파트너분담금의 금액도 높아지게 되는데(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지침상 총 사업비는 8(코이카):2(파트너) 비율 편성), 대형 NGO 혹은 INGO의 경우 사업 커버리지가 중소 NGO보다 훨씬 크고, 규모있는 사업 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상한액이 높아지면 파트너분담금의 편성 부담이 없는 대형/INGO는 큰 규모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에 있어 중소 NGO가 대형 NGO와의 경쟁력에서 밀리진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염려가 있음. 개발협력 사업만큼의 규모 증대가 필요함. 난민지원의 경우 난민사태장기화로 개발요소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금액은 생각하기 어려움. 다만 다른 선진국 공여기관처럼 대규모 사업도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제안함. 인도적지원 사업의 특성처럼, 긴급구호등은 때에 따라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유연성이 필요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5> 사업 기간 1-2년에 대해 기간 증대 필요성 및 최대 사업 기간 제안

답변구분	적절함(6)	증대(8)	기타 (1)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것으로 보임. 지속적 난민 사업이 유일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동일 사업 다시 신청하는 게 맞아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화되는 난민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기간 증대 제안함. 긴급구호 사업은 단기간/1년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상존하는 위험속에서의 인도적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은 1년으로 하더라도,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실사업같이 3년 사업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음. 3년 정도와 연장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음. 1차년은 준비 본격사업은 2~3년차 그리고 평가후 1~3년 연장 가능으로 제안함. 일부 역량있는 단체, 검증된 단체와 계속 협력사업을 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 있음(3-5년) DRR활동 경우 3-5년까지 지원 시 더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하리라 봄. 최대 5년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음. 난민사태 장기화의 경우 1년또는 2년단위로 자원했을 경우 일시적인 지원으로 끝나기가 쉽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 또는 프로그램에 따른 기간 증대가 필수적임. 또한 단년사업이후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면 행정적인 소요나 기간의 갭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이 어려움. 최대 5년. 재난위험경감, 장기화된 난민지원 같이 공동체 통합(community integration), 자립 및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 지원 필요. 또한 인도지원-개발간 연계 측면에서 복원력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교육, 직업훈련, 생계지원을 위해선 CPP와 같은 중, 장기 사업기간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년도 사업의 사업기간에 대한 질문이라면 2년 적절, 하지만 사업 전체 총기간이라면 시민사회협력사업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만성화된 난민사업, 장기간의 사업 필요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6> 신규단체 지원금 규모 1억 원의 규모 증대가 필요성 및 최대 상한선 규모

답변구분	적절함(12)	증대(2)	기타 (1)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Pilot을 통해 신규단체의 사업 수행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이카 사업이 아예 처음인 신규단체 기관은 1억으로 할 수 있지만, 인도적지원사업 이외에 코이카 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이라면 굳이 인도적지원 사업금 규모를 1억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신규 단체라고 해서 1억 원으로 한정 지을 필요 없이 동일한 상한 4억 원을 제안함. 신규 단체도 개별 역량이 다 다르고 그간의 연간 예산 규모도 다 다르기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굳이 금액으로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예산 총액을 한정하지 말고, 자부담금 필수 항목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됨. 신규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폐지하자는 것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임. A단체가 민간협력사업의 수행 단체로 첫 진입한다면 자부담금을 10% 정도 부과하되 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주고, 단 해당 단체가 이듬해에 신규사업을 제출하면 다시 자부담금은 없는 구조가 좋을 것 같음.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7> 신규단체 사업 기간 1년의 적절성 및 기간 증대 필요성과 내용

답변구분	적절함(10)	증대(5)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사업은 너무 시기가 짧아서 사업 진행이 어려움. 지역조사 6개월, 본사업 1년 정도를 제안함. • 신규단체 역시 다년도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사업운영의 경험을 증대시키고, 그 지역의 인도적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함. • 2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인도지원의 경우, 현지 사정으로 1년차에 수행을 못하는 사업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지원이란 타이틀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필요함. • 신규단체와 타 단체를 구분하지 않았으면 함. 동일하게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1+1)년이 적합함. 신규단체가 1차년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은 모두가 인지한 상황에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의 Lesson Learn이 차년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8> 사업비 지급방식의 적절성 및 사업유형에 따른 차별적 적용의 필요성과 일시지급이 필요한 사업유형

답변구분	적절/의견 없음 (4)	부분 적절(9)	기타(2)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는 적절하나, 사업성격을 반영하여 별도승인 후 일괄지급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추가하면 좋겠음. 특히 긴급구호사업은 일괄지급이 적절함. • 일반지원금 사업의 경우 적절함. 단,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좀더 유연한 지급방식으로서의 개선이 필요. • 2회 분할 지급 횟수 및 지급 비율은 적절함. 사업유형 중 '긴급구호'의 경우에만, 전체 사업 기간 및 긴급한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된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임. • 3개월 내외의 긴급구호성 사업만 100% 1차 지급하면 됨. • 긴급구호는 일시 지급이 필요하며, 이외 사업은 분할 지급 방식도 적절함. • 현재와 같은 분할 지급은 사업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생각되나, 사업별로, 사전, 준비프로세스가 길고 후반부에 집행이 집중되는 사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 방식보다는 2차 지원금을 주는 조건이 최근 약정서나 안내서에 나와있지 않은조건들이 너무 많이 불게되어 인도지원의 특성을 상실한 듯 함. 2차 지원금을 지급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길 바램. • 실제로 사업별로 송금이 필요한 시기와 비율은 제각각 이어서 사업유형에 따른 구분은 불필요함. 사업유형에 따른 적용 필요 없이, 총 사업기간에 따른 예산 집행시기에 따라 정하기를 제안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19> 일반지원금의 KOICA 지원금: CSO 자부담 비율 개정

답변 구분	현행 유지(4)	지원금 확대 90%(6), 100%(5)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지원금의 매칭 비율 확대는 수행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수행단체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선 현재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0% 파트너 분담금 매칭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투입인력의 인건비 등의 비현금성 자원을 제하면 실제로는 10% 수준이 파트너 분담인 것을 감안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NGO계 전반이 처한 실질적 상황을 고려하여 90%로 확대 필요.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에 참여하는 NGO의 절대다수는 중소형 단체로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인도적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자체로 상당한 난이도(모금, 인력배치, 사업운영, 취약국 안전관리, 높은 빈도의 교육훈련 등)를 체험해오고 있음.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인도적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 체감지수가 더욱 무거워지는 상황임. 수행단체의 사업 책무성을 위해 파트너분담금은 어느정도 편성 가능함. 다만 2012-2017년(정확하지 않음)의 경우 100% 코이카 지원금으로 진행했는데, 2018년부터 파트너분담금 편성에 따라 파트너분담금 편성 확보가 가능한사업지역에 한해 계획할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함. 신규단체 유입 발판 마련, 민간에 대한 장려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부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국제기구나 해외지원의 경우 간접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자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부족(효과성 입증 부족함), KOICA 사업에 투입되는 MAN-DATE에 대한 대가를 다른 후원금으로 메우는 기형적인 구조. 단체에서 신규 인도적지원사업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예산의 유무라고 보여짐. 자부담금이 없다면, 훨씬 빨리 사업 신청을 할 것임.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20> 사업변경 방식의 적절성 및 승인항목의 조정 필요성

답변 구분	적절/의견 없음 (4)	부분적절(2)	조정필요 (9)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 긴급성이 매우 높거나 혹은 security, safety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을 제안함. 일반적으로 선 승인 후 수행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지의 긴급한 상황 탓에 미처 선 승인받지 못한 경우 수행 후 1달 이내에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길 희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utput 지표/산출물의 횡수 수치에 대해 50% 이상의 큰 변화가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변경후 통보가 가능하다고 봄. 그 외 사업대상지, Outcome, Goal단위의 전체 사업의 성격이 바뀔수 있는 항목에 대한 승인 후 수행이 적절함.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향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음.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사업 성격의 인도적 지원 분야(재난위험경감, 장기 난민) 사업에 대해서는 CPP에 준하는 기준으로 성과관리를 하는 것에 공감하나, CPP와 동일한 잣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현재처럼 HPP의 CPP화가 가속된다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라는 HPP 사업만의 특,장점 및 CSO가 가지는 역동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음. 현재 사업비 3억 미만의 사업도 3억 이상 사업처럼 좀더 유연하게 예산 변경 할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사업변경시 소요되는 행정적 시간이 매우길어 인도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에 매우 방해가 되고 있음. 목표치와 산출물 등 수치조정은 30%내에서 사후통보로 같음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긴급구호와 3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정 지은 것은 좀 아쉬움.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 필요함. 예산 규모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의 변동이 적은 것은 아니고, 단순화 시킨 긴급구호사업은 난민사업보다 훨씬 변동성이 적을 수도 있음.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21> 서류심사 항목 중 단체심사 : 사업심사 비중 및 대안

답변 구분	적절 및 의견없음 (6)	사업심사 상황 (9) *40:60 / 50:50/ 60:40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 분야는 대부분 국제기구 및 INGO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하며 위험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체의 내부 역량 및 책무성 평가 또한 중요함. 따라서 단체심사에 70% 가중한 사업 비중이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심사 기준으로 페더레이션 형태로 각 국가 지부가 있는 대형기관에게만 유리하다 판단됨. 단체심사 비중을 40%, 사업심사 비중 60%. 기존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의 경우 단체심사를 통해 기금을 배분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에 집행하게 하였기에 단체의 전문성, 투명성이 중요했기에 비중이 높았던 것 같음. 현재는 과거 방식이 아닌 서면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하기에 단체심사 비중을 좀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음. 인도적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해 50:50을 제안함 사업심사 비중이 더 높아야한다고 생각함. 신규설립된 단체의 경우 심사항목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두 항목 모두 50% 또는 사업심사 비중이 더 커야한다고 생각함. 단체 60%, 사업 40%.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이나 내용에 대한 평가도 이전보다 많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인도적지원 분야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기존 단체들에게 유리한 비율이 조금은 조정되었으면 함. 단, 긴급구호성 사업 승인 절차를 계속 더 간소화시키는 단계를 밟기 위해서 단체의 심사 비중은 항상 사업심사 비중보다는 좀 더 높은 게 맞을 것 같음.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22> 서류심사 항목인 단체심사 내용의 적절성 및 조정필요 내용

답변구분	적절 및 의견없음 (11)	조정(4)
내용	적절- 현장 한국인력 유무 (유에 플러스)	사업분야 이해도, 전문성, 일관성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단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경우 사업책임자에 대한 평가로 전환 고려 필요함. 소규모 단체에 대한 배려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전략, 계획이 있는지 검토하면 좋을 듯 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23> 서류심사 항목인 사업심사 내용의 적절성 및 조정필요 내용

답변 구분	적절 및 의견없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히 의견이 없음. 다만, 타당성과 사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공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24> 면접심사 항목인 단체심사 내용의 적절성 및 조정필요 내용

답변구분	적절 및 의견 없음 (12)	기타(3)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율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면접심사가 정성평가로 100%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임. 서류심사와 적절한 비율로 최종 점수를 매겨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장의 이해도가 조금 더 비율이 높았으면 함. 현장이해도(30), 사업실행의지(10)으로 조정필요. (사업실행의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하는지 의문임)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25> 면접심사 가점내용의 적절성 및 개선 필요내용

답변구분	적절 및 의견없음 (8)	제안(8)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내 사업대상 지역 방문 현지 사전조사 실시, 시민대상 인식제고 목적의 포럼, 간담회 등의 가점을 좀더 높여야 함. 한국인 파견이 없는 경우, 사업 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기술을 통해 해당 가점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현장 현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향후에도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 될 때의 대안들이 고려될 때 현장의 사업관리 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 파견으로 가점을 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지부나 국가 사무소가 있는 경우 한국 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전 조사가 가능함. 제가[최근 1년 내 사업대상 지역을 방문]이라는 워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현지 인력들의 방문을 통한 조사도 가산점으로 인정되었으면 좋겠음. 현지 사업전담인력 가점을 1점보다 높일 것을 제안 현지정부 어드보커시를 위해 현지 정부 및 시민대상 교육, 포럼을 진행할 경우 가점을 주는 것을 제안 방문을 통한 현지 사전조사는 사업 기획 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가산점 제도보다 서류심사의 '사업타당성'에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인식제고, 포럼 등 인도적지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에 가점비중이 높다면 좋을것 같음. 각 단체별로 사업 수행은 잘 하고 있으나, 이제 단체간 논의 협력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26> 사업운영 방식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

답변구분	적절 및 의견없음 (4)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사업방식은 CPP 사업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단체 입장에선 CSO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KOICA 사업에 참여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다음 사업부터 KOICA가 KCOC에게 사업예산/계획 변경승인이라던가 실무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줄 수 있겠지만 CSO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변화없이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것 같음. • 당장의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정말 CSO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기존 CPP 운영방법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방법을 통한 사업 - 단체간 경쟁을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있는 방향, 기존 사업방법의 비효율성(성과관리, 예산관리)에 대한 대안 - 을 KOICA, KCOC(CSO) 공동으로 논의하고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KCOC의 자율성을 기대함. • 사업 수행단계 및 인도적 지원분야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네트워크에 더 큰 예산과 자율성 부여 필요.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관리 측면에선 과거에 비해 운영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입지가 축소된 부분에 대한 복원이 필요함. • KOICA와 KCOC의 역할분담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KCOC가 보다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민간협력사업 관리 시, 단체의 사업 계획 및 예산 변경 요청에 있어,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세부 내용은 자율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현재 [단체 > KCOC > KOICA]로 진행되는 과정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도 있음. 중대한 사안은 아니더라도 작은 사안들부터 KCOC가 좀 더 자율적으로 승인/검토를 할 수 있게 되면 단체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됨. • 인도적지원의 철학과 핵심취지, 국제적 흐름과 현장 맥락등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더욱 강조되도록, 예를 들어 사업의 outcome 및 activity 구성에 대한 관점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정도로 Sphere, CHS 를 비롯한 complementary standards(INEE, CPMS 등)에 기준하길 바라며, 이것이 바로 일반 개발의 영역과 인도적지원이 구분되는 지점임이 잘 드러나면 좋겠음. 이러한 내용을 사업기획과 수행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KCOC가 NGO들과 깊이 나누고 또 적극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받길 희망. • 사업을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권한의 일부 부여 • 몇 년전부터 긴급구호 사업을 정규 사업수행단체에 한해 공모 형태로 받고 똑같이 서면심사- (세미)면접심사-실행계획서 작성(수정 및 보완)-약정체결 등 정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동일하게 받는데 이에 대해 KCOC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됨. 정규 사업 심사 시 단체심사가 70%나 되는데 긴급구호 사업을 공모 형태로 진행해서 다시 단체를 심사하고 사업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긴급구호 사업 특성상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시기를 놓치고 한참뒤에 대응하게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음. 긴급구호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생기면 KCOC에서 즉각적으로 수행단체에 수요를 파악하고 과반수 이상이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유보금 오픈하는 것을 결정, 단체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KCOC에서 내부적인 심사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긴급구호 사업 유형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함. • 인도적지원사업 분야에 인력 POOL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KCOC가 인적 교류와 지식 공유 등의 네트워킹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KOICA 위탁사업 공모 시 관련 예산자율성 (물론 증액 포함) • 사업의 운영 위탁이라는 부분에서 사업의 운영/승인에 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KCOC에서 주어져야 함. 먼저 KCOC에서 10년동안의 인도주의사업 운영으로 충분한 역량과 경험이 쌓였고, 담당팀이 본 사업의 특성과 KOICA 규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됨. 또한 사업 운영에 대한 기술적 조언 및 의견들은 기관의 사업운영/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KCOC에 사업 변경/승인에 대한 요청시 KOICA를 통해 최종 결과를 받는 과정의 지연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복 등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운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함. • 기본적으로 역량있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의 융통성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봄. 공모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한 현시점에서 KOICA가 KCOC에 자율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란 의문은 있지만, CSO의 발굴과 육성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면 함.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27> 사업개선 제안

답변구분	적절 및 의견없음 (5)	기타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와 임팩트에 대해 일반 개발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음. • 사업심사의견 반영시 이후 피드백 필요 • 사업인력(특히 현지)에 대한 역량강화 예산편성 • 다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 • 예산 증액을 통해 한국 NGO들의 기여 • 인도적지원사업 생태계 확대 조성 필요 (연합 대국민 홍보) • 인도적지원 인큐베이팅·파일럿 프로그램 기회 희망 • 예산수립 및 집행이 최소 CPP 수준의 유연성을 갖길 희망 (현재, 예산서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는 경향이 강함.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한 연유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서내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인정되어야 함. 현재 CPP는 이것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인도적지원에서는 제약이 있는 상황)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패널티를 부여하되 미진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센티브로써 변화의 동기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선 부족하지만 수행단체들을 파트너로서 좀더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의 인도적지원 전략과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더욱 연구조사하여 민간수행단체들의 개별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료·가이드 및 지침화 되길 희망(예: SGBV·환경·난민 등을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 자료) • 인도적지원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이카에서 다년도 사업을 제안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부분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되나, 사업을 수행하는 지침이나 성과 등은 개발사업만큼 요구되는 부분이 실제로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의 지침이 좀 더 유연해지고 성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음.

출처: 연구진이 2020년 11~12월 실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정리함.

<부록 28> 1990~2010년대 주요 재난별 정부-NGO 파트너십 활동

르완다 내전(1994년)		
1996년 KOICA 르완다 대상 민간협력사업		
NGO	사업명	사업규모
미상	르완다 난민 구호 사업	40백만원
아프간 전쟁(2001년)		
2002년 KOICA 아프간 대상 민간협력사업		
NGO	사업명	사업규모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아프가니스탄 의료 및 교육 사업	97백만원
굿네이버스	교육 및 의료지원을 통한 아프간 재건 사업	135백만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랑의 학교 건축사업	97백만원
월드비전	아프가니스탄 겨울철 재난대비 긴급보충 급식 및 보건 의료	135백만원
한국제이티에스	카불, 칸다하르 근교 학교 및 난민캠프 지원	125백만원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아프가니스탄 지역 개발 사업	66백만원
2003년 KOICA 아프간 대상 민간협력사업		
NGO	사업명	사업규모
굿네이버스	아프간 카불 도시 빈민촌 개발사업	116백만원
굿네이버스	아프간 긴급구호 사업	103백만원
미상	아프간 지역개발 사업	72백만원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아프간 난민 긴급의료 구호 사업	50백만원
미상	아프간 여성 문맹퇴치 사업	51백만원
월드비전	아프간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사업	114백만원
월드비전	아프간 성전염성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116백만원
미상	아프간 학교 식수 위생시설 보급 및 위생교육사업	72백만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프간 어린이를 위한 학교 복구 사업	41백만원
미상	아프간 쿤두즈 시범농장 조성 및 운영사업	69백만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아프간 난민 긴급구호 사업	114백만원
미상	아프간 빈민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용품 및 생필품 지원	51백만원
한국제이티에스	아프간 칸타하르 근교 IDP 캠프 지원	98백만원
미상	아프간 양계사업을 통한 농촌자립 기반 사업	72백만원
한민족복지재단	아프간 난민 긴급구호 사업	98백만원

이라크 전쟁(2003년)

2003년 이라크 긴급구호 사업을 위한 공동워크숍(2003.9.23.-24.)
2003년 KOICA 이라크 대상 민관협력사업

NGO	사업명	사업규모
굿네이버스	이라크 긴급구호 사업	291백만원
미상	이라크 바그다드 도시 빈민촌 개발사업	505백만원
글로벌케어	이라크 결핵예방 및 치료 사업	113백만원
대한적십자사	이라크 보건위생 활동 사업	242백만원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이라크 교육 및 의료지원 사업	87백만원
미상	이라크 인터넷센터 및 IT 전문교육센터 건립사업	216백만원
선한사람들	이라크 긴급구호 사업	161백만원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이라크 바스라주 재건 사업	284백만원
아이아문화개발협력기구	이라크 난민 긴급의료 구호사업	102백만원
미상	이라크 알룻바 상하수 시스템 구축 및 위생사업	889백만원
월드비전	이라크 초등학교 식수 및 위생사업	242백만원
지구촌나눔운동	이라크 난민 지원사업	161백만원
지구촌나눔운동	이라크 재건사업	353백만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이라크 난민 긴급의료 구호 사업	275백만원
미상	이라크 초등학교 설립 및 지역문화센터 지역개발사업	44백만원
한국국제봉사기구	이라크 구호품 지원사업	16백만원
미상	이라크 초등학교 복구 및 교구교재 지원사업	60백만원
한국제이티에스	이라크 긴급 식량지원 프로젝트	109백만원
한민족복지재단	이라크 보건 훈련원 현대화 사업	404백만원
한민족복지재단	이라크 의료 및 구호 사업	202백만원
미상	이라크 긴급구호사업 평가 보고	18백만원

서남아 쓰나미(2004년)

2005년 KOICA 인도네시아 대상 민관협력사업

NGO	사업명	사업규모
미상	남아시아 지진해일 인도네시아 학교복구 직업교육사업	100백만원
미상	남아시아 지진해일 인도네시아 질병예방치료 및 보건교육사업	85백만원
미상	남아시아 지진해일 인도네시아 아체지역 학교재건사업	85백만원
미상	인도네시아 학교보건프로그램을 통한 아동건강증진사업	43백만원
미상	남아시아 지진해일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수자원개발 사업	90백만원

중국 쓰촨성 대지진(2008년)

2008년 KOICA 중국 쓰촨성 대상 민관협력사업

NGO	사업명	사업규모
미상	중국 감숙성 지진피해지역 총 16개 중점 지원대상 중 5개 촌락의 식수 공정 프로젝트	102백만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2009년)

2010년 KOICA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상 민관협력사업

NGO	사업명	사업규모
월드비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학교 재건사업	195백만원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학교 재건축 및 지진피해아동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156백만원
미상	인도네시아 빠리아만 지진피해지역 보건위생사업	195백만원
한국제이티에스	인도네시아 웨스트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주택건축	195백만원

아이티 대지진(2010년)

외교부, 국방부 PKO와의 업무협의
 NGO 통관 업무 지원
 아이티 현장 민관협력사무소 설치

출처: 연구진이 KOICA (1994, 2002, 2003, 2005, 2008, 2010) 연보 및 KCOC (2002, 2003, 2005, 2011) 총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부록 29〉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참여 기관 의견

[설문 조사 주요 내용 분석]

- (사업유형) 사업유형의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구분의 적절성 및 변화 필요내용과 이유
 - 전체 응답자 14명 중 현재의 구분이 적절하다고 답한 경우가 11명이고, 적절하지 않은 응답자가 2명, 기타 의견 1명으로 전체의 약 78.6%가 사업유형 구분에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적절하지 않다는 2명의 의견은 긴급구호의 특성상 특별지원금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고, 수행안내서가 제시하는 구분의 기준은 수행단체의 분담금이나, 실제 내용은 프로그램 성격이라 지적함.
 - 기타 컨소시엄 및 파일럿에 대한 별도 트랙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음.
 - 제안사항으로 재난의 특성(재난 기간/지속성)에 따른 구분 및 지속사업 혹은 신규사업에 따른 구분 및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사업 전부를 자부담을 모두 없애는 특별지원금의 형태로 지원을 요청함.

- (사업유형) 현 일반지원금 사업유형인 ‘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 외 변경 필요사항
 - 총 10명의 응답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현 제도에 대해 국내 실향민을 포함한 난민지원사업 비율 증대, 인도적 지원 외 관련 정책변화를 위한 사업구성을 제안함.
 - 2, 3개 년도의 첫해를 신규사업으로 고려할 것과 장·단기관점 사업 구분 필요성 및 정부 ODA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 (사업유형) 현 특별지원금 사업유형인 ‘분쟁하 성폭력, 긴급구호’ 외 변경이 필요사항
 - 총 15명의 응답자 중 약 46.7%인 7명은 현재의 제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3명의 응답자는 분쟁하 성폭력은 사업특성 상 일반지원금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함.
 - 현재의 특별지원금에 추가할 내용으로는 전염병 예방 및 대응, 평화연대 애드보커시 등을 제안했고, 그 외 정부, KOICA의 정책 기조에 맞춘 분야 및 자유주제 트랙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사업 분야) 현재 사업 분야인 '식량안보 및 영양, 식수 및 위생, 보건, 주거 및 비식량 물자, 교육, 심리사회지원, 생계지원 등'의 추가, 변경되어야 할 항목.
 - 총 15명의 응답자 중 약 46.7%인 7명은 현재 사업 분야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했음.
 - 총 8명이 6개의 내용을 제안함. 그 내용은 '보호, 재난경감, 다분야(Cross-sectoral), 환경(에너지), 평화구축(Peace-Building), 인권'임.

- (사업 대상) 현재 사업 대상인 '여성, 남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외 추가, 변경되어야 할 부분
 - 전체 응답자 15명 중 86.7%가 현재의 사업 대상 구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추가로 '임산부'를 명기하자는 의견이 있고, 일반대상과 우선 대상으로 구분하자는 제안이 제시됨. 우선 대상자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성별, 나이, 기타가 제시됨.

- (사업비 규모) 전체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및 증대 필요시 상한선 수준과 이유
 - 전체 응답자 15명 중 약 93.3%인 14명이 사업비 규모를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개별 사업비 최소 5억 원, 프로그램 사업비 규모 최소 30억 원대 규모 또는 60억 원이나 100억 원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됨. 사업비 규모 제한을 두지 말고 유연하게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 응답자들은 인도적 지원사업은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고 사업비 규모가 증대하면 역량 있는 단체들이 나올 것이며, 현 증가추세가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함.
 - CSO들이 역량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자금 규모를 늘려 경쟁보다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신규사업 진입을 위한 예산 증대의 필요성, ODA 인도적 지원사업 중 시민사회협력율 6% 규모로 증대를 요청함.

- (사업비 규모) 사업비를 난민위험,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 사업, 분쟁하 성폭력 사업과 긴급구호사업으로 배분한 비율 기준의 적절성 및 배정비율에 대한 의견
 - 15명의 응답자 중 약 46.7%인 7명은 현재의 약 6:4의 배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업비 배분 비율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제시됨. 3(일반지원금):1(특별지원금) 배정, 타 사업 분야 6:긴급구호 4,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배분, 긴급구호 상황에 다른 탄력적 운용, 절대적 규모(20억 원) 수준의 긴급구호자금 배정 등의 내용이 제안됨. 긴급구호사업 예

산증액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제시됨.

- (기존 단체 사업비 규모) 개별사업 상한액 연간 4억 원의 규모 증대 필요 및 최대 상한선 규모와 이유
 - 15명의 응답자 중 40%인 6명은 현 규모인 4억 원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약 46.7%인 7명은 증대를 요청함.
 - 증대의 이유 및 내용을 보면, 많은 경우 민관협력과 같은 규모인 5억 원을 제안하기도 하고, 10억 원(매칭 비율 8:2 적용으로 사업비 지원 8억 원)을 제시한 경우도 있음. 사업비 규모 증대가 자부담이 가능한 대형 단체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기타로 긴급구호의 경우 사업비 규모 상한선 설정에 유연성을 둘 것을 제안하기도 함.

- (기존 단체 사업 기간) 사업 기간 1~2년에 대해 기간 증대 필요성 및 최대 사업 기간 제안
 - 15명의 응답자 중 40%인 6명은 현 1~2년이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함. 전체의 약 53.3%인 8명 중 4명은 3년, 2명은 3~5년, 2명은 5년을 제안함. 즉 절반 이상이 최소 사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이는 긴급구호 외의 재난위험경감, 장기화 된 난민지원 등의 경우 다년도사업이 효과적이기 때문임.

- (신규단체 사업비 규모) 기존 1억 원 규모의 신규 단체 지원금 규모 증대 및 최대 상한선 규모
 - 전체 응답자 15명 80%에 해당하는 12명은 현 지원 규모 상한선인 1억 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증대라는 답변을 선택한 2명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신규지만 이외의 KOICA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는 상한선 규모는 달리할 것을 제안했고, 신규단체도 기존 단체와 동일하게 4억 원으로 사업비 규모 상한선 둘 것을 요구함. 이외에 신규단체에 자부담 항목을 두자는 의견도 제시됨.

- (신규단체 사업 기간) 신규단체 사업 기간 1년의 적절성 및 기간 증대 필요성과 내용
 - 전체 응답자 15명 중 약 66.7%에 해당하는 10명은 현 지원 기간인 1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응답자의 약 33.4%인 5명을 사업 기간 증대를 요청함. 구체적으로는 지역조사 6개월과 본 사업 1년 총 1년 6개월을 제시한 의견이 있고, 다수는 기성 단체와 동일한 2년을 제시함.
- **(사업비 지급방식)** 현 사업비 지급방식인 당해연도 1차(70%), 2차(30%) 방식의 적절성 및 사업유형에 따른 차별적 적용의 필요성과 일시지급이 필요한 사업유형
 - 전체 응답자 15명 중 약 26.7%에 해당하는 4명은 현 사업비 지급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개정에 대한 의견이 없음.
 - 응답자의 60%인 9명은 현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긴급구호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함.
 - 기타 의견으로 2차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 사업 기간에 따른 예산 시기에 맞추어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 **(사업비 지원 비율)** 일반지원금의 KOICA분담금:CSO수행단체분담금(8:2)의 비율 개정 필요 및 KOICA 지원금 90% 또는 100%로 확대에 대한 의견
 - 전체 15명의 응답자 중 약 26.7%에 해당하는 4명은 현행 8:2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부담 20% 중 비현금성 지원을 제하면 실제 자금 자부담은 10% 수준이라 밝힘.
 - 응답자의 73.4%인 11명이 KOICA 지원금 비율 확대에 찬성했음. 그중 90%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이는 6명이고, 100% 확대는 5명이 요청함. 지원금 증대를 위한 이유로 신규단체 참여 확대, 생태계 보전을 제시하기도 함.
- **(사업변경)** 사업변경 방식에 있어 일부 예산변경 제외⁴²⁾한 선 승인 후 수행방식의 적절성 및 승인항목의 조정 필요성
 - 전체 15명의 응답자 중 약 26.7%에 해당하는 4명은 현행 변경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 방식이 부분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2명은 현장 긴급성, 보안성, 안전성 등

42) 일부 예산변경: 1년 기준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예산 변경에 한해 자율전용/사후통보 가능

에 따라 우선적인 사업변경이 필요하다면 예외사항을 둘 것을 제안했으며, 현지 긴급상황으로 선 승인 받지 못한 경우 1개월 내 승인받는 제도를 제안한 경우도 있음.

-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전체의 60%인 9명으로, 50% 이상의 변화가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변동 후 통보, 목표치와 산출물 등 수치 조정은 30% 내에서 사후통보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 사업비 3억 원 이하의 사업도 3억 원 이상 사업처럼 예산조정을 유연하게 적용, 긴급구호와 3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 역시 제시됨.

○ (사업서류심사) 서류심사 항목 중 단체심사 비중 70%, 사업심사 비중 30%의 적절성 및 조정필요시 제안하는 비중

- 전체 15명의 응답자 중 40%에 해당하는 6명은 현행 비중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국제기구, INGO와 협력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수행하기에 단체의 내부역량 및 책무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현행 비중의 변경을 요청한 9명(60%)은 단체심사 40% : 사업심사 60%, 단체심사 50% : 사업심사 50%, 단체심사 60% : 사업심사 40%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 모든 경우 현행보다 단체심사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심사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함. 그 이유는 현행 제도는 대형단체에만 유리하며, 사업 전문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신규단체 진입 및 인도적 지원 분야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단체심사 비중을 현행보다 낮출 것을 제안함.

○ (사업서류심사) 서류심사 항목인 단체심사(70%)의 내용인 단체 신뢰성(5), 사업 분야 이해도(5), 전문성(10), 일관성(10), 안전성(15), 효율성(10), 유사사업 수행 경험(15)의 적절성 및 조정필요 내용

- 전체 응답자 15명 중 약 73.3%에 해당하는 11명은 현 구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추가항목으로 현장에 한국인력 유무를 제시함,
-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4명은 사업 분야 이해도, 전문성, 일관성 비중을 높일 것, 단체평가 어려울 시 사업책임자에 대한 평가로 전환할 것, 소규모 단체에 대한 배려와 기준 필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전략, 계획 반영 등을 제시함.

- (사업서류심사) 서류심사 항목 중 사업심사항목(30%)의 내용인 타당성(10), 사업수행계획(10), 예산의 적정성(5), 위험관리계획(5)의 적절성 및 조정필요 내용
 - 응답자 11명이 현 제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타당성과 사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세하게 공지할 것을 제안함.

- (사업면접심사) 면접 심사항목인 정성평가(100)의 항목인 사업수행역량(30), 사업 타당성(30), 현장이해도(20), 사업실행 의지(20)의 적절성 및 조정필요 내용
 - 전체 응답자 15명 중 80%인 12명은 현 구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타 의견을 제시한 3명은 사업면접 심사가 정성평가로 100%로 결정되는 것에 개선이 필요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적절한 비율로 최종점수를 확정할 것을 제안함. 이 외에 현장이해도 항목의 비율 상향, 현장이해도(30), 사업실행 의지(10)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업면접심사) 면접심사 가점 내용⁴³⁾의 적절성 및 개선 필요내용
 - 전체 응답자 15명 중 약 53.3%인 8명은 현 가점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가점제도에 대해 제안한 8명의 의견은 최근 1년 내 사업대상 지역 방문 현지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한국인 파견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 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경우 그리고 현지 인력들의 방문을 통한 조사도 가산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됨.
 - 현지 사업전담 인력 가점을 1점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구성되어있는 방문을 통한 현지 사전조사항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가산점 제도보다 서류심사의 '사업 타당성'에서 평가할 것을 제안한 의견도 있음.
 -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정부 및 국내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드보커시 및 인식 제고 목적의 포럼, 간담회, 교육 등을 개최할 경우 가점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43) 사업전담 인력의 현지 상주 또는 신규인력파견

- 장기(사업기간 70% 이상) 상주전담인력(1점),
- 단기(사업기간 40%이상 70%미만) 사업전담인력(0.5점)
- 최근 1년 내 사업대상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사전조사 실시(0.5점)
- 제안서 상 한국 시민단체가 지식 공유 및 한국정부(기관)·시민 대상 인식 제고 목적의 교육, 포럼, 간담회 (공동) 개최 계획 포함
- 1회 :0.5점/ 2회:0.8점/ 3회 이상(1점)

- (사업위탁운영) 현 사업 운영방식인 KOICA의 KCOC 위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KOICA가 KCOC에게 더 큰 자율성 부여 내용
 - 전체 응답자 15명 중 약 26.7%인 4명은 현 운영방식이 적절하며 이견이 없다고 밝힘.
 - 그 외 현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KOICA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운영방식과 내용에 있어 KCOC에게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사업의 기획, 수행, 운영과정 및 변경/검토/승인 의사결정 권한, 예산변경, 예산증액, 긴급구호사업 행정절차)
 - KCOC가 인도적 지원 분야 인적 교류와 지식 공유 등의 네트워킹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기타) 사업개선을 위한 제안
 - CSO 활동가들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먼저 사업성과와 임팩트에 대해 일반 개발사업이 아닌 인도적 지원사업 특성에 맞는 제안이 필요하며,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지침이 좀 더 유연해지고 성과 측정에 있어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기를 제안함.
 - 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과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민간수행단체들의 개별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료·가이드 및 지침화를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됨. 이외에 다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연구에 대한 제안이 제시됨.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예산 증대 및 인큐베이팅·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사업심사의견 반영 이후 피드백 필요, 예산 수립 및 집행이 최소 CPP 수준의 유연성을 가지를 원하는 등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제안사항이 제시됨.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패널티를 부여하되 변화의 동기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사업인력(특히 현지)에 대한 역량 강화 예산편성 및 인도적 지원사업 생태계 확대 조성 필요에 대한 제안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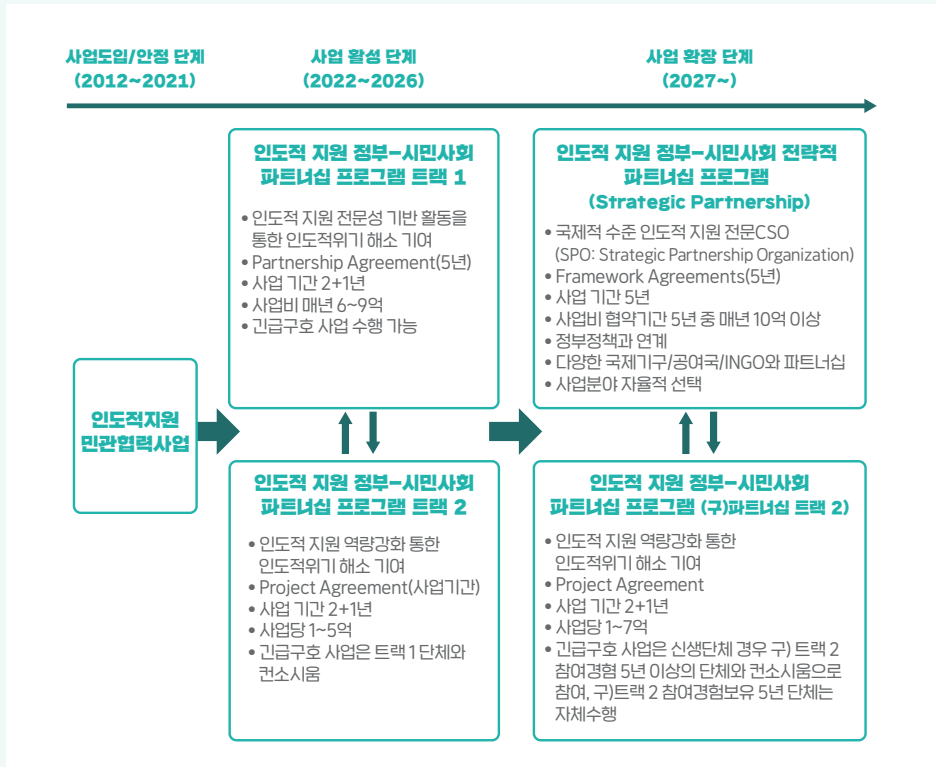
〈부록30〉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진의 제안 내용

[사업내용]

(1) 구성

- 사업의 단계적 발전방안: 사업도입/안정단계-사업활성단계-사업확장단계
- 기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경험이 많은 CSO나 최근 1~3년 이내에 처음 참여하는 CSO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다양하게 구성함.
- <그림 14>와 같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을 운용하는 현 상태 ‘사업도입/안정단계(2012~2021년)’를 거쳐 ‘사업활성단계(2022~2026)’에서는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트랙 1 및 2’로 구분해 운영하고 ‘사업확장단계(2027 이후)’에서는 트랙 1에 참여하는 단체 중 국제적 수준의 인도적 지원 전문 CSO를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사업’과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함.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트랙 1 및 2’에 참여하는 CSO의 사업비 배분은 트랙 1 : 트랙 2을 60% : 40%로 함.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트랙 1 및 2’를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트랙 2에 해당하는 단체들은 참여자격을 기준으로 KOICA-KCOC 심사를 거쳐 트랙 1로 이동 가능함.
- 중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트랙 1’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전략적 파트너십 단체(Strategic Partnership Organization, SPO)’로 지정하고 다년도 포괄적 협약(Framework Agreements) 체결함. 이를 통해 SPO에 정부, 국제적 차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지원(5년), 큰 예산(협약기간 중 매년 10억 이상), 정부정책과의 연계, 국제기구, 타 공여국 및 INGO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사업 분야 선정의 자율성, 예산변경의 자율성 등의 내용을 제공함.

<그림 14> KOICA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발전방안도



- 사업이 현재의 도입/안정단계에서 활성화, 확장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그에 따른 '사업비 규모'임. 사업 활성화 단계의 경우 트랙 1에 Partnership Agreement 방식으로 참여하는 CSO가 3개일 경우 예산이 매년 18~27억 원, 5년 총 90~135억 원이 소요되며, Project Agreement 방식으로 참여하는 CSO가 10개일 경우 매년 10억~50억, 5년간 총 50~250억 원이 필요함. 사업확장 단계에서 도입되는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SO가 3개일 경우 예산이 매년 최소 30억 원 이상 5년간 최소 150억 원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이같이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이 사업 활성화 및 다양화 등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KOICA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이 증대되어야 함.

〈표 47〉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발전 단계 안

	사업도입/안정단계	사업 활성화 단계	사업확장 단계
시기	2012~2021(10년)	2022~2026(5년)	2027~
구성	•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트랙 1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트랙 2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협약	• Project Agreement	• Partnership Agreement (트랙1) • Project Agreement(트랙2)	• Framework Agreement(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Project Agreement(파트너십 프로그램)
기간	• 1~2년	• 트랙 1 : 5년 • 트랙 2 : 1~3년	•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5년 • 파트너십 프로그램: 1~3년
특징	• 인도적지원 사업 내 긴급구호사업 포함 편성	• 트랙 1: 인도적 지원사업, 긴급구호사업 수행 • 트랙2: 인도적 지원사업수행, 긴급구호사업은 트랙 1단체와 컨소시엄으로만 수행 가능	•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정부정책과의 전략적 연계강화, 국제기구/타 공여국/INGO와 파트너십 증대/사업 분야 자유롭게 선정, 예산변경의 자율성 • 파트너십 프로그램: 긴급구호 사업에는 처음 참여하는 신생 단체는 구) 트랙 2 참여 경험 5년 이상의 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구) 트랙 2 참여경험 5년 보유 단체는 자체수행 가능
ODA 예산/참여단체 규모	• 42억 원(2021년)	• 개별단체 연간 지원 규모 -트랙 1. 6~9억 원 -트랙 2. 1~5억 원 • 5년 간 총 140~385억 원 -트랙 1.90~135억 원 (3개 단체) -트랙 2.50~250억 원 (10개 단체)	• 개별단체 지원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년 10억 원 이상 -파트너십 프로그램 년 1~7억 원 • 5년 간 총 225~775억 원 이상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150~250억 원(3~5개 단체) -파트너십 프로그램 75~525억 원(15개 단체)

(2) 내용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트랙 1
 - 목적
 - CSO의 전문적 활동을 통한 지구촌 인도적 위기 해소에 효과적 기여
 - 대상
 -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법적 지위를 가진 CSO

- 참여 자격
 - 조직, 사업 측면의 4대 기준 7대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이후 최종 선정은 별도의 심사를 거침.

〈표 48〉 트랙 1 참여 자격 기준

기준	내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법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상의 인도적 지원 목적 존재 • 한국 정부에 등록(사단재단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인도적 지원사업부서 존재 • 셰이프 가딩 존재 • 재난대응 사업 매뉴얼 보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이상 연속으로 인도적 지원사업 수행 • 2개국 이상 사업수행역량 보유

- 협약방식
 - Partnership Agreement로 5년간 유효(Partnership Agreement는 5년간 KOICA와 CSO가 파트너가 된다는 내용으로 트랙 1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 주 사항임)
- 사업 기간
 - 인도적 지원사업(긴급구호 제외 중장기 대응 필요사업) 최대 3년(2년+1년), 긴급사업은 3개월~1년
- 사업 분야
 - 인도적 지원사업: 만성재난, 재난위험경감, 난민, 재건 복구(Rehabilitation)⁴⁴⁾
 - 긴급사업: 긴급구호, 조기복구(1년 이내)
- 사업비
 - 협약 기간에 단체별 매년 6억~10억
- 사업비 구성
 - 인도적 지원사업 대비 긴급사업비 비율에 대해 긴급사업비는 대응할 수 있는 최소비율(예: 20% 이상)로 배정함.

44) 이후 HDP 넥서스, GBV, 보호 등의 주제별 사업 연계 가능

- 사업비 지급방식
 - 전체 사업비 중 매년 해당 예산 해당연도에 100% 일시지급 및 긴급구호 사업의 경우 100% 일시 지급
 - ODA 지원금 : CSO 자부담 비율
 - 인도적 지원 사업 90:10
 - 긴급사업 100:0
 - 행정
 - 긴급사업 중 긴급구호사업은 지원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수행 효율성 증대(사업변경 선집행 후 승인, 승인조건의 완화, 정산의 유연화)
 - 평가
 - Partnership 평가로 사업평가 및 조직평가 시행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트랙 2
- 목적
 - 인도적 지원사업 참여 CSO 육성을 통한 지구촌 인도적 위기 해소에 효과적 기여
 - 대상
 -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법적 지위를 가진 CSO
 - 참여 자격
 - 조직, 사업 측면의 4대 기준 4대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이후 최종 선정은 별도의 심사를 거침.

〈표 49〉 트랙 2 참여 자격 기준

기준	내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법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상의 인도적 지원 목적 존재 • 한국 정부에 등록(사단재단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사업 담당자 존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인도적 지원사업 수행 실적

- 협약방식
 - Project Agreement로 사업 기간(1~3년) 동안 유효
- 사업 기간
 - 인도적(긴급구호 제외 중장기 대응 필요사업) 지원사업은 3년
 - 트랙1 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긴급사업은 3개월~1년
 -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생 CSO는 모든 사업 1년
- 사업 분야
 - 인도적(긴급구호 제외 중장기 대응 필요사업) 지원 사업: 만성재난, 재난위험경감, 난민, 재건 복구(Rehabilitation)
 - 긴급사업: 긴급구호, 조기복구(1년 이내), 긴급구호사업의 경우 트랙 1 참여 CSO와 컨소시엄 구성해 참여 가능
- 사업비
 - 개별 사업 1~5억
- 사업비 구성
 - 인도적 지원사업 100%
- 사업비 지급방식
 - 매년 1차 70%, 2차 30% 지급
- ODA 지원금: CSO 자부담 비율
 - 인도적 지원사업 90:10
 - 긴급사업 100:0
- 평가
 - 사업평가 시행
-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목적
 -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CSO의 활동을 통한 지구촌 인도적 위기 해소 주도
 - 대상
 -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법적 지위를 가진 CSO

- 참여 자격
 - 조직, 사업 측면의 5대 기준 10대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이후 최종 선정은 별도의 심사를 거침.

〈표 50〉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 자격 기준

기준	내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법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상의 인도적 지원 목적 존재 • 한국 정부에 등록(사단·재단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인도적 지원전략 존재 • 독립된 인도적 지원사업부서 존재 • 세이프 가딩 존재 • 재난대응 사업 매뉴얼 보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7년 이상 연속으로 인도적 지원사업 수행 • 2개국 이상 사업수행역량 보유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과의 연계(인도적 지원전략, 취약국 전략, 중점협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공여자와의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국제기구/타 공여국/INGO와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사업수행 경험

- 협약방식: Framework Agreement로 10년간 유효(Framework Agreement는 장기간, 큰 예산 규모 및 국제기구, 타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정부 정책 부합성, 예산변경의 자율성, 사업 분야 선정 자율성의 내용을 특징으로 가짐)
- 사업 기간: 5년
- 사업 분야
 - 인도적 지원사업: 만성재난, 재난위험경감, 난민, 재건 복구(Rehabilitation)⁴⁵⁾
 - 긴급사업: 긴급구호, 조기복구(1년 이내)
 - 인도적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해당국/지역의 관련 정책변화
- 사업비
 - 협약 기간 중 단체별 매년 최소 10억 원 이상(상한선은 KOICA와 협의하여 결정)
- 사업비 구성
 - 인도적 지원사업 대비 긴급사업비 비율에 대해 긴급사업비는 대응할 수 있는 최소비율(예: 20% 이상)로 배정함.

45) 이후 HDP 넥서스, GBV, 보호 등의 주제별 사업 연계 가능

- 사업비 지급방식
 - 전체 사업비 중 매년 해당 예산 당해연도에 100% 일시지급 및 긴급구호 사업의 경우 100% 일시지급
- ODA 지원금 : CSO 자부담 비율
 - 인도적 지원사업 80:20⁴⁶⁾
 - 긴급사업 100:0
- 행정
 - 사업 전반에 있어 예산변경의 자율성을 제공함(사업비 50% 이하는 CSO 자율적으로 변경)
 - 긴급사업 중 긴급구호사업은 지원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수행 효율성 증대(사업변경 선집행 후 승인, 승인조건의 완화, 정산의 유연화)
- 평가
 - Framework 평가로 사업평가, 조직평가, 정부 정책 연계성 평가, 타 이해관계자(국제기구, ICSO, 타 공여국)와의 파트너십 평가시행

46) 2020년 시행 'KOICA 전략적 프로그램형 민관협력사업 모델 연구'의 내용을 적용하여 자부담의 현물 등 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현금 및 현물의 비율 등 상세내용은 변경 가능)
 - 인건비(파견 수당 등 포함)
 - 기증 물품(Gift In Kind)의 현금가액 상품의 가격(조달청 고시'내용 연수' 관련 5년 이상 물품의 나라장터 조달 가액)

〈표 51〉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구분	목적	대상 CSO	사업협약 방식	사업 분야(자부담 비율)	사업비		참여 CSO (최소) 자격	평가
					규모	구성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구촌 인도적 위기 해소에 효과적 기여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법적 지원을 가진 CSO	Framework Partnership Agreement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사업 만성재난 (20%) 재난위험경감 (20%) 난민 (20%) 재건 복구(rehabilitation) (20%) 긴급사업 긴급구조 (0%) 조기복구 (1년 이내) (20%) 지원 관련 행정 부담경감(빠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 기간에 단체별 매년 10억 이상 인도적 지원사업 80% 긴급사업 (대응) 최소비용 예: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사업비 중 매년 해당 예산 당해연도에 100% 일시지급 긴급구조 사업의 경우 100% 일시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상의 인도적 지원 목적 존재 한국 정부에 등록(사단재단법인 등) 단체의 인도적 지원전략 존재 독립된 인도적 지원사업부서 존재 세이프 가담 존재 재난 대응 사업매뉴얼 보유 최근 7년 이상 연속으로 인도적 지원사업 수행 2개국 이상 사업수행역량 보유 정부정책과의 연계 (인도적 지원전략, 취약국 전략 중점협력국) 타 국제기구/타 공여국/INGO와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사업수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amework 평가 -사업평가 -조직평가 -정부 정책 연계성 평가 -파트너십 평가 (국제기구, ICSSO, 타 공여국 및 현지파트너)
파트너십 프로그램 트랙 1	지구촌 인도적 위기 해소에 효과적 기여		Partnership Agreement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사업 만성재난 (10%) 재난위험경감 (10%) 난민 (10%) 재건복구(rehabilitation)(0%) 긴급사업 긴급구조 (0%) 조기복구(1년 이내)(0%) 지원관련 행정 부담경감(빠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사업 80% 긴급사업 (대응) 최소비용 예: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사업비 중 매년 해당예산 당해연도에 100% 일시지급 긴급구조 사업의 경우 100% 일시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상의 인도적 지원 목적 존재 한국 정부에 등록(사단재단법인 등) 독립된 인도적 지원사업부서 존재 세이프 가담 존재 재난대응 사업 매뉴얼 보유 최근 5년 이상 연속으로 인도적 지원사업 수행 2개국 이상 사업수행역량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nership 평가 -사업평가 -조직평가
파트너십 프로그램 트랙 2	인도적 지원사업 참여 CSO 육성을 통한 지구촌 인도적 위기 해소에 효과적 기여		Project Agreement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사업 만성재난 (10%) 재난위험경감 (10%) 난민 (10%) 재건복구 (Rehabilitation) (10%) 긴급사업 긴급구조(0%), 조기복구(1년 이내)(10%) 긴급구조사업의 경우 트랙 1 참여 CSO와 칸소시움 구성해 참여 가능 (사업확대 단계(2027년 이후) 트랙2에 해당 하는 파트너십프로그램에서 긴급구조 사업에는 처음 참여하는 신생단체 경우 구)트랙 2 참여경험 5년 이상의 단체와 칸소시움으로 참여 가능하며, 구)트랙 2 참여 경험 5년 보유 단체는 자체 수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사업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1차 70%, 2차 3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상의 인도적 지원 목적 존재 한국 정부에 등록(사단재단법인 등) 인도적 지원사업 담당자 존재 최근 3년 이내 인도적 지원사업 수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평가

[사업 위탁운영 기관의 역할]

- FO로서의 사업 위탁운영 기관의 역할의 활성화
 - 일반적인 개발협력 사업과 달리 인도적 지원사업은 현지 정세, 정부 정책, 기후 및 복잡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상황변화가 자주 일어나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특성을 가짐.
 - 이에 호주, 캐나다 및 기타 주요 공여국들은 인도적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CSO와의 파트너십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CSO 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 FO)에게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활용함. 전문적인 FO를 통한 사업위탁 운영방식을 채택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증대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함.

-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KCOC 역할 강화 및 행정적/재정적 권한 위임 필요
 - 사업 운영 권한위임 강화
 - 사업 운영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역할 명확히 규정
 - 긴급구호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변경 검토 및 승인 과정에 대한 권한위임

- 사업수행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 정례적 협의 제도화
 - KOICA-KCOC-참여 CSO 대표 단체 간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연 2회 개최
 - 사업공모, 배분, 보고, 평가 등 사업 및 제도 운영에 대해 협의
 - 정책, 사업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을 연 2회 이상 개최
 - (외교부)- KOICA- KCOC -참여 CSO 간 사업 관련 소통의 장을 개최하여 정부 정책변화 및 인도적 지원 글로벌 동향 공유,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 관련 시민사회의 견 청취

- 사업참여 CSO의 조직 역량 강화, 참여 인력 역량 강화라는 이원적 접근
 - 사업참여 CSO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 역량 강화 시행
 - 인도적 지원전략 구성
 - 인도적 지원 분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전략 및 방법론
 -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 평가

- 기타 조직, 사업전략 및 정책적 측면의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 사업 경험이 부족한 신생 단체에 대한 기초적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 참여 CSO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량 강화 시행
 - 분야/주제별 역량 강화
 - 현지인 인력의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사업 경험이 부족한 활동가의 역량 강화

- 한국 사회 내 홍보 활성화
 - 정부 기관 대상 사업성과 공유
 - 시민사회 대상 사업성과 공유
 - SNS 통한 홍보

- 성과 체계화를 위한 노력 전개
 - 인도적 지원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지표개발 및 적용
 - 사업참여 CSO들의 성과를 정리해 논문발표 및 게재를 통해 성과 고도화

- 학계/전문가그룹 연계
 - 학계 및 분야, 지역, 기술전문가 참여 통로를 구성해 사업 전문성 제고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Humanitarian Partnership Program

